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7.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17.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2017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박 형 수

요 약

1.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정책대상자) 중소기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도입된 동 제도의 감면업종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을 비롯하여 총 46개 업종에 달함
 - 정책대상자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다수의 서비스업종이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책대상업종이 설정되어 있음
 - 최초 도입 당시에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후 정책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 1992년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원을 정책목적으로 삼고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조금씩 추가해왔으나 여전히 여러 서비스 업종은 정책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음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포함된 서비스업종의 경우 유망서비스업종 선정 및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지원 혜택)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의 5~30%를 감면
 - 비수도권, 소규모, 제조업종의 세액감면율이 높고 수도권, 중규모, 서비스업종의 세액감면율이 낮게 설정되는 경향
 - 투자나 고용과 같은 특정 경제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지원제도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세지출 규모) 동 제도에 의한 2015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규모는 9천억 원 수준이고 법인사업자의 감면규모는 7천억원으로 합계 1.6조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8조원과 1.9조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개인사업자들의 중기특별세액감면액 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16.1%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들의 중기특별세액감면액은 2010년 7,709억 원에서 2011년 6,029억원으로 21.7% 감소한 이후 연평균 4%씩 증가하여 2015년 7,079억원 수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동 제도 활용도가 법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함
 - 2010~2015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연평균 6.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규모가 연평균 16.1%씩 증가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감면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항구화) 동 제도는 1992년 말 최초 도입될 당시에 중소 제조업이 처했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나 25년간 정책대상자를 확대하며 항구화됐음
 - 한번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는 이해관계자를 형성하고 이들의 이해가 정치과정에 개입되어 정책대상자를 확대하며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유발함
 - 이처럼 항구화된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정책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합리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제도에 의해 형성된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인해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대상자 설정 방식)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정책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설정해왔으나, 정책대상 업종의 선정은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

- 수혜업종의 선택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형태로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를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여러 서비스업종들이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 우리 경제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한 경제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가격체계를 왜곡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보다는 업종 간 세부담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성장 및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생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정책대상자 설정은 부적절함
 - 국민정서상 육성지원의 대상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업종을 정책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대상자를 설정할 필요
 -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부 열거된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정책대상자 여부를 납세자가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상승시키고 조세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함
- (제도 구성 요소) 동 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한 경제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제도 활용도는 높지만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성향 제고를 촉진하기 어려움
- 동 제도의 유일한 수혜요건은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뿐임
 -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감면여부는 흑자 여부에 의해 결정됨
 -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하는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활동에 근거하여 조세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 혁신성향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성향이 동 제도에 의해 제고되기 어려움
- (정책목적의 달성 가능성) 동 제도의 최초 도입 당시 입법취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있었지만 조세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정되므로 정책대상기업의 일부분이어야 할 손실기업들은 동

제도의 수혜대상기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은 도입 당시에도 명확히 지적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당시 국회 재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에 사후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금융지원이나 정부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¹⁾
- 그러나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대되며 항구화되어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가지며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특히 손실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자에서 오랜 기간 배제하게 됨
- 기업경영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실기업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조세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 협조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8.9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사업 중 11.2조원을 적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정책타당성 평가

- 중소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책대상자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고,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여타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의 문제가 있음
 - (정부 개입의 근거) 중소기업은 모든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금융시장 접근성, 상품시장 진입장벽 및 불공정거래, 작은 규모에 기인한 비효율성 등 여러 어려운 경영환경을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
 - (불명확한 정책목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원을 위해 도입된 동 제도는 이후 여러 정책대상업종을 추가하며 새로운 유망업종 지원부터 외부불경제 교정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목표가 포괄되어 있음

1) 대한민국 국회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2. 12, p. 6, 김학수(2016)에서 재인용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유 자동차 대여업을 정책대상 업종에 추가
- (제도설계의 문제점)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한 수혜요건 부재, 제조업 중심의 폭넓은 정책대상자 설정, 납세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불명확한 업종명칭,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있음
- (유사중복성)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을 수혜한 흑자 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내역사업의 정책목표가 유사하여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음
 - 수입금액규모별, 업종별, 기업소재지별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수혜 법인과 금액 비중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현황과 상당히 유사
 - 중소기업청의 투융자복합금융지원(1254-301)과 성장안정자금(1261-301)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정책목적과 유사하며 중복지원의 가능성

3. 효과성 평가

- 기업경영안정, 수익성 제고, 성장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여타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안정) 부채비율로 측정한 기업의 경영안정성은 동 제도 수혜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폭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제도의 대다수 이용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수익성 제고) 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로 측정한 기업의 수익성 지표는 수혜기업(법인·개인)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혜기업의 수익성 제고효과에 대한 긍정적 실증분석 결과를 찾기 어려움
 - (성장지원) 수혜기업(법인·개인)들의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도 비수혜기업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추정결과에서는 비수혜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여타 지원제도 활용 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의 활용은 동 제도의 비수혜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동 제도 수혜기업들은 주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
 - 이러한 분석은 국세청 협조자료(2011~2015년 개인 및 법인의 개별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수행
- (설문조사 보완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납세자들이 동 제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동 제도의 폐지가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적지 않은 조세저항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조세지출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
 - 특히 정책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찬성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감면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업종제한 폐지 방안에 찬성함

4. 형평성 평가

- 동 제도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법인사업자 2%포인트, 개인사업자 5%포인트 안팎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며 동일한 기업규모와 업종의 비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최대 12.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형평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평가됨
 - 비수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평균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는 비수혜법인들의 경우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수혜법인들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훨씬 큼

5. 제도 개선 방안

- 기본적으로 동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납세자들의 인식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폐지 시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제도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

-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세액감면제도의 특성상 산출세액이 큰 수익성을 확보한 우량 중소기업들에 더 큰 혜택이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현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저항 등 정치과정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세액감면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제도의 세 가지 기본 구성요소인 업종, 기업규모, 소재지 중 정책대상 업종 설정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
 - 현재는 정책대상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 국민정서상 육성지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유흥음식업 등 사치성 소비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
 - 설문응답기업의 78%가 이러한 개편에 찬성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감면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업종제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
 -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투자 및 고용과 연계하여 동 제도를 재설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므로 이 제도들과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
 -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를 투자 또는/그리고 고용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편할 경우 기시행 중인 제도들과 유사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목 차

| | |
|--------------------------|----|
| I. 서론 | 17 |
| II.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23 |
| 1. 현행 감면제도 운영 현황 | 25 |
| 가. 지원제도 개요 | 25 |
| 나. 조세지출 규모 | 29 |
| 다. 수혜자 현황 | 30 |
| 2. 문제점 | 32 |
| III. 정책타당성 평가 | 35 |
| 1. 정부의 역할과 정책대상자 설정의 적정성 | 37 |
|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40 |
| 가. 세액감면 방식의 적절성 | 40 |
| 나. 차등적 감면율의 적정성 | 42 |
| 다. 정책대상자 설정방식의 문제 | 45 |
| 3.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48 |
| 가.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 현황 및 비교 | 48 |
| 1) 전체 현황 | 48 |
| 2) 매출액 규모별 지원현황 | 50 |
| 3) 업종별 지원현황 | 52 |
| 4) 지역별 지원현황 | 54 |
| 나. 단위사업 비교 | 55 |
| IV. 효과성 평가 | 57 |
| 1. 분석개요 및 자료 | 59 |

- 가. 개요 59
- 나. 사용자료 60
 - 1) 법인사업자 자료 60
 - 2) 개인사업자 자료 68
- 2.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78
 - 가. 사업자 유형별 재무성과 추이 78
 - 1) 법인사업자 78
 - 2) 개인사업자 85
 - 나. 실증분석 93
 - 1) 법인사업자 93
 - 2) 개인사업자 106
- 3.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적 평가 115
 - 가. 설문응답 기업 특성 115
 - 나.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122
 - 다. 제도개편 방향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124
 - 1) 업종제한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124
 - 2)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126
 - 3) 지역별 차등지원 폐지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129
 - 4) 동 제도의 수혜기간을 설정하는 개편방안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132
 - 5) 현행 제도의 전면 재설계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135

V. 형평성 평가 141

- 1. 수입금액규모별 형평성 평가 144
 - 가. 법인사업자 비교 144
 - 나. 개인사업자 비교 147
- 2. 업종별 형평성 평가 148
 - 가. 법인사업자 비교 148
 - 나. 개인사업자 비교 151
- 3. 지역별 형평성 평가 153
 - 가. 법인사업자 비교 153
 - 나. 개인사업자 비교 155

| | |
|----------------------|---------|
| VI. 제도 개선 방안 | 157 |
| 1. 종합 평가 | 159 |
| 가. 타당성 평가결과 | 159 |
| 나. 효과성 평가결과 | 160 |
| 다. 형평성 평가결과 | 161 |
| 라. 종합의견 | 162 |
| 2.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163 |
| 참고문헌 | 164 |
| <부 록> 설문지 | 167 |

표 목 차

| | |
|--|----|
| <표 II-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 업종변천 | 26 |
| <표 II-2>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 27 |
| <표 II-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변천 | 27 |
| <표 II-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조세지출 규모 추이 | 29 |
| <표 II-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 30 |
| <표 II-6> 사업자 유형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이용 사업자 추이 | 31 |
| <표 II-7>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감면공제 신고 인원 현황: 2015년 신고기준 | 32 |
| | |
| <표 III-1> 각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 43 |
| <표 III-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업종 관련 심판청구 검색건수 | 44 |
| <표 III-3>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사업자 유형별 지원현황 | 49 |
| <표 III-4>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1200) 세부사업 현황 | 56 |
| | |
| <표 IV-1> 연도별 법인의 분포 | 60 |
| <표 IV-2>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법인 수 | 61 |
| <표 IV-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이행확률 | 63 |
| <표 IV-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법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 | 64 |
| <표 IV-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법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I (세액>0) | 65 |
| <표 IV-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 66 |
| <표 IV-7>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사업자 수 분포 | 67 |
| <표 IV-8>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사업자 감면액 분포 | 68 |
| <표 IV-9>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분포 | 68 |
| <표 IV-10>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개인사업자 수 | 70 |
| <표 IV-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이행확률: 개인사업자 | 71 |
| <표 IV-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개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 | 73 |

| | |
|--|-----|
| <표 IV-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개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I (세액 >0) | 74 |
| <표 IV-14>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 75 |
| <표 IV-15>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 수 분포 | 76 |
| <표 IV-16>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 감면액 분포 | 77 |
| <표 IV-17> 매출액영업이익률: 법인사업자 | 78 |
| <표 IV-18> 총자산순이익률: 법인사업자 | 80 |
| <표 IV-19> 총자산증가율: 법인사업자 | 80 |
| <표 IV-20> 매출액증가율: 법인사업자 | 82 |
| <표 IV-21> 부채비율: 법인사업자 | 83 |
| <표 IV-22> 매출액영업이익률: 개인사업자 | 85 |
| <표 IV-23> 총자산순이익률: 개인사업자 | 87 |
| <표 IV-24> 총자산증가율: 개인사업자 | 88 |
| <표 IV-25> 매출액증가율: 개인사업자 | 90 |
| <표 IV-26> 부채비율: 개인사업자 | 91 |
| <표 IV-27>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1: 법인사업자 | 95 |
| <표 IV-28>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감면 사용 여부): 법인사업자 | 96 |
| <표 IV-29>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3(감면을 상호작용): 법인사업자 | 97 |
| <표 IV-30>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98 |
| <표 IV-31> 창업(6조1항)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99 |
| <표 IV-32> 창업(6조2항)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100 |
| <표 IV-33> 중기투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101 |
| <표 IV-34> 연구개발1(최저한세 배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102 |
| <표 IV-35>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103 |
| <표 IV-36> 고용창출투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104 |
| <표 IV-37>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105 |
| <표 IV-38>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1: 개인사업자 | 106 |
| <표 IV-39>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감면 사용 여부): 개인사업자 | 108 |
| <표 IV-40>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3(감면을 상호작용): 개인사업자 | 108 |
| <표 IV-41>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109 |

| | |
|--|-----|
| <표 IV-4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110 |
| <표 IV-4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111 |
| <표 IV-4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112 |
| <표 IV-4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113 |
| <표 IV-46>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개인사업자 | 114 |
| <표 IV-4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설문조사 응답 구분 | 115 |
| <표 IV-48> 법인 재무상태 | 116 |
| <표 IV-49>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 116 |
| <표 IV-50> 세액감면제도 인지 경로 | 118 |
| <표 IV-5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 사용처 | 119 |
| <표 IV-52>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120 |
| <표 IV-5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만을 이용하는 이유 | 121 |
| <표 IV-54> 110% 추가 감면을 적용 여부 | 121 |
| <표 IV-5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 122 |
| <표 IV-56> 업종 분류시 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분류가 달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123 |
| <표 IV-57>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 124 |
| <표 IV-58> 모든 업종을 포괄 개편 시 감면율을 낮추는 개편방안에 동의 여부 | 125 |
| <표 IV-59> 모든 업종을 포괄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26 |
| <표 IV-60>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 127 |
| <표 IV-61> 기업규모별 차등적 감면을 체계 개편으로 감면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납세자의 감수 의향 | 128 |
| <표 IV-62>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29 |
| <표 IV-63>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 여부 | 130 |
| <표 IV-64>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 시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동의 변경 여부 | 131 |
| <표 IV-65>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32 |

| | |
|---|-----|
| <표 IV-66>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 여부 | 133 |
| <표 IV-67>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경우 적정 수혜기간에 대한 의견 | 134 |
| <표 IV-68>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35 |
| <표 IV-69>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 방안 동의 여부 | 136 |
| <표 IV-70>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 시 사회보험료 지원액이 작아질 경우 동의 여부 ... | 137 |
| <표 IV-71>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38 |
| | |
| <표 V-1>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 실효세율 차이 | 145 |
| <표 V-2>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 146 |
| <표 V-3>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 개인사업자와 비수혜 개인사업자 간 실효세율 차이 | 147 |
| <표 V-4>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 148 |
| <표 V-5> 업종별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 실효세율 차이 | 149 |
| <표 V-6> 업종별 법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 150 |
| <표 V-7> 업종별 수혜 개인사업자와 비수혜 개인사업자 간 실효세율 차이 | 151 |
| <표 V-8> 업종별 개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 152 |
| <표 V-9> 지역별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 실효세율 차이 | 153 |
| <표 V-10> 지역별 법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비교 | 154 |
| <표 V-11> 지역별 수혜개인사업자와 비수혜개인사업자 간 실효세율 차이 | 155 |
| <표 V-12> 지역별 개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 15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I-1]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 51 |
| [그림 III-2]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금액 비중(2015년) | 52 |
| [그림 III-3] 업종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 53 |
| [그림 III-4] 업종별 수혜금액 비중(2015년) | 54 |
| [그림 III-5] 지역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 54 |
| [그림 III-6] 지역별 수혜금액 비중(2015년) | 55 |
| | |
| [그림 IV-1] 연도별 법인의 분포 | 61 |
| [그림 IV-2]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법인 수 | 62 |
| [그림 IV-3]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 66 |
| [그림 IV-4]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분포 | 69 |
| [그림 IV-5]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개인사업자 수 | 70 |
| [그림 IV-6]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 75 |
| [그림 IV-7]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 79 |
| [그림 IV-8] 총자산증가율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 81 |
| [그림 IV-9] 매출액증가율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 82 |
| [그림 IV-10] 부채비율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 84 |
| [그림 IV-11]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 86 |
| [그림 IV-12] 총자산순이익률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 87 |
| [그림 IV-13] 총자산증가율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 89 |
| [그림 IV-14] 매출액증가율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 90 |
| [그림 IV-15] 부채비율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 92 |
| [그림 IV-16] 식별전략 | 94 |

I. 서론



I. 서론

- (도입배경)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1992년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란 이름으로 최초 시행된 이후 정책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해 왔음
 - 1992년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를 최초 도입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1991년 17.02%이던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1992년 6.31%로 급격히 둔화되며 경영여건이 악화
 - 중소기업의 도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한 기업에 사후적으로 그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제도와 같은 조치가 금융 지원이나 정부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음²⁾

- (연구 목적)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동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적이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들에 대한 단순 보조금 형태인 세액감면제도로 추구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
 - 동 제도의 수혜요건은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특정 경제행위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기업의 소재지, 규모, 주된 영위업종에 의해서 수혜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평가할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중소기업이 보다 성장지향적이고 혁신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투자, 고용, 임금의 확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

2) 대한민국 국회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2. 12, p. 6, 김학수(2016)에서 재인용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가 업종별로 열거됨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정책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지 않은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며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동 제도가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동일한 소득규모에 동일한 수준의 세부담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업종별 상대 가격 체계의 왜곡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 업종간 수평적 세부담 형평성의 왜곡은 상대가격 왜곡을 통한 자원배분 왜곡으로 귀결되어 정책 도입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중소기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형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연구들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은 새로 탄생하는 신설 기업들이지 규모가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의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도 폐지의 대안과 함께 세수중립적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고려할 계획
- (연구 방향)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연구 방향을 견지하며 분석, 종합평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동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혁신 성향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
 - 정치적 수용성 등 여타 이유로 인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현행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 및 정책대상자 설정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함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과 소기업 기준을 세법상 중소기업기준으로 원용하고 있으나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 넓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 및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행 열거주의 방식의 정책대상자 설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
 - 동 제도가 연구개발 및 물적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함

- 여타 혁신성향 제고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함

□ (제도의 문제점) 제Ⅱ장에서 동 제도와 관련된 심사·심판 청구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대상자 확대 설정 시기의 경제상황 등을 검토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함

-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의 분쟁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제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저감 필요
- 정책대상자를 확대하여 설정했던 과거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검토를 통해 해당 정책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 (정책타당성) 제Ⅲ장은 동 제도의 타당성 분석을 정부의 개입 근거, 정책대상자의 설정, 정책수단의 적절성, 유사중복제도 여부의 관점에서 검토

- 동 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판단
- 정책대상자 설정의 적절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검토와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열거된 46개 업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행
 -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설정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와 국제비교를 통해 현재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평가를 수행
 -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대상 업종이 일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을 검토하고 정부의 업종 선택이 적절했는지를 평가
- 정책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차등적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
- 중소기업청의 예산사업 중 중소기업의 성장 및 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중복성 또는 시너지 효과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활용 기업이 100만개에 달하므로 중소기업청 전체 예산사업의 수혜자 특성과 세액감면제도 수혜자 특성을 비교
 - 중소기업의 성장 및 안정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예산사업의 정책대상자와 정책목표를 세액감면제도와 비교 검토함

- (효과성) 제Ⅳ장은 국세청에서 협조받은 무작위 추출 개별 중소기업들의 국세청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적인 평가를 수행
 - 기업의 경영안정 지표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 대비 세전 이익 등의 수익성 지표를 설정하고 동 제도 수혜기업들과 비수혜기업들의 수익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 동 제도에 의해 수혜기업들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 개선 정도가 비수혜기업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지 여부를 평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과 혁신성 향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보조적 분석을 수행
 - 동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조사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행태 변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형평성) 제Ⅴ장에서 무작위 추출 국세청 협조 개별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유형별·업종별 실효세율 수준 및 동 제도에 의한 세부담 인하효과의 차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 왜곡 수준에 대해 검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전 실효세율을 기준점으로 삼고 동 제도에 의한 실효세율 인하 폭을 정책대상 수입금액 규모별, 업종별, 소재지별로 비교 검토
 - 여타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을 포괄한 최종 결정세액 또는 총부담세액 기준 실효세율과 동 제도의 감면 전후의 실효세율 차이를 비교·검토함

- (제도 개선 방안) 제도 개선 방안은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정부 재정비용 및 기업들의 세부담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고 중소기업들이 보다 왕성히 성장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고자 함
 -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납세자들의 설문응답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의 충격을 축소하고자 함
 - 동 제도의 수혜요건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의 조세지출 범위 안에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Ⅱ.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II.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감면제도 운영 현황

가. 지원제도 개요

- (정책대상자) 중소기업만을 정책대상자로 삼고 도입된 동 제도의 감면업종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 축산업 등을 비롯하여 총 46개 업종에 달함
 - 정책대상자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다수의 서비스업종이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책대상업종이 설정되어 있음
 - 최초 도입 당시에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후 정책대상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 1992년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원을 정책목적으로 삼고 ‘임시특별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조금씩 추가해왔으나 여전히 여러 서비스업종은 정책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음
 -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포함된 서비스업종의 경우 유망서비스업종 선정 및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자세한 정책대상 업종의 변천은 <표 II-1>을 참조
 -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임업을 추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표 II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정책대상 업종변천

| 개정일자 | 감면업종 |
|------------|---|
| 1992.12.8 | 제조업 |
| 1994.12.22 | 정보처리업(정보처리업 → 정보서비스업(2008.12.26. 개정)) 컴퓨터운용관련업(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
| 1995.12.29 |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 2000.12.29 | 광업,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함(2002.12.11.개정)),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¹⁾ 축산업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 작물재배업(2005.12.31.개정)) |
| 2002.12.11 | 영화산업, ²⁾ 전기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뉴스제공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기존 공연산업에서 변경(2008.12.26.개정)),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
| 2005.12.31 |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 ³⁾ 선박관리업, 전시산업, 광고업 |
| 2008.12.26 | 출판업, 정보서비스업(정보처리업 → 정보서비스업(2008.12.26. 개정))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컴퓨터운용관련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
| 2010.1.1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2011.12.31. 개정),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 |
| 2010.12.27 |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2013.1.1 | 사회복지서비스업 |
| 2014.1.1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운영업제외) |
| 2014.12.23 |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 2015.12.15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2016.12.27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⁴⁾ 임업 |

주: 1) 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2000.12.29.신설), 건설폐기물처리업(2005.7.13.신설), 분뇨 등 관련 영업·토양정화업(2005.12.31.신설)을 포괄함(2008.12.26.개정)

2) 기존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함)에서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으로 변경(2008.12.26.개정)

3) 기존에는 직업기술분야 학원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개정(2008.12.26.개정)하였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으로 확대(2010.12.27.개정)되어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포함하여 규정

4) 기존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제외하였으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main.html>), 2017.4.6. 접속

□ (지원 혜택)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의 5~30%를 감면

- 비수도권, 소규모, 제조업종의 세액감면율이 높고 수도권, 중규모, 서비스업종의 세액감면율이 낮게 설정되는 경향
- 투자나 고용과 같은 특정 경제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지원제도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II -2>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단위: %)

|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10 |
| | 그 외 업종 | 20 | 30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 | 5 |
| | 그 외 업종 | - | 15 |
| | 지식기반산업 | 10 | 15 |

주: 1.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상기 감면율의 1.1배를 적용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2.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함(2019.12.31.까지 적용)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main.html>), 2017.4.6. 접속

<표 II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변천

| 개정일자 | 감면비율 | | | |
|------------------|----------------------|--------------------|-----------|-------|
| | |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감면비율 | |
| 1992.12.8. 신설 | 거주자(소득세) | 5천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40% | |
| | | 5천만원 초과 | 산출세액의 20% | |
| | 내국법인(법인세) | 1억원 이하 | 산출세액의 40% | |
| | | 1억원 초과 | 산출세액의 20% | |
| 1993.12.31.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 | | |
| 2000.12.29. | 소기업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10% | 10%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30% | |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 | 10%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 | 10% | |
| 2001.12.29. | 소기업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10% | 10%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30% |

| 개정일자 | 감면비율 | | | | |
|-------------|--|------------------------------|------------------------------|-------|-------|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 - | 10%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 30%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30% | |
| 2002.12.11.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10% | 10%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30% | |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 | 10%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 30%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30% | |
| | |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2003.12.30.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5% | 5%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10% | 15% |
| 중기업 |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 | 5%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 15% | |
| | | 지식기반산업 | 10% | 15% | |
| |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2004.12.31.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10% | 10%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20% | 30% | |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 | - | 5% | |
| | | 제조업 등 기타업종 | - | 15% | |
| | | 지식기반산업 | 10% | 15% | |
| 2010.1.1. |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업종을 도·소매업과 의료업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은 제조업 등 기타업종으로 포괄 | | | | |
| |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10% | |
| | | 그 외 업종 | 20% | 30% | |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 | 5% | |
| | | 그 외 업종 | - | 15% | |
| 지식기반산업 | | 10% | 15% | | |
| 2013.1.1. | (상동) + 알뜰주유소(20% 감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 | | | |
| 2016.12.27. | 장수 성실중소기업 ¹⁾ 에 대해 감면율을 10%(1.1배) 인상함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함(2019.12.31.까지 적용) | | | | |

주: 1)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임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main.html>), 2017.4.6. 접속

나. 조세지출 규모

- 동 제도에 의한 2015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규모는 9천억원 수준이고 법인사업자의 감면규모는 7천억원으로 합계 1.6조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8조원과 1.9조원 수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개인사업자들의 중기특별세액감면액 증가율은 2010~2015년 연평균 16.1%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들의 중기특별세액감면액은 2010년 7,709억원에서 2011년 6,029억원으로 21.7% 감소한 이후 연평균 4%씩 증가하여 2015년 7,079억원 수준

〈표 II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전망) | 2017년 (전망) |
|-----|--------|--------|--------|--------|--------|--------|---------------|---------------|
| 소득세 | 4,269 | 4,924 | 6,506 | 6,384 | 6,845 | 9,011 | 10,037 | 10,606 |
| 법인세 | 7,709 | 6,029 | 6,323 | 6,256 | 6,967 | 7,079 | 8,168 | 8,584 |
| 계 | 11,978 | 10,953 | 12,829 | 12,640 | 13,812 | 16,090 | 18,205 | 19,190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동 제도 활용도가 법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함
 - 2010~2015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연평균 6.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규모가 연평균 16.1%씩 증가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감면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2011~2016년의 기간 동안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분의 경우 연평균 15.3%씩 증가했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분의 경우 연평균 6.3%씩 증가

- 2012~2017년의 기간 동안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분의 경우 연평균 10.3%씩 증가했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분의 경우 연평균 6.3%씩 증가
- 여타 항목을 포함한 소득세 조세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의 2배 안팎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줄곧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는 2011년 이후 연평균 6.3%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11년 9.2조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5년 6.4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는 2011년 6천억원 수준에서 연평균 6.3%씩 증가하여 2015년 7천억원, 2016년 8천억원 규모로 확대됐음

〈표 II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 | 중기특별세액감면 | | | 다른 항목 포함 | | |
|----------|----------|---------|---------|----------|---------|---------|
| | '10~'15 | '11~'16 | '12~'17 | '10~'15 | '11~'16 | '12~'17 |
| 소득세 조세지출 | 16.1 | 15.3 | 10.3 | 5.2 | 8.9 | 6.0 |
| 법인세 조세지출 | -1.7 | 6.3 | 6.3 | -2.0 | -6.4 | -4.7 |
| 소득·법인 합계 | 6.1 | 10.7 | 8.4 | 3.1 | 3.6 | 2.7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다. 수혜자 현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20% 수준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3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기준 82.7만명의 개인사업자와 16만개의 법인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67.7만명이 동 제도를 활용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82.7만명 수준에 달함
 - 법인사업자의 경우 2011년 12.5만개에서 2015년 16만개 법인으로 동 제도 이용 기업 수가 확대됐음

- 이러한 이용자 수의 증가추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유형별 동 제도 이용 기업 비중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 수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33%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2014년부터 별도로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수를 포함할 경우 이용자 비중은 16.7% 수준으로 낮아지나 이전 연도의 부동산임대사업자 수가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되지 않아서 이를 제외하고 비중을 산출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동 제도를 이용하는 법인사업자 비중은 2012년 신고기준 41.5%로 확대되기도 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전과 이후 연도의 이용자 비중은 33% 수준에 불과
- 동 제도의 경우 수익성을 확보한 중소기업은 별다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이용자 수가 여타 지원제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2015년 신고기준으로 살펴볼 때,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감면공제 신고 인원 수는 최대 2만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 제도의 신고 인원 수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이러한 높은 활용도는 동 제도의 개편 등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표 II -6> 사업자 유형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이용 사업자 추이

(단위: 명, 개, %)

|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
|-------|---------|------|---------|------|
| | 사업자수 | 비중 | 사업자수 | 비중 |
| 2011년 | 677,200 | 19.5 | 125,046 | 33.9 |
| 2012년 | 704,554 | 19.3 | 131,459 | 41.5 |
| 2013년 | 733,448 | 19.1 | 141,632 | 33.6 |
| 2014년 | 765,496 | 20.4 | 150,687 | 33.5 |
| 2015년 | 827,485 | 20.2 | 159,784 | 33.3 |

주: 1. 비중은 해당 유형의 전체사업자 수 대비 수혜사업자의 비율임

2. 전체 개인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수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 -7>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감면공제 신고 인원 현황: 2015년 신고기준

(단위: 건)

| | 중소기업 신고인원 | | | 일반법인 신고인원 | 합계 |
|------------------------|-----------|---------|---------|--------------|---------|
| | 개인 | 법인 | 소계 | |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064 | 4,348 | 14,412 | - | 14,412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827,485 | 159,784 | 987,269 | - | 987,269 |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n.a | 20,696 | 20,696 | 1,399 | 22,095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2,889 | 2,607 | 2,892 | 869 | 3,761 |

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조세지출예산서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소득세분 조세지출 규모가 2016년 629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얼마나 많은 개인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지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나 있지 않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

2. 문제점

- (항구화) 동 제도는 1992년 말 최초 도입될 당시에 중소 제조업이 처했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였으나 25년간 정책대상자를 확대하며 항구화됐음
 - 한번 도입된 조세지원제도는 이해관계자를 형성하고 이들의 이해가 정치과정 에 개입되어 정책대상자를 확대하며 제도의 지속적 확대를 유발함
 - 이처럼 항구화된 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정책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합리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제도에 의해 형성된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인해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대상자 설정 방식)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정책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설정해왔으나, 정책대상 업종의 선정은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
 - 수혜업종의 선택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형태로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를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여러 서비스업종들이 정책대상자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 우리 경제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한 경제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가격체계를 왜곡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 기대효과보다는 업종간 세부담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전반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새로운 산업의 출현·성장 및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생성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의 정책대상자 설정은 부적절함
 - 국민정서상 육성지원의 대상 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업종을 정책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대상자를 설정할 필요
 -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부 열거된 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정책대상자 여부를 납세자가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납세순응비용을 상승시키고 조세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함
- (제도 구성 요소) 동 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한 경제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서 제도 활용도는 높지만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성향 제고를 촉진하기 어려움
- 동 제도의 유일한 수혜요건은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뿐임
 -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감면여부는 흑자 여부에 의해 결정됨
 -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고용을 확대하거나 하는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활동에 근거하여 조세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어서 혁신성향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도입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성향이 동 제도에 의해 제고되기 어려움
- (정책목적의 달성 가능성) 동 제도의 최초 도입 당시 입법취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을 지원하는 데 있었지만 조세지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기업에 한정되므로 정책대상기업의 일부분이어야 할 손실기업들은 동 제도의 수혜대상기업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초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은 도입 당시에도 명확히 지적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당시 국회 재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도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에게 사후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금융지원이나 정부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과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³⁾
- 그러나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대되고 항구화되어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의 단순 보조금 성격을 가지며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 특히 손실 중소기업을 정책대상자에서 오랜 기간 배제하게 됨
- 기업경영 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실기업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조세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더욱 적절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 협조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8.9조원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사업 중 11.2조원을 적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대한민국 국회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2. 12, p. 6, 김학수(2016)에서 재인용

Ⅲ. 정책타당성 평가



Ⅲ. 정책타당성 평가

1. 정부의 역할과 정책대상자 설정의 적정성

-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 성향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상품시장 진입장벽, 불공정거래 등 작은 규모에서 발생하는 기업경영상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관측되는 공통적인 현상이나 정부 정책지원의 타당성을 주로 시장실패에서 찾고 있음
 -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지원 정책을 수행
 - 상품시장 진입장벽 및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행
 - 이외에 중소기업의 작은 규모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보조금 지원

-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비조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정부정책 이외에도 조세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정치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정부정책이 형성되며 이러한 정책들은 조세제도의 복잡성 및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Burton(2006)은 주장하면서 호주의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 Gale and Brown(2013)은 미국 경제의 고용창출과 혁신성향을 제고하는 데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 이들은 혁신성향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소기업’이 아니라 ‘신

생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Auto and Holz(2008)도 고성장기업의 전형적인 특성을 파악하면서 고성장기업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정책 측면의 규모 기준에 따른 지원보다는 다양한 단계별 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고성장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 OECD(2015)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수혜대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
 - 조세지원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시장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정책대상자의 적절한 설정이 필요
 - 중소기업의 세금부담보다는 납세협력을 위해 수반되는 어려움은 기업의 크기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 납세협력비용 저하를 위해 세제의 단순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최초 도입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2년 중소 제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동 제도에 의해 세 부담이 완화되는 수혜가능 기업들은 흑자기업들에 한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해주자는 정책목표는 일견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으나 동 제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와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의 도입 당시 중소 제조업들의 도산율이 급등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난을 동 제도로 완화해야 할 정책목표로 볼 경우,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결과적으로 동 제도로 해소하고자 하는 시장실패 또는 시장기능의 문제점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시장개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당시 중소 제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세정책으로 어떤 대상자들을 지원할 것인지 보다 명확히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자를 설정했어야 함
- 이후 정책대상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이후에 추가된 업종들은 해당업종의 경영난 지원이라는 최초의 정책목표보다는 업종 간 형평성 제고 또는 정부의 특정 업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에 따라 추가된 결과로서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더욱 불명확해짐
- 1994년 12월 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책대상자로 추가되면서부터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은 당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국회 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나가고 있는 현행의 조세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향후 다른 업종의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요구 증대가 예상되므로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라고 지적했음⁴⁾
- 이후 1995년 12월 말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종합유선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이 동 제도의 감면업종으로 추가됐다. 당시 재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역시 이러한 감면업종 추가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조세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조세정책 방향과는 부분적으로라도 상충된다고 지적함⁵⁾
- 2000년 이후 여러 산업들이 정책대상 업종으로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회 회의록이나 의안 원문에서 「조특법」 제7조와 관련하여 과거 국회에서 우려했던 조세감면을 축소하려는 정책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은 찾아보기 어려움⁶⁾

4) 대한민국 국회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4. 12, p.6, 김학수(2016)에서 재인용

5) 대한민국 국회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5. 12, p.5, 김학수(2016)에서 재인용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동 조항의 개정안과 관련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말 개정을 통해 동 제도의 감면비율을 50% 축소한 바 있으나 2004년 말 개정에서 다시 2003년 수준으로 복원됐다.

- 2000년 12월 말에 광업, 건설업, 어업, 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을 비롯하여 폐기물 및 폐수 처리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만 개진됐음
- 2002년에는 영화관련 산업, 전기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의 9개의 업종이 새로운 감면업종으로 추가됐음
 - 다만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기 위해서 개인의원(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감면업종에서 배제했으나 소규모 의원보다 큰 규모의 병원은 감면대상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
- 이후에도 여러 세부업종이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로 추가됐음

- 2016년 말 세법개정에서 확대된 정책대상업종을 살펴보면, 동 제도의 정책목표는 외부불경제 교정이라는 목표를 추가하며 더욱 불명확해지는 결과를 초래함
 -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임업을 추가했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개인의원을 감면업종에서 배제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보완
 - 오래전부터 정책대상업종으로 포함되어 있던 어업 및 작물재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업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됨
 -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2016.6.3.)」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을 동 제도의 정책대상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중소 제조업 경영난 지원에서 출발한 정책목표는 신산업 육성 지원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 제고 및 외부불경제 교정이라는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포괄하게 됨
 - 하나의 제도로 지나치게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대상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책수단의 적절성

가. 세액감면 방식의 적절성

- 세액감면 방식은 중소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을 높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 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세액공제, 세액감면, 비과세, 저율과세, 과세이연 등 다양한 조세지원 방식 중 세액감면 방식은 산출된 세액의 일정한 비율을 감면해주는 단순한 방식으로 동 제도의 적용이 간단하여 납세순응비용이 크지 않음
-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적절한 지원방식이라 할 수 없음
 -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조세지원제도로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적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난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제행위를 충족하도록 개편하고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환급해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특정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 고유의 설비투자 확대 또는 전문인력 고용 등과 같은 구체적 수혜요건이 명시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수혜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흑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조금의 형태로서 해당 기업의 성장과 혁신성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 또한 동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지원제도로써 여타 혁신성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제도의 활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세먼지의 폐해 축소와 같은 외부불경제 교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가한 동 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전기차 충전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대여 중소기업들이 전체 보유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유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움
 - 동 제도의 수혜요건인 전기자동차 보유비율이 1~49.9% 사이인 중소기업은 전기차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은 기업과 동일하게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동 제도 수혜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차등적 감면율의 적정성

- 동 제도의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에 따라 5~30%의 감면율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적 감면율 적용 이외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정책목표를 보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보다 높은 감면율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존재
 - 기업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면율을 설정하는 것은 과거 성장정책의 산물로서 현재의 여건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규모 의존적 정책은 기업의 성장에 문턱을 설정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기업과세에 있어서 바람직한 제도설계로 보기 어려움
 - 김학수(2016b)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기준변수들의 상한선 전후로 기업들의 분포에 결집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세법에서도 원용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가 매우 넓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 기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최대 1,5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음
 -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대체로 없거나 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세법에 준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원용하고 있음
 - 여타 국가들의 경우 일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요건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기업규모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음
 - Freedman(2009)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는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정말 작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표 III-1〉 각국의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 국가 |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유무 | 세법상 중소기업 규정 | |
|-----|-------------------|---|--|
| 미국 | × | - | |
| 영국 | × | - | |
| 캐나다 | × | - | |
| 일본 | ○ | · 법인세법 제66조 | · 자본금 총액이나 출자금이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인은 경감세율 적용 |
| 호주 | ○ | ·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328-110 | · 연간매출액 200만호주달러 미만 |
| 프랑스 | ○ | 매출액 763만유로 미만(개인주주 지분 75% 이상) | |
| 독일 | × | - | |

자료 1.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15.htm, 접속일: 2016. 7. 13)
 2. 호주 소득세법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328-110
 3. 김학수(2016b)에서 재인용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어서 결집효과가 늦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세제도가 중소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임
 - Jones and Kim(2014)는 중소기업의 성장의욕을 저해하며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을 조장할 수 있는 기업규모별 차등적 조세지원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제조업을 우대하는 감면율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여러 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기업경영 현실과 서비스업의 성장이 필요한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업종별 차등적 지원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확히 중소기업의 겸업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들도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등 판매서비스업을 겸업하고 이에 따른 분쟁도 발생하고 있음
 - 1994년 이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관련 심사 및 심판청구 사례는 203건이 검색되었으며 이중 40%에 달하는 81건이 업종관련 분쟁으로 나타남
 - 조심2015서2362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내에서 제조업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제조업 매출액은 도매업보다 작지만 과세대상 소득은 도매업의 3배에 이르며 상시 종업원 16명 중 11명이 제조업에 근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업 감면율 20%를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처분청은 부인하여 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

- 매출액 비율을 이용하여 주된 업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수혜 여부 및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분쟁을 초래하며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외에도 다양한 업종관련 분쟁이 관찰되며, 2016년 총 9건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관련 심판청구사건 중 8건이 업종 관련 분쟁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

<표 III-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업종 관련 심판청구 검색건수

(단위: 건, %)

| 연도 | 조특제7조 관련 분쟁 | 업종 분쟁 | 비율 |
|------|-------------|-------|-------|
| 1994 | 1 | 1 | 100.0 |
| 1995 | - | - | - |
| 1996 | 1 | 0 | 0.0 |
| 1997 | 5 | 2 | 40.0 |
| 1998 | 4 | 0 | 0.0 |
| 1999 | 5 | 1 | 20.0 |
| 2000 | 14 | 2 | 14.3 |
| 2001 | 10 | 4 | 40.0 |
| 2002 | 7 | 2 | 28.6 |
| 2003 | 15 | 2 | 13.3 |
| 2004 | 7 | 2 | 28.6 |
| 2005 | 9 | 6 | 66.7 |
| 2006 | 18 | 14 | 77.8 |
| 2007 | 4 | 4 | 100.0 |
| 2008 | 4 | 2 | 50.0 |
| 2009 | 11 | 4 | 36.4 |
| 2010 | 11 | 1 | 9.1 |
| 2011 | 25 | 9 | 36.0 |
| 2012 | 11 | 5 | 45.5 |
| 2013 | 8 | 3 | 37.5 |
| 2014 | 10 | 3 | 30.0 |
| 2015 | 14 | 6 | 42.9 |
| 2016 | 9 | 8 | 88.9 |
| 합계 | 203 | 81 | 39.9 |

주: 심판청구의 연도별 분류는 판결일 기준으로 통일함

자료: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 조세심판원, 조세법령·판례, (<http://www.tt.go.kr/mUser/law/lawList.do>, 2017년 4월 6일 접속)
2.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2017년 4월 6일 접속)
3.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2017년 4월 6일 접속)

- 업종별 조세부담의 격차가 클수록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김학수(2014)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필요
 - 현재 우리 경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고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한 상황이나 특정 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원배분 왜곡을 초래하는 업종 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경제성장과 침체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다. 정책대상자 설정방식의 문제

- 최근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대상업종은 여전히 열거주의 방식으로 해당 조문에 열거되어 있어서 여러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여러 서비스업종을 정책대상업종에서 배제함으로써 제조업과 비정책대상 서비스업종 사이의 세부담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비정책대상 서비스업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김학수(2014)는 OECD 회원국처럼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경제에서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종 간 세부담 격차의 주된 원인이 특정 업종 중심의 비과세감면제도임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대상자를 설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오랜기간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나 그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우호적인 조세지원제도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훼손하므로 해당 수혜업종의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효율성 훼손보다 클 때에만 그러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됨
 - 정부의 업종 선정이 정확했다면 동 제도의 수혜 업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나 총자산 증가율과 같은 성장성 지표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어야 하나 이후에

서 살펴볼 효과성 평가 결과는 그러한 성장성 지표에 동 제도가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그간 정부의 열거주의 방식에 따른 정책대상자 선정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입법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의 정책대상자 설정은 향후 새롭게 생성되어 발전할 융복합 산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제때에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대상자를 설정할 필요

- 동 제도에 의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할지라도 정책대상자의 설정이 열거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새롭게 생성되어 발전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정부가 결정하더라도 입법과정의 불확실성과 소요되는 긴 시간으로 인해 제때에 지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서상 육성 지원의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도박, 유흥업 등을 정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정책대상으로 포함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책대상자 설정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 2016년 말 세법개정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함께 대표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책대상업종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대상자 설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역시 일부 업종에 국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창업이야말로 모든 산업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이 제도의 정책대상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책대상업종을 규정하고 있는 동 제도의 정책대상업종들 중 일부 업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명과 일치하지 않아서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

- 제조업의 경우 대분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한국표준산업분류 3단위 이하의 세부 또는 세세분류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표준산업분류의 어느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개별법에 근거하여 해당 업종을 지원하거나 특정 업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의 경우 업종 구분이라기보다는 해당 제조업의 업태에 해당함
 - 또한 엔지니어링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물류산업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과 같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열거된 정책대상업종의 대부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업종명칭과 일치하지 않음
- 정책대상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조심2015서1894의 사례는 매니저업(73901)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의 세부업종임을 인지했으나 「조특법」 제7조에 열거되어 있는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혼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함에 따라 불복하고 심판청구한 사례임
 - 이러한 불필요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조문을 보다 명확히 서술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소할 수 있을 것임

3.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 46개 정책대상 업종의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에게 흑자인 경우에 한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등 제도의 정책목표는 경영난 완화, 특정 산업 육성지원, 외부불경제 교정 등 다양하므로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를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현황을 국세통계연보와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현황과 비교하고자 함
- 먼저 중소기업청에서 협조해준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현황을 수혜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세통계연보 및 조세지출예산서를 이용하여 비교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검토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현황은 2017년 4월 13일에 중소기업청 담당사무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본 심층평가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연구진이 중소기업청에 요청하여 협조 받은 2013~2015년 자료임
- 또한 프로그램예산체계상에서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1200)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단위사업의 정책대상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함

가.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 현황 및 비교

1) 전체 현황

- 2013년 23.2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규모는 2015년 28.9조원 규모로 연평균 11.5%씩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의 주된 수혜자는 개인사업자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규모는 2013~2015년 기간동안 연평균 18%씩 증가하며 전체 지원규모 증가추이를 크게 상회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지원규모는 연평균 8.7% 증가
 - 사업자유형별 지원규모의 증가추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법인사업자 지원규모 비중이 2013년 70.9%에서 2015년 67.4%로 소폭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법인과 개인을 합계한 전체 수혜사업자 수는 2013년 27.8만명(개)에서 2015년 33.9만명(개)로 연평균 10.4%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는 개인사업자 수혜자 수 증가추이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남
 - 법인사업자 수는 2015년 4.7만개 수준으로 전체 수혜자 수의 13.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는 0.85억원 안팎 수준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4.1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0.3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평균 지원규모도 연평균 6.5%씩 증가하며 전체 평균 증가율과 법인사업자 평균 지원규모 증가율을 크게 상회

<표 III-3>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사업자 유형별 지원현황

(단위: 억원, 개, 명, %)

| | 예산사업 규모 | | | 수혜사업자 수 | | | 기업 평균 지원 규모 | | |
|---------|---------|---------|--------|---------|--------|---------|-------------|------|------|
| | 전체 | 법인 | 개인 | 전체 | 법인 | 개인 | 전체 | 법인 | 개인 |
| 2013 | 232,093 | 164,478 | 67,616 | 277,983 | 40,326 | 237,657 | 0.83 | 4.08 | 0.28 |
| 2014 | 249,991 | 177,800 | 72,193 | 285,246 | 43,417 | 241,829 | 0.88 | 4.10 | 0.30 |
| 2015 | 288,655 | 194,461 | 94,192 | 338,830 | 46,952 | 291,878 | 0.85 | 4.14 | 0.32 |
| 연평균 증가율 | 11.5 | 8.7 | 18.0 | 10.4 | 7.9 | 10.8 | 1.0 | 0.8 | 6.5 |

자료: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 2015년 신고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수혜자 수는 98.7만명(개)에 달하며 예산사업 수혜자 수의 3배에 달하지만 조세지출 규모는 예산사업의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중소기업청의 예산사업을 지원받은 흑자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도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법인사업자의 경우 흑자 법인사업자 수 비중은 6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흑자 법인사업자 지원규모 비중은 85% 안팎수준으로 나타나서 예산사업도 흑자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중복성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남
 - 흑자 법인사업자 지원규모 비중은 2013년 이후 85% 안팎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흑자 법인사업자 수는 2013년 69.2%, 2014년 64.2%, 2015년 57.5%로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흑자 법인사업자 평균 예산사업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개인사업자의 경우 흑자 개인사업자 지원 규모는 20% 안팎에 불과하고 흑자 개인사업자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유사중복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흑적자 여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흑자 개인사업자 지원규모와 흑자 사업자 수 비중이 모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3년 흑자 개인사업자 예산 지원규모는 전체 개인사업자 지원 규모의 36.4%이었으나 2014년 23.8%, 2015년 16.5%로 하락
 - 2013년 흑자 개인사업자 수 비중은 13.7%이었으나 2014년 4.7%, 2015년 2.9%로 하락
 - 예산사업의 지원을 받은 95% 안팎의 대다수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청 DB에서 흑적자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 향후 중소기업 관련 DB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매출액 규모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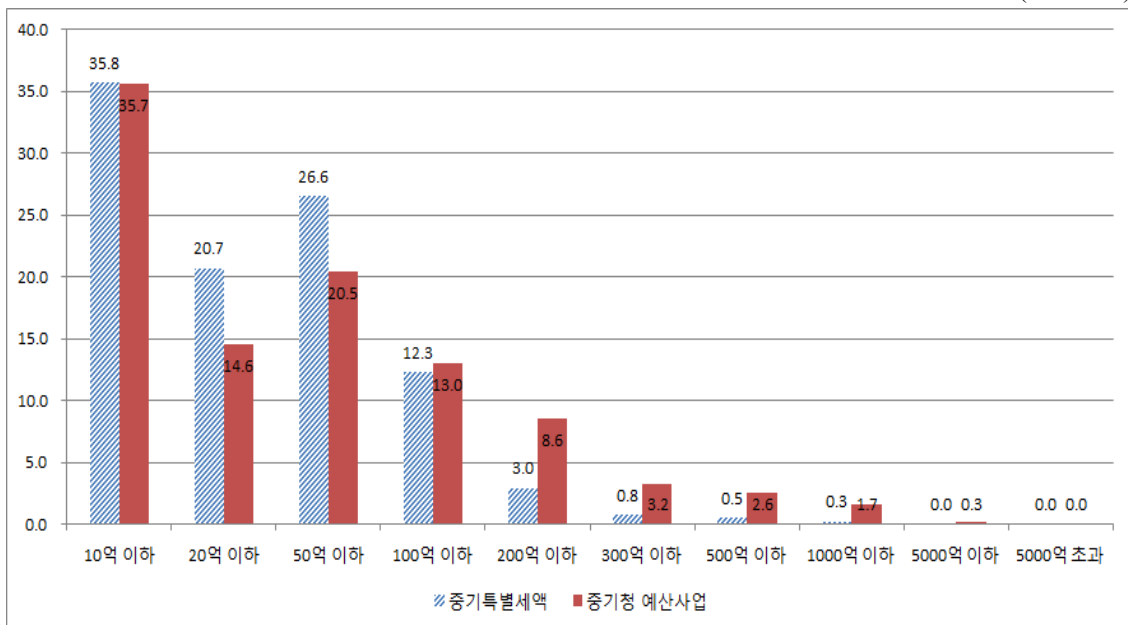
- 국세통계연보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모 및 법인 수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와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유사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법인 수 비중의 경우 각 수입금액 구간의 수혜자 비중의 추이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혜법인 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입금액 규모는 10억원 이하 구간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경우 35.8%, 예산사업의 경우 35.7%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이후 추세적으로 수입금액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 수 비중은 조세지출과 예산지원의 경우 모두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수혜금액 비중의 경우 구간별 비중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유사하게 나타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기업들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중기청 예산사업의 지원은 수입금액 50억~200억원 이하 기업들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지원은 200억원 초과 기업들에게도 다소 높은 비중으로 지원되고 있음

- 이상의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법인 수 비중과 수혜금액 비중의 비교는 중기청 예산사업 지원을 받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 현황은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중기청 예산사업 개인사업자 수혜 현황과 비교하기 어려움
 - 중기청 예산사업의 법인사업자 수혜현황 중 매출액 규모가 누락된 2,367개 법인에 지원된 2,434억원을 제외하고 법인 수 및 수혜 금액 비중을 구했음

[그림 III-1]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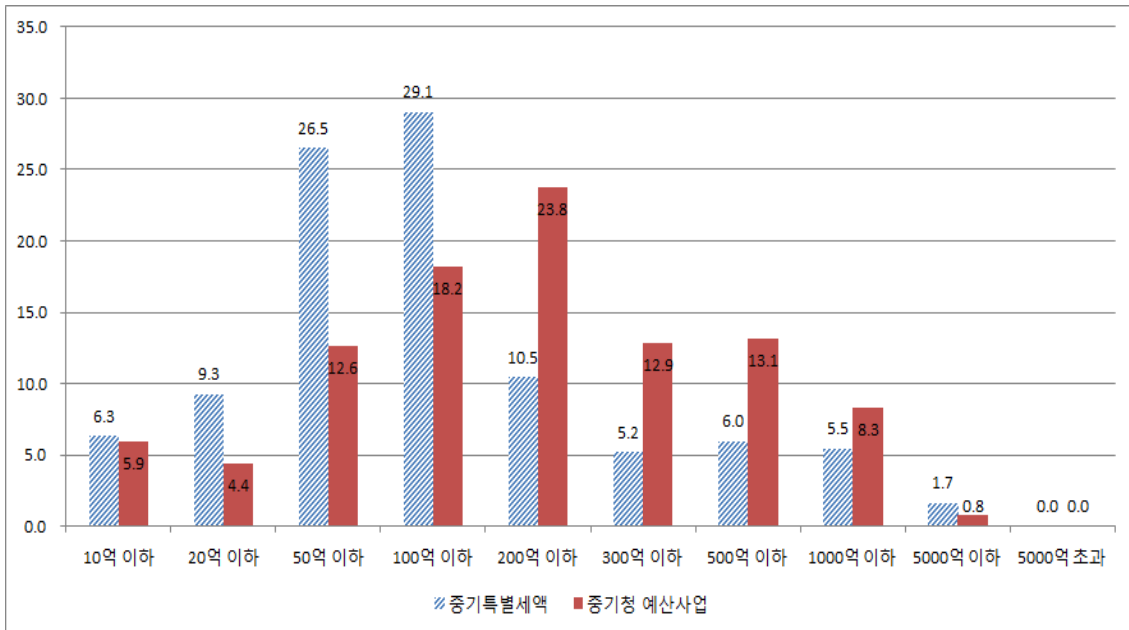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2.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그림 III-2]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금액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2.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3) 업종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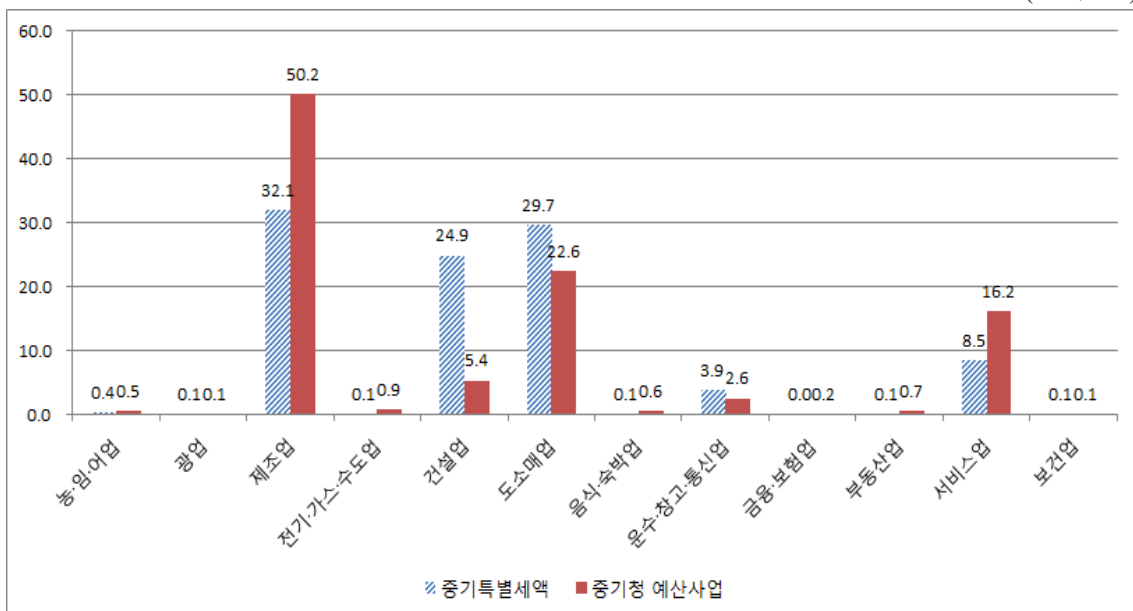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업종별 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두 가지 정부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법인 수의 제조업 비중은 중기특별세액감면의 경우 32.1%,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경우 5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혜금액의 제조업 비중은 두 가지 유형의 정부지원 모두 5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제조업 영위 법인 수는 5.1만개 수준이나 예산사업 수혜 제조업 영위 법인 수는 2.3만개 수준이어서 중기청 예산사업을 수혜한 독자 제조업 영위 기업들은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 제조업 영위 기업들로 추정됨

- 건설업의 경우 중기청 예산사업 수혜법인 수와 금액 비중은 각각 5.4%와 1.7%로 낮게 나타났으나 조세지출 수혜법인 수와 금액 비중은 각각 24.9%와 22.3%로 높게 나타나며 유사중복지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법인 수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예산사업 수혜 법인 수는 4.6만개 수준에 불과하고 건설업 조세지출 수혜법인 수는 4만개에 달하나 예산사업 수혜법인 수는 2,462개에 불과함
 - 예산사업 수혜 건설업 영위 흑자 법인들의 경우 대부분 중기특별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외에 법인 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정부지원의 수혜금액 비중도 공통적으로 도소매업이 서비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높은 유사중복지원의 개연성을 시사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금액 비중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예산사업의 경우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예산사업 수혜기업 수보다 모든 업종에서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예산사업 수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기업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III-3] 업종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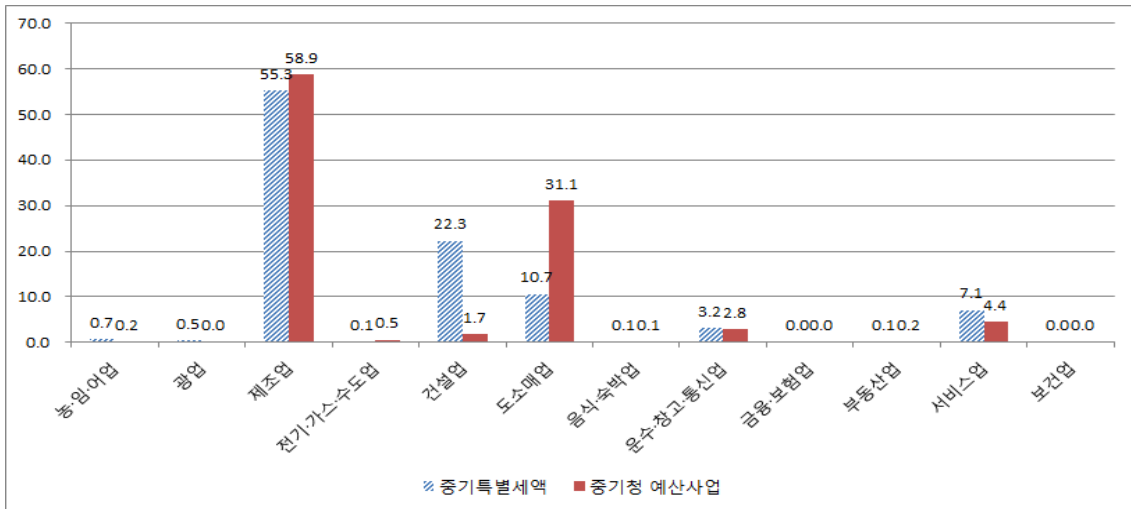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2.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그림 III-4] 업종별 수혜금액 비중(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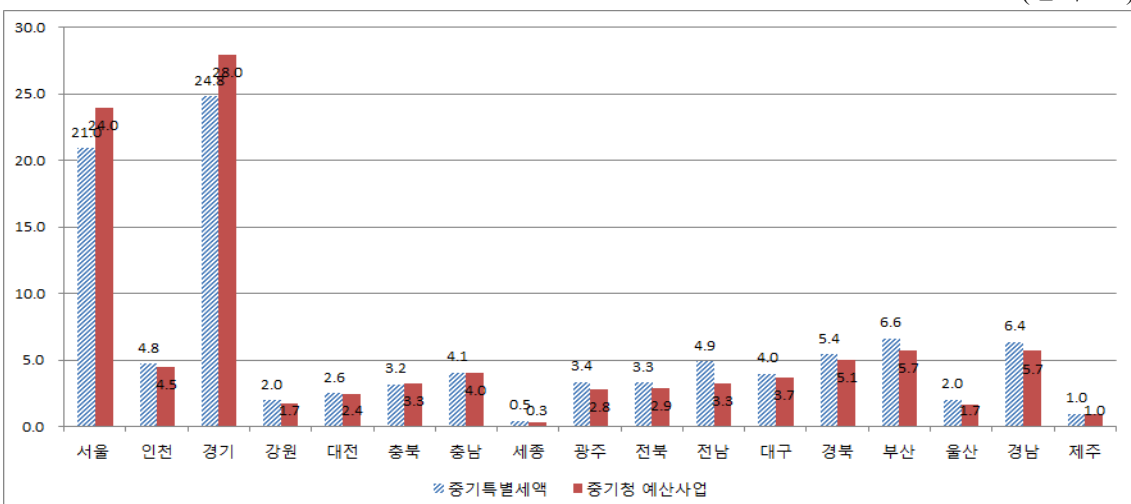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2.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4) 지역별 지원현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지역별 수혜법인 수와 금액 비중은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고 여타 지역의 경우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유사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III-5] 지역별 수혜법인 수 비중(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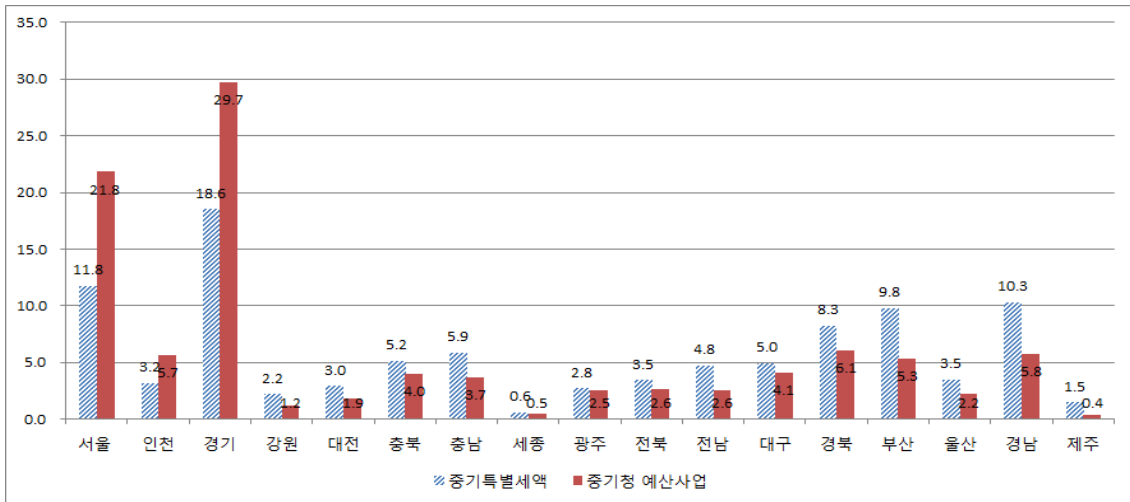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2.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그림 III-6] 지역별 수혜금액 비중(2015년)

(단위: %)



자료: 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6년
2.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나. 단위사업 비교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다양한 정책목표 중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예산 1200의 세부사업의 정책대상자와 지원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미세먼지 폐해 축소와 같은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청의 세부사업은 파악되지 않음

-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의 4개 세부사업 중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1253-301)은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컨설팅 등 정책자금지원 성과 제고를 위한 부수적 사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유사중복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기업진단, 청년전용창업자금연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도약자금 대출기업에 연간 4회의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의 내용이므로 여타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임

- 투융자복합금융지원(1254-301)의 정책대상자는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서 융자와 투자 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목표가 특정 산업 육성 지원인 경우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 투융자복합금융지원(1254-301)의 수혜기업이 후자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유사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음
-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는 투융자 규모는 2015년 결산기준 1천억원 수준이나 최대 5년간 저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기업의 실제 수혜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단위사업 성장안정자금(1261)은 신성장기반자금(301)과 긴급경영안정자금(302)의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신성장기반자금(301)은 유사중복성의 가능성이 높고 긴급경영안정자금(302)의 경우에는 유사중복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신성장기반자금(301)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7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해당 기업이 후자기업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음
- 긴급경영안정자금(302)은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일시적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업들이 적자일 가능성이 크고 후자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중복적 지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III -4>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1200)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 | 세부사업명 | 15년 (결산) | 16년 (예산) | 17년 (예산) |
|------|-------------------|------|------------------|-------------|-------------|-------------|
| 1253 | 정책지원성과향상 (기금) | 301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 9,952 | 12,742 | 12,680 |
| 1254 | 투융자복합금융지원 (기금) | 301 |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 100,000 | 150,000 | 150,000 |
| 1261 | 성장안정자금(기금) | 301 |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 1,127,000 | 1,115,000 | 880,000 |
| | | 302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 600,000 | 190,000 | 75,000 |

자료: 중소기업청 협조자료

IV. 효과성 평가



IV. 효과성 평가

1. 분석개요 및 자료

가. 개요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도입된 이후 다양한 업종을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대상자로 추가하거나 정부가 선정한 유망 업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정책대상자로 포함시켜 왔음
- 향후 대상의 확대 혹은 축소,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수혜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안정 및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의 입법취지가 규정하고 있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기업재무 관련 연구, 특히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를 살펴봄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성과지표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함
 - 가용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안정성: 부채비율
-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사용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봄

- 특히, 국세청 자료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에도 경쟁 혹은 보완 관계에 있는 세액감면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감면제도와 어느 정도의 경쟁관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예컨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았음
 -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임(「조특법」 제127조 제4항 및 제5항)

나. 사용자료

- 국세청에서 협조해 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신고서식 및 재무제표상에서 찾을 수 있는 변수들로 구축된 기업수준의 패널자료 형태의 분석자료를 활용함
 - 2015년 기준 5,000개 법인사업자와 15,000개의 개인사업자를 무작위 추출하고 해당 사업자의 2011~2015년 기간의 개별 납세자료와 재무자료를 결합하여 패널 자료의 형태의 분석자료를 구축함

1) 법인사업자 자료

- 본 분석에서 사용한 법인의 연도별 분포는 <표 IV-1>, [그림 IV-1]과 같음
 - 2015년에는 5,000개의 기업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2011년에는 3,251개의 기업이 생존해 있었음
 - 4년 사이에 1,749개의 법인이 새로 편입된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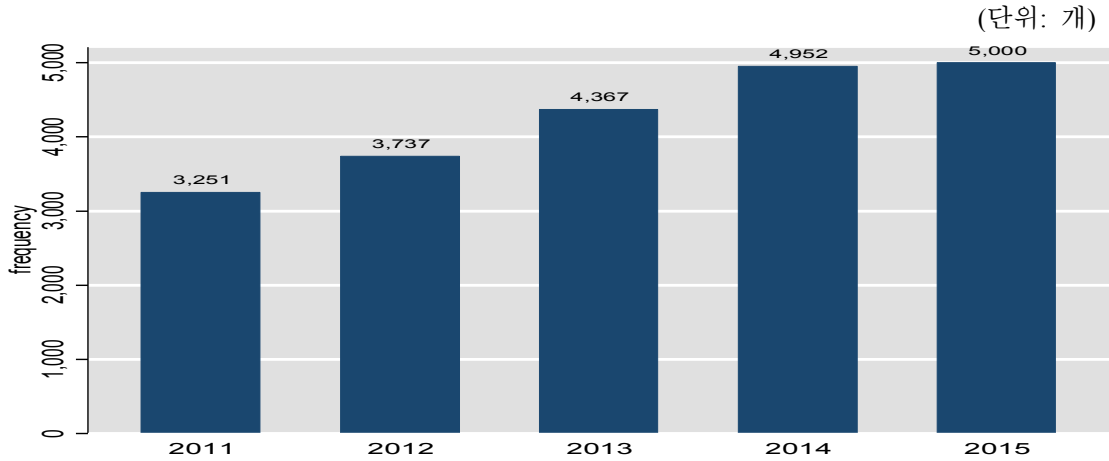
<표 IV-1> 연도별 법인의 분포

(단위: 개, %)

| 연도 | 빈도 | 비중 | 누적 |
|------|--------|-------|-------|
| 2011 | 3,251 | 15.26 | 15.26 |
| 2012 | 3,737 | 17.54 | 32.8 |
| 2013 | 4,366 | 20.49 | 53.29 |
| 2014 | 4,952 | 23.24 | 76.53 |
| 2015 | 5,000 | 23.47 | 100 |
| 총계 | 21,306 | 100 |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1] 연도별 법인의 분포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여부별 기업 수는 <표 IV-2>, [그림 IV-2]에 제시되어 있음
 - 5년 평균 약 30%의 흑자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에는 전체 5,000개의 법인 중 27.7%인 1,385개의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였으며 2011~2014년에도 30% 정도의 법인이 사용하고 있었음
 - 시간이 지나면서 동 제도의 이용 법인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표 IV-2>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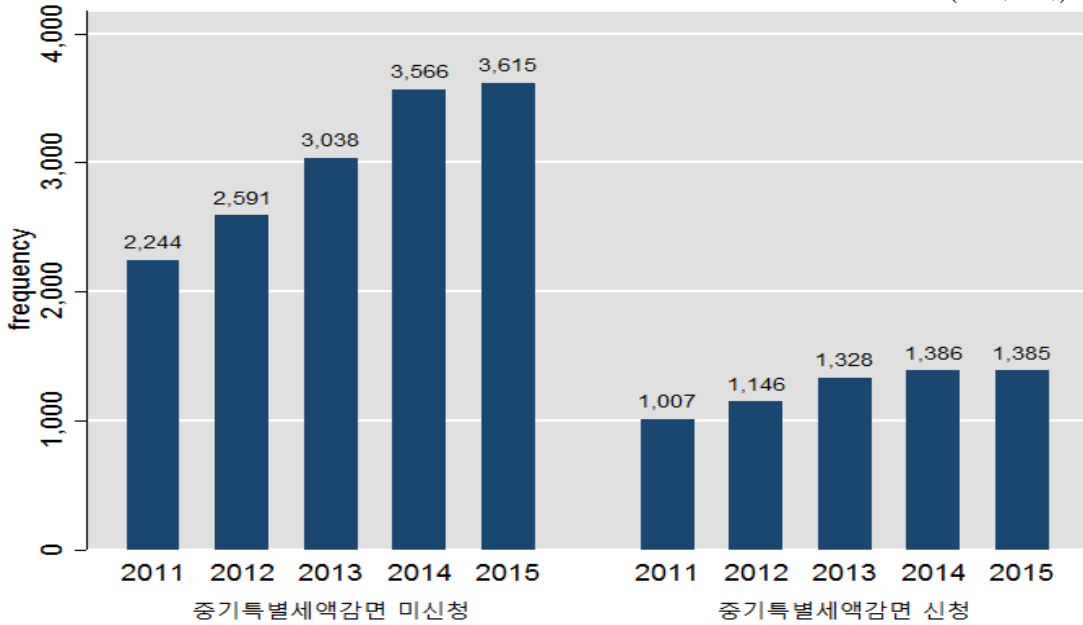
(단위: 개, %)

| 연도 | 미사용 | 사용 | 총계 |
|------|---------|---------|--------|
| 2011 | 2,244 | 1,007 | 3,251 |
| | (69.02) | (30.98) | (100) |
| 2012 | 2,591 | 1,146 | 3,737 |
| | (69.33) | (30.67) | (100) |
| 2013 | 3,038 | 1,328 | 4,366 |
| | (69.58) | (30.42) | (100) |
| 2014 | 3,566 | 1,386 | 4,952 |
| | (72.01) | (27.99) | (100) |
| 2015 | 3,615 | 1,385 | 5,000 |
| | (72.3) | (27.7) | (100) |
| 총계 | 15,054 | 6,252 | 21,306 |
| | (70.66) | (29.34) | (100)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2]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법인 수

(단위: 개)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전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 혹은 미사용했던 법인이 올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할 가능성, 즉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의 추정치가 <표 IV-3>에 제시되어 있음
- 전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던 기업 중 77% 정도가 금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속 사용하였음(Panel A)
 - 법인세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85.8%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한 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했던 기업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음
- 반면 전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할 가능성은 8.8%에 지나지 않았음
 - 법인세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85.4%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V-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이행확률

(단위: %)

| 구분 | | t | | |
|-----|------------|-------|-------|-----|
| t-1 | 패널 A: 전표본 | 미사용 | 사용 | 총계 |
| | 미사용 | 91.17 | 8.83 | 100 |
| | 사용 | 22.29 | 77.71 | 100 |
| | 패널 B: 세액>0 | 미사용 | 사용 | 총계 |
| | 미사용 | 85.39 | 14.61 | 100 |
| | 사용 | 14.16 | 85.84 | 10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먼저 <표 IV-4>에 제시되어 있는 2015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은 연간 수입이 약 31억원, 미사용 기업은 37.7억원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의 수입금액이 다소 작았음
 - 산출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했을 경우, 미사용 기업의 수입금액은 69.6억원으로 사용기업의 2배를 상회하였음

- 산출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이 27.7백만원, 사용하지 않은 기업이 37.6백만원으로 미사용 기업의 산출세액이 컸음
 - 최종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이 21.2백만원, 사용하지 않은 기업이 32.3백만원이었음

- 다른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이 미사용 기업에 비해 매출액, 자산, 부채 규모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임을 알 수 있음(<표 IV-4> 참조)

〈표 IV-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법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

(단위: 개, 원)

| 구분 | 중기업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 수입금액 | 3,615 | 3,770,937,432 | 14,079,234,807 | 1,385 | 3,104,076,785 | 4,960,708,047 |
| 결산서상당기순손익 | 3,615 | 23,903,190 | 2,798,347,792 | 1,385 | 164,732,068 | 403,690,658 |
| 과세표준 | 1,372 | 535,348,566 | 2,551,283,131 | 1,385 | 188,547,657 | 436,569,829 |
| 산출세액 | 3,615 | 37,573,669 | 328,903,326 | 1,385 | 27,711,782 | 84,311,338 |
| 법인세 | 3,615 | 32,258,442 | 307,997,614 | 1,385 | 21,187,075 | 69,854,070 |
| 매출액 | 3,615 | 3,771,763,232 | 14,077,276,499 | 1,385 | 3,101,512,141 | 4,954,207,927 |
| 영업손익 | 3,615 | 104,929,016 | 1,722,067,724 | 1,385 | 179,680,493 | 351,538,254 |
| 자산총계 | 3,615 | 4,692,198,092 | 26,393,599,399 | 1,385 | 2,020,715,298 | 4,575,610,325 |
| 부채총계 | 3,615 | 2,950,475,610 | 17,955,521,716 | 1,385 | 980,485,396 | 2,273,982,812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손익 | 3,614 | 63,269,959 | 2,990,341,021 | 1,385 | 183,513,597 | 439,582,110 |

자료: 국제청 협조자료(2017)

<표 IV -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법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I (세액>0)

(단위: 개, 원)

| 구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 수입금액 | 1,371 | 6,959,658,794 | 18,528,590,184 | 1,385 | 3,104,076,785 | 4,960,708,047 |
| 결산서상당기순이익 | 1,371 | 432,454,701 | 2,150,369,814 | 1,385 | 164,732,068 | 403,690,658 |
| 과세표준 | 1,371 | 535,739,046 | 2,552,173,073 | 1,385 | 188,547,657 | 436,569,829 |
| 산출세액 | 1,371 | 99,072,805 | 528,459,930 | 1,385 | 27,711,782 | 84,311,338 |
| 법인세 | 1,371 | 85,037,098 | 495,734,219 | 1,385 | 21,187,075 | 69,854,070 |
| 매출액 | 1,371 | 6,951,205,874 | 18,523,259,657 | 1,385 | 3,101,512,141 | 4,954,207,927 |
| 영업이익 | 1,371 | 474,804,362 | 2,306,139,850 | 1,385 | 179,680,493 | 351,538,254 |
| 자산총계 | 1,371 | 7,250,667,459 | 34,608,958,386 | 1,385 | 2,020,715,298 | 4,575,610,325 |
| 부채총계 | 1,371 | 3,642,349,068 | 21,088,653,544 | 1,385 | 980,485,396 | 2,273,982,812 |
|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 | 1,370 | 532,807,090 | 2,777,499,943 | 1,385 | 183,513,597 | 439,582,11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는 <표 IV-6>과 [그림 IV-3]에 제시되어 있음
- <표 IV-6>과 [그림 IV-3]에 제시되어 있듯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5년 평균은 약 4.18백만원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5년에 다소 반등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11년 4.79백만원, 2012년 4.27백만원, 2013년 3.85백만원, 2014년 3.75백만원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5년 4.41백만원으로 반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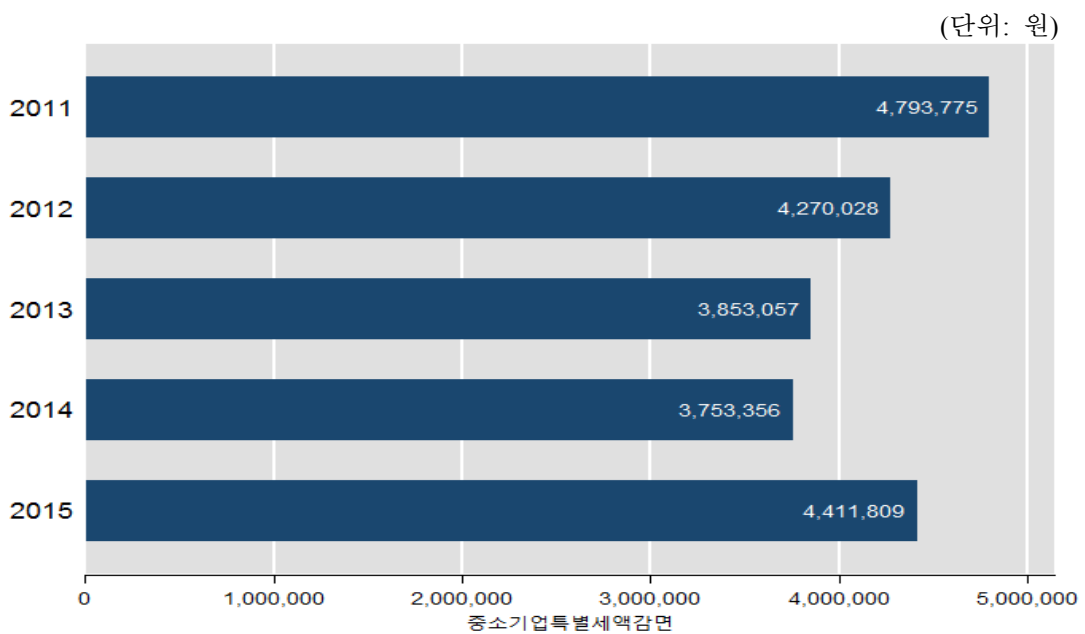
<표 IV-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단위: 원, 개)

| 연도 | 평균 | 표준편차 | 빈도 |
|------|-----------|-------------|-------|
| 2011 | 4,793,775 | 16,741,526 | 1,007 |
| 2012 | 4,270,028 | 13,115,977 | 1,146 |
| 2013 | 3,853,057 | 9,959,670.6 | 1,328 |
| 2014 | 3,753,356 | 8,166,891.7 | 1,386 |
| 2015 | 4,411,809 | 12,300,933 | 1,385 |
| 총계 | 4,182,685 | 12,086,822 | 6,252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3] 법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약 73%의 동 제도 이용 법인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면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감면혜택을 받는 법인사업자도 동 제도를 이용하는 전체 법인사업자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5,000만~1억원의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동 제도 이용 법인사업자의 0.7% 수준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도 0.3%에 달함

<표 IV-7>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사업자 수 분포

(단위: 개, %)

| 감면액 구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
| 300만원 이하 | 732 (72.7) | 848 (74.0) | 975 (73.4) | 1,016 (73.3) | 968 (69.9) | 4,539 (72.6) |
| 300만~500만원 | 97 (9.6) | 112 (9.8) | 119 (9.0) | 124 (8.9) | 145 (10.5) | 597 (9.5) |
| 500만~1,000만 | 74 (7.3) | 84 (7.3) | 114 (8.6) | 116 (8.4) | 126 (9.1) | 514 (8.2) |
| 1,000~5,000만 | 94 (9.3) | 86 (7.5) | 106 (8.0) | 124 (8.9) | 132 (9.5) | 542 (8.7) |
| 5,000만~1억 | 5 (0.5) | 12 (1.0) | 13 (1.0) | 5 (0.4) | 10 (0.7) | 45 (0.7) |
| 1억 초과 | 5 (0.5) | 4 (0.3) | 1 (0.1) | 1 (0.1) | 4 (0.3) | 15 (0.2) |
| 계 | 1,007 (100.0) | 1,146 (100.0) | 1,328 (100.0) | 1,386 (100.0) | 1,385 (100.0) | 6,252 (100.0) |

주: 괄호 안은 전체 감면제도 이용 사업자 중 해당 감면구간에 속하는 사업자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 감면액 상위 10% 이상의 기업들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법인사업자 감면액 총계 대비 62%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 상위 10%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하위 75%의 기업들에 전체 감면혜택의 약 23%만이 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세액감면의 특성상 산출세액이 큰 기업들이 동일한 여건일 경우 더 큰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이므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적절한 지원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표 IV-8>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법인사업자 감면액 분포

(단위: 백만원, %)

| 감면액 구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
| 300만원 이하 | 657 (13.6) | 765 (15.6) | 860 (16.8) | 947 (18.2) | 853 (14.0) | 4,082 (15.6) |
| 300만~500만원 | 377 (7.8) | 440 (9.0) | 452 (8.8) | 478 (9.2) | 553 (9.1) | 2,299 (8.8) |
| 500만~1,000만 | 520 (10.8) | 598 (12.2) | 789 (15.4) | 826 (15.9) | 893 (14.6) | 3,626 (13.9) |
| 1,000~5,000만 | 1,992 (41.3) | 1,683 (34.4) | 1,953 (38.2) | 2,503 (48.1) | 2,552 (41.8) | 10,683 (40.9) |
| 5,000만~1억 | 299 (6.2) | 741 (15.1) | 864 (16.9) | 298 (5.7) | 634 (10.4) | 2,836 (10.8) |
| 1억 초과 | 983 (20.4) | 666 (13.6) | 199 (3.9) | 150 (2.9) | 626 (10.2) | 2,624 (10.0) |
| 계 | 4,827 (100.0) | 4,893 (100.0) | 5,117 (100.0) | 5,202 (100.0) | 6,110 (100.0) | 26,150 (100.0) |

주: 괄호 안은 샘플 내 전체 감면액 중 해당 감면구간에 속하는 사업자의 감면액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2) 개인사업자 자료

- 본 분석에서 사용한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분포는 <표 IV-9>, [그림 IV-5]와 같음
 - 2015년 15,000개의 개인사업자가 추출되었으나 재무제표 변수들이 가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6,500여개에 달해서 이들을 삭제한 후 총 8,440개의 개인사업자 자료가 분석에 활용됨
 - 이 중 2011년에는 4,591개의 개인사업자가 생존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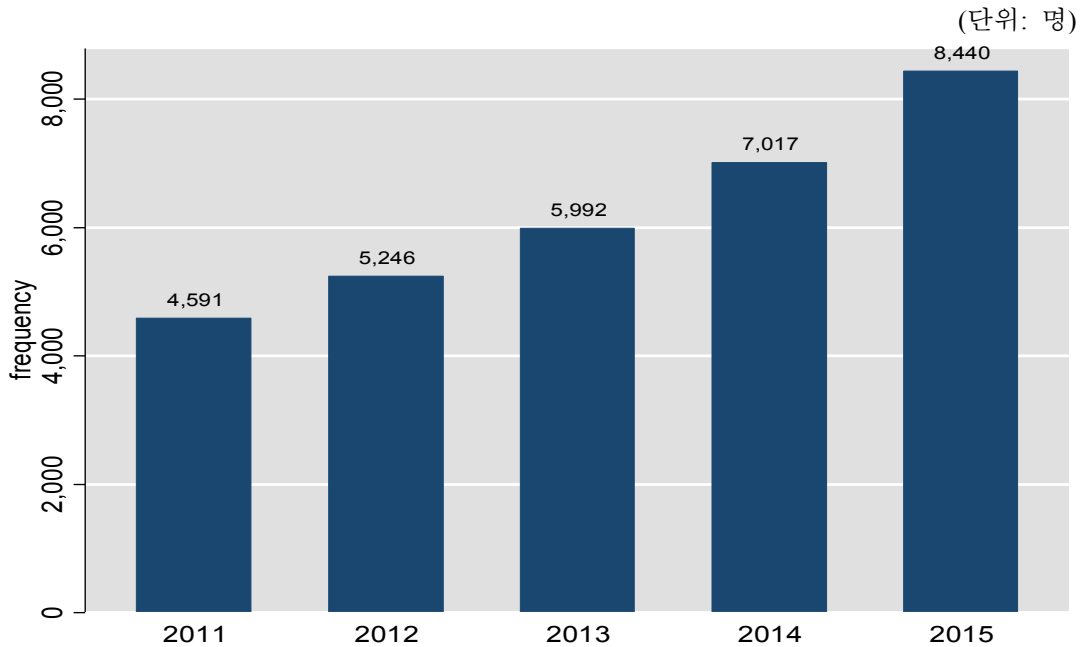
<표 IV-9>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분포

(단위: 명, %)

| 연도 | 빈도 | 비중 | 누적 |
|------|--------|-------|-------|
| 2011 | 4,591 | 14.67 | 14.67 |
| 2012 | 5,246 | 16.77 | 31.44 |
| 2013 | 5,992 | 19.15 | 50.59 |
| 2014 | 7,017 | 22.43 | 73.02 |
| 2015 | 8,440 | 26.98 | 100 |
| 총계 | 31,286 | 100 |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4] 연도별 개인사업자의 분포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여부별 개인사업자 수는 <표 IV-10>, [그림 IV-5]에 제시되어 있음
 - 2015년에는 전체 8,440명의 개인사업자 중 43.31%인 3,655명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였음
 - 2011~2014년에도 45% 정도의 개인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소폭 감소하는 추세임
 - 5년 평균 약 44%의 후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국세통계연보상의 개인사업자 이용률 20%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이는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협조해준 개인사업자 무작위 추출 표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이용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집한 결과로 판단됨

<표 IV-10>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개인사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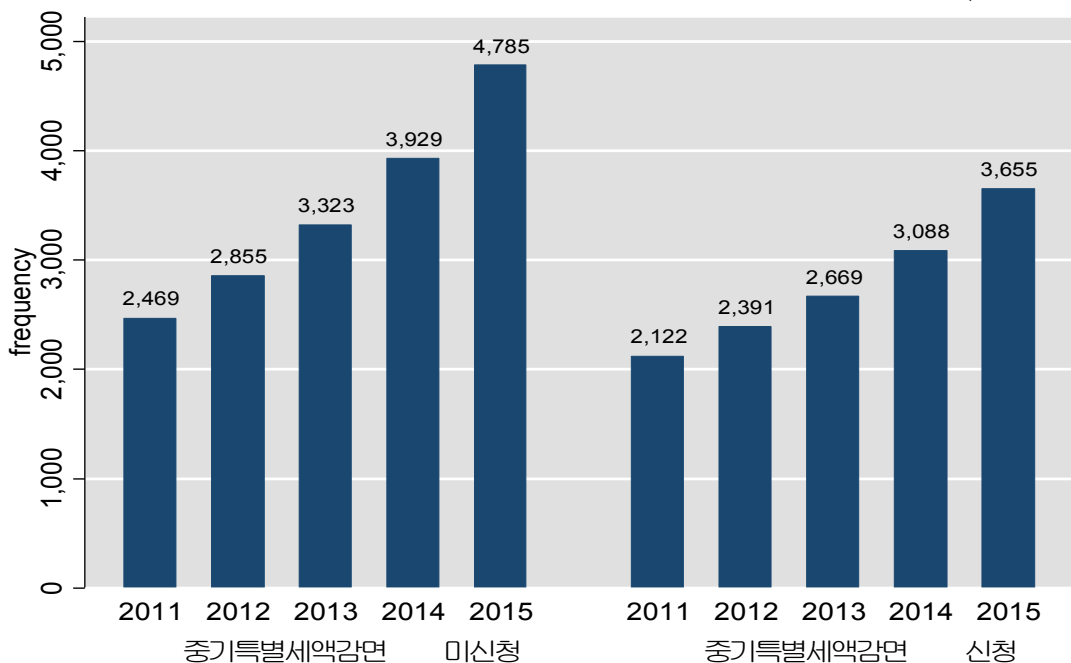
(단위: 명, %)

| 연도 | 미사용 | 사용 | 총계 |
|------|---------|---------|--------|
| 2011 | 2,469 | 2,122 | 4,591 |
| | (53.78) | (46.22) | (100) |
| 2012 | 2,855 | 2,391 | 5,246 |
| | (54.42) | (45.58) | (100) |
| 2013 | 3,323 | 2,669 | 5,992 |
| | (55.46) | (44.54) | (100) |
| 2014 | 3,929 | 3,088 | 7,017 |
| | (55.99) | (44.01) | (100) |
| 2015 | 4,785 | 3,655 | 8,440 |
| | (56.69) | (43.31) | (100) |
| 총계 | 17,361 | 13,925 | 31,286 |
| | (55.49) | (44.51) | (100) |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5] 연도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별 개인사업자 수

(단위: 명)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전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 혹은 미사용했던 개인사업자가 올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할 가능성, 즉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의 추정치가 <표 IV-11>에 제시되어 있음
 - 전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던 기업 중 90.23% 정도가 금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속 사용하였음(Panel A)
 - 소득세를 부담한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92.8%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한 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했던 개인사업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음
 - 반면 전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당해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할 가능성은 8.91%에 지나지 않았음
 - 소득세를 부담한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92.57%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V-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이행확률: 개인사업자

(단위: %)

| 구분 | | t | | |
|-----|------------|-------|-------|-----|
| t-1 | 패널 A: 전표본 | 미사용 | 사용 | 총계 |
| | 미사용 | 91.09 | 8.91 | 100 |
| | 사용 | 9.77 | 90.23 | 100 |
| | 패널 B: 세액>0 | 미사용 | 사용 | 총계 |
| | 미사용 | 92.57 | 7.43 | 100 |
| | 사용 | 7.2 | 92.8 | 10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2015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납세신고 실적을 살펴보면 <표 IV-12>와 같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이 약 7.2억원, 미사용 기업은 3.5억원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의 수입금액이 다소 컸음
 - 산출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이 11.0백만원, 사용하지 않은 기업이 14.3백만원으로 미사용 기업의 산출세액이 컸음

- 결정세액 규모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이 8.5백만원, 사용하지 않은 기업이 13.4백만원이었음
- 다른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이 미사용 기업에 비해 자산, 부채 규모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임을 알 수 있음

<표 IV-1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개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

(단위: 명, 원)

| 구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 총수입금액 | 4,785 | 348,564,879 | 686,084,548 | 3,655 | 724,712,523 | 924,709,032 |
| 종합소득금액 | 4,785 | 64,631,374 | 169,006,244 | 3,655 | 60,642,413 | 108,903,066 |
| 과세표준>0 | 4,785 | 58,273,075 | 166,383,895 | 3,655 | 53,445,421 | 108,285,315 |
| 산출세액 | 4,785 | 14,348,555 | 60,223,114 | 3,655 | 10,985,664 | 38,568,277 |
| 결정세액 | 4,785 | 13,400,137 | 56,818,539 | 3,655 | 8,511,288 | 31,077,318 |
| 매출액 | 4,785 | 723,099,185 | 16,117,541,927 | 3,655 | 724,806,591 | 1,163,029,064 |
| 영업손익 | 4,785 | 92,223,992 | 2,883,134,513 | 3,655 | 56,740,928 | 167,734,222 |
| 자산총계 | 4,785 | 603,478,329 | 4,253,991,006 | 3,655 | 364,254,722 | 2,333,510,986 |
| 부채총계 | 4,785 | 286,786,803 | 3,316,899,845 | 3,655 | 205,633,402 | 3,001,164,995 |
| 세전 당기순이익 | 4,785 | 61,807,691 | 1,354,666,655 | 3,655 | 52,772,461 | 158,460,217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IV-1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에 따른 개인사업자 기술통계량 II (세액 >0)

(단위: 명, 원)

| 구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기업수 | 평균 | 표준편차 |
| 총수입금액 | 4,172 | 357,044,565 | 703,609,662 | 3,652 | 724,926,890 | 925,004,982 |
| 종합소득금액 | 4,172 | 73,935,584 | 179,120,183 | 3,652 | 60,689,720 | 108,935,211 |
| 과세표준>0 | 4,172 | 66,835,251 | 176,577,995 | 3,652 | 53,489,325 | 108,318,951 |
| 산출세액 | 4,172 | 16,456,815 | 64,227,282 | 3,652 | 10,994,688 | 38,582,833 |
| 결정세액 | 4,172 | 15,369,045 | 60,601,484 | 3,652 | 8,518,280 | 31,089,125 |
| 매출액 | 4,172 | 789,018,282 | 17,259,708,253 | 3,652 | 725,021,049 | 1,163,440,077 |
| 영업손익 | 4,172 | 107,287,343 | 3,087,307,740 | 3,652 | 56,816,458 | 167,779,962 |
| 자산총계 | 4,172 | 637,275,196 | 4,538,392,070 | 3,652 | 364,254,582 | 2,334,444,303 |
| 부채총계 | 4,172 | 297,315,098 | 3,539,328,899 | 3,652 | 205,634,130 | 3,002,386,336 |
| 세전 당기순이익 | 4,172 | 73,066,056 | 1,450,188,836 | 3,652 | 52,850,059 | 158,498,486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추이는 <표 IV-14>와 [그림 IV-6]에 제시되어 있음

○ 5년 평균 감면규모는 약 1.69백만원으로, 2012년에 감소하였다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여주고 있음

- 2011년 1.66백만원, 2012년 1.46백만원, 2013년 1.58백만원, 2014년 1.8백만, 2015년 1.83백만원으로 2012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 IV-14>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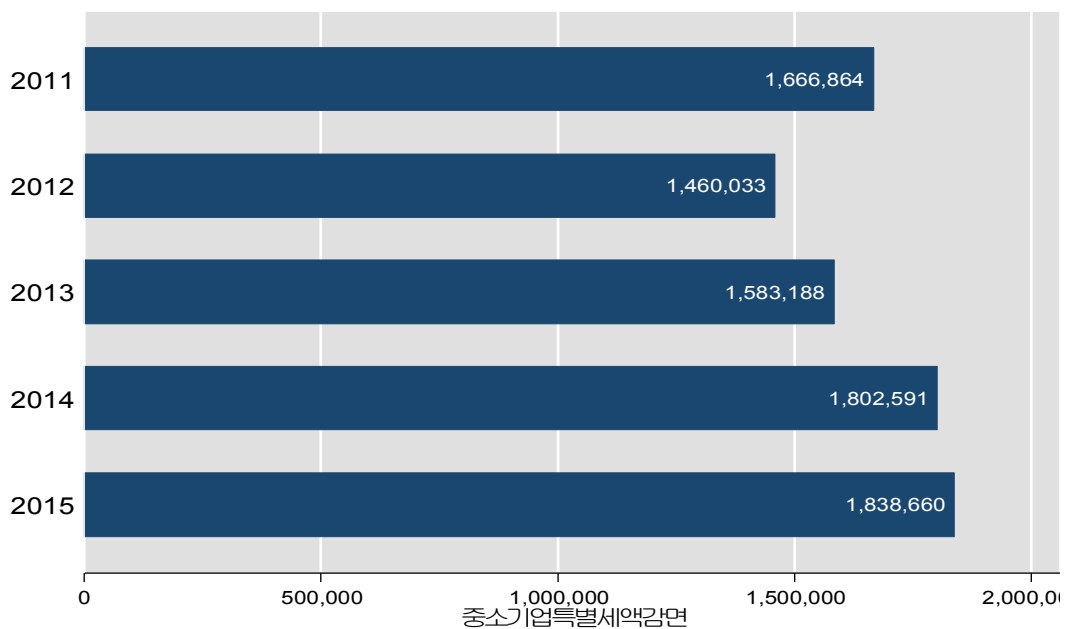
(단위: 원)

| 연도 | 평균 | 표준편차 | 빈도 |
|------|-----------|-----------|--------|
| 2011 | 1,666,864 | 6,202,096 | 2,122 |
| 2012 | 1,460,034 | 5,899,557 | 2,391 |
| 2013 | 1,583,188 | 6,682,473 | 2,669 |
| 2014 | 1,802,591 | 6,685,883 | 3,088 |
| 2015 | 1,838,660 | 7,779,004 | 3,655 |
| 총계 | 1,690,503 | 6,797,089 | 13,925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6] 개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추이

(단위: 원)



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약 93%의 동 제도 이용 개인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면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감면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들이 동 제도를 이용하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2%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1,000만~5,0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동 제도 이용 개인사업자의 1.8% 수준이고 5,000만~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0.2%,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들도 0.1% 수준으로 나타남
- 법인사업자보다는 훨씬 더 큰 비중의 개인사업자들이 300만원 이하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 수 분포

(단위: 개, %)

| 감면액 구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
| 300만원 이하 | 3,066 (93.6) | 3,455 (94.6) | 3,861 (93.8) | 4,290 (91.6) | 4,805 (91.9) | 19,477 (93.0) |
| 300만~500만원 | 77 (2.4) | 73 (2.0) | 94 (2.3) | 156 (3.3) | 180 (3.4) | 580 (2.8) |
| 500만~1,000만 | 61 (1.9) | 64 (1.8) | 86 (2.1) | 136 (2.9) | 128 (2.4) | 475 (2.3) |
| 1,000~5,000만 | 62 (1.9) | 53 (1.5) | 64 (1.6) | 89 (1.9) | 99 (1.9) | 367 (1.8) |
| 5,000만~1억 | 10 (0.3) | 7 (0.2) | 9 (0.2) | 5 (0.1) | 6 (0.1) | 37 (0.2) |
| 1억 초과 | 0 (0.0) | 2 (0.1) | 2 (0.0) | 6 (0.1) | 8 (0.2) | 18 (0.1) |
| 계 | 3,276 (100.0) | 3,654 (100.0) | 4,116 (100.0) | 4,682 (100.0) | 5,226 (100.0) | 20,954 (100.0) |

주: 괄호 안은 전체 감면제도 이용 사업자 중 해당 감면구간에 속하는 사업자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 감면액 상위 2% 수준의 기업들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감면액 총계의 50%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 상위 2%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
 - 하위 93%의 기업들에 전체 감면혜택의 약 31%만이 귀속되고 있음
 - 이처럼 고소득 소수 개인사업자에게 절반 이상의 감면액이 집중되고 있는 양상은 법인사업자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양상은 국세청 협조자료의 샘플 특성일 수도 있으나 산출세액이 큰 고소득 개인사업자일수록 더 많은 감면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현 제도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식으로 적절한지 의문임

<표 IV-16> 감면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사업자 감면액 분포

(단위: 백만원, %)

| 감면액 구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
| 300만원 이하 | 1,095 (28.6) | 1,244 (33.3) | 1,398 (30.9) | 1,917 (31.5) | 2,231 (31.2) | 7,885 (31.1) |
| 300만~500만원 | 290 (7.6) | 282 (7.5) | 381 (8.4) | 587 (9.7) | 696 (9.7) | 2,236 (8.8) |
| 500만~1,000만 | 442 (11.5) | 445 (11.9) | 596 (13.2) | 958 (15.8) | 926 (12.9) | 3,367 (13.3) |
| 1,000~5,000만 | 1,290 (33.7) | 1,077 (28.8) | 1,216 (26.9) | 1,577 (25.9) | 1,740 (24.3) | 6,900 (27.3) |
| 5,000만~1억 | 712 (18.6) | 445 (11.9) | 619 (13.7) | 327 (5.4) | 467 (6.5) | 2,570 (10.2) |
| 1억 초과 | 0 (0.0) | 244 (6.5) | 308 (6.8) | 715 (11.8) | 1,094 (15.3) | 2,361 (9.3) |
| 계 | 3,829 (100.0) | 3,736 (100.0) | 4,518 (100.0) | 6,081 (100.0) | 7,153 (100.0) | 25,318 (100.0) |

주: 괄호 안은 샘플 내 전체 감면액 중 해당 감면구간에 속하는 사업자의 감면액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

2.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사업자 유형별 재무성과 추이

1) 법인사업자

- 앞의 개요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재무적 성과 중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지표를 살펴봄
 -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을,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비율을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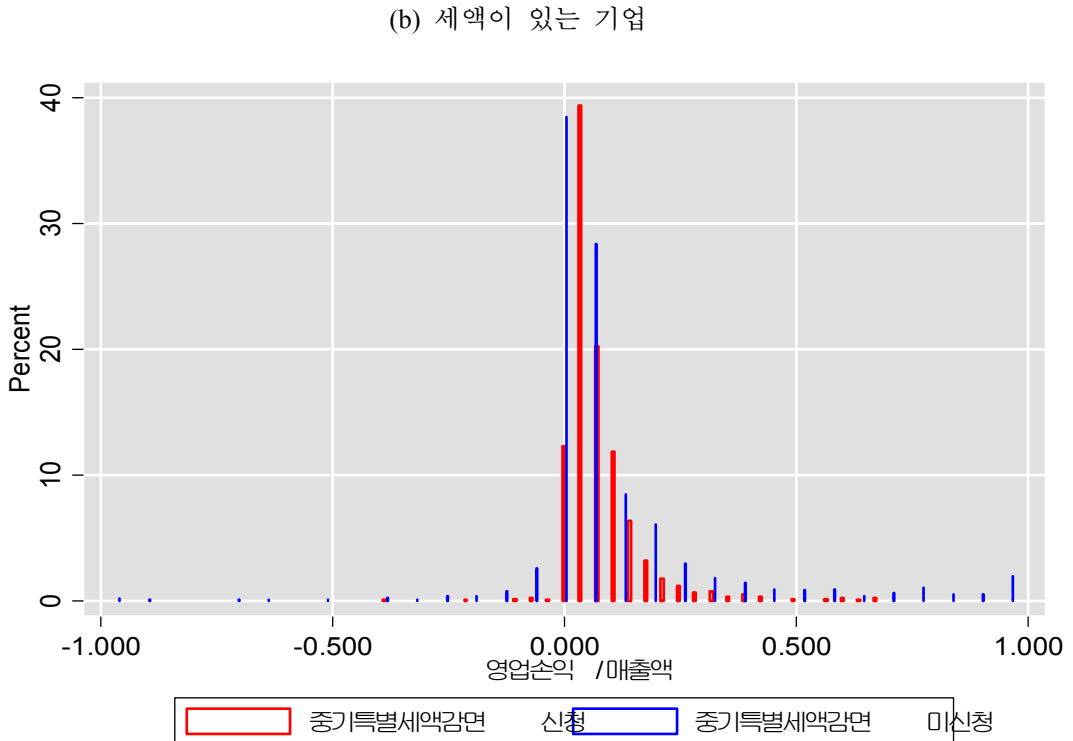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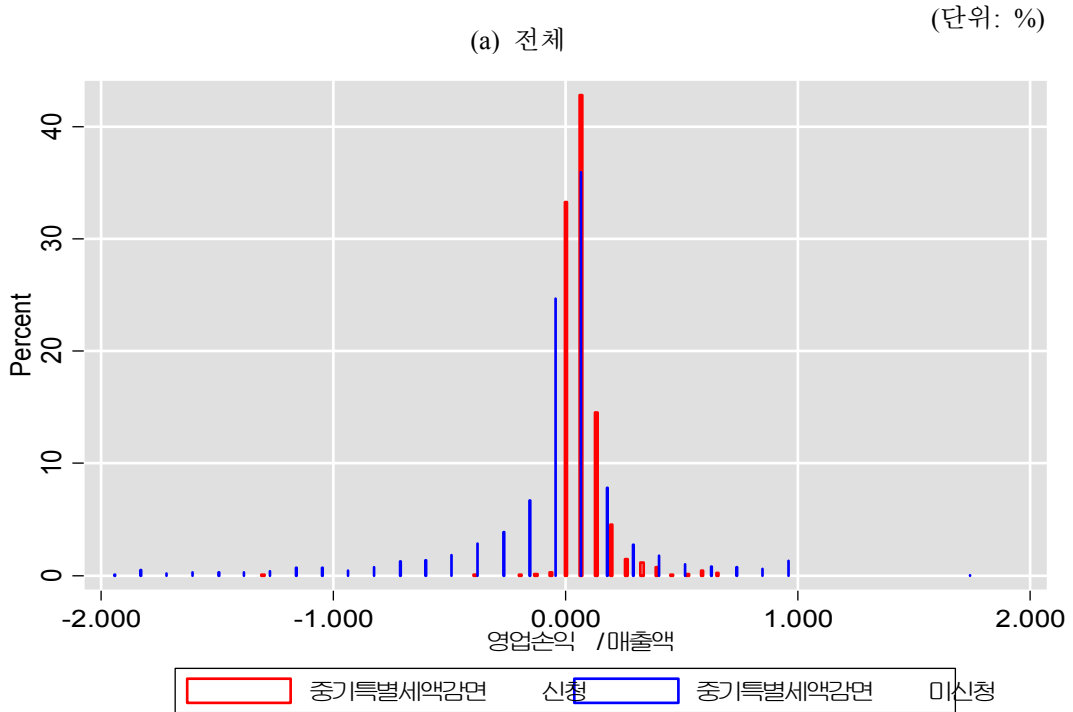
-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은 약 7.3%, 미사용 기업은 -4%임
 -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미사용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약 10.6%로 동 제도 이용 기업에 비해서 높았음

<표 IV-17> 매출액영업이익률: 법인사업자

| 구 분 |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1 | -0.058 | 0.062 |
| | 2012 | -0.067 | 0.066 |
| | 2013 | -0.063 | 0.064 |
| | 2014 | -0.062 | 0.072 |
| | 2015 | -0.04 | 0.073 |
| | 총계 | -0.057 | 0.068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1 | 0.069 | 0.062 |
| | 2012 | 0.067 | 0.066 |
| | 2013 | 0.076 | 0.064 |
| | 2014 | 0.088 | 0.072 |
| | 2015 | 0.106 | 0.073 |
| | 총계 | 0.083 | 0.068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7]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2015년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은 11.7%로 상당히 높은 편임
 - 미사용 기업은 -3.9%,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11.9%이었음
 - 기업의 ROA가 통상 3~5%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본 자료에서 산출된 ROA는 높은 편이지만 사용/미사용 기업의 ROA가 같은 방향으로 편의를 갖는다면 분석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표 IV-18> 총자산순이익률: 법인사업자

| 구 분 |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1 | -0.045 | 0.095 |
| | 2012 | -0.069 | 0.102 |
| | 2013 | -0.064 | 0.109 |
| | 2014 | -0.064 | 0.119 |
| | 2015 | -0.039 | 0.117 |
| | 총계 | -0.056 | 0.11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1 | 0.088 | 0.095 |
| | 2012 | 0.086 | 0.102 |
| | 2013 | 0.087 | 0.109 |
| | 2014 | 0.096 | 0.119 |
| | 2015 | 0.119 | 0.117 |
| | 총계 | 0.096 | 0.11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총자산증가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이 15.1%로 미사용 기업의 2.5%보다 큰 폭으로 높았음
 -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더라도 미사용 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11.3%에 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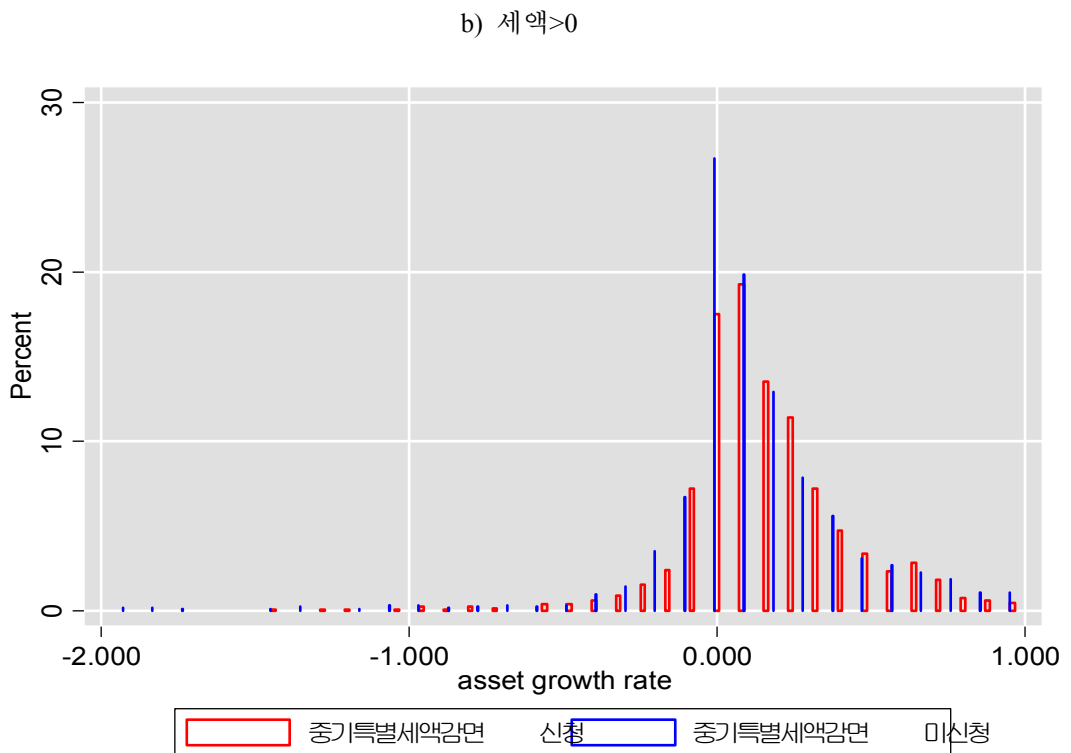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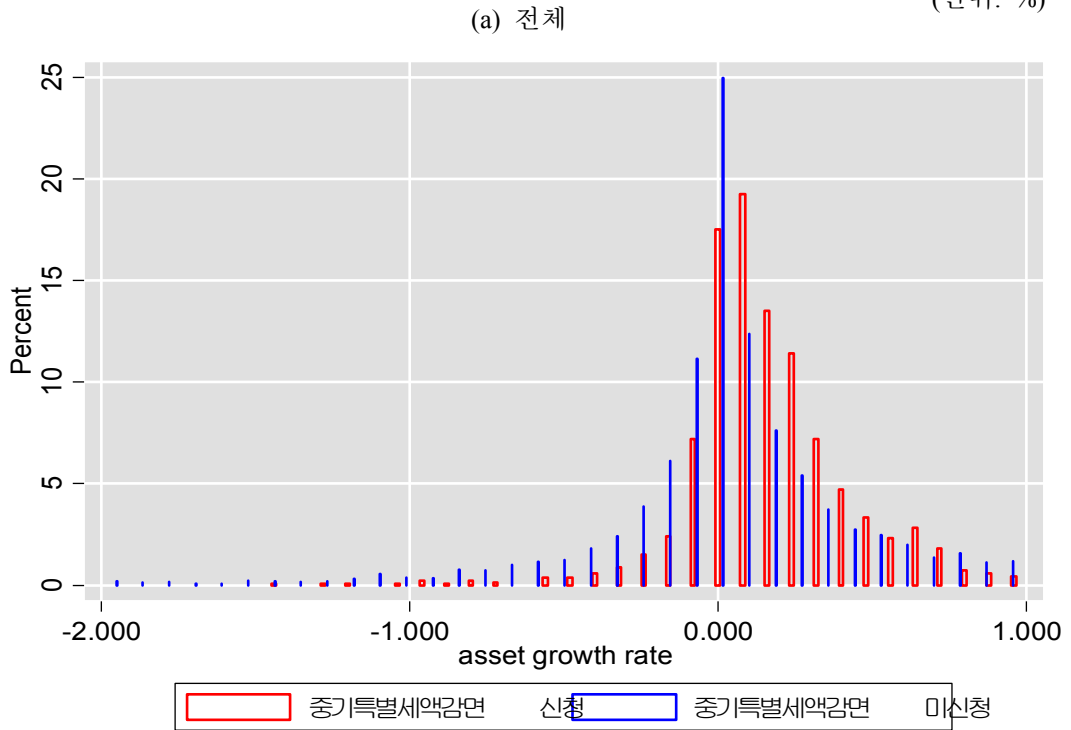
<표 IV-19> 총자산증가율: 법인사업자

| 구 분 |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2 | 0.029 | 0.124 |
| | 2013 | 0.035 | 0.142 |
| | 2014 | 0.042 | 0.144 |
| | 2015 | 0.025 | 0.151 |
| | 총계 | 0.033 | 0.141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2 | 0.098 | 0.124 |
| | 2013 | 0.112 | 0.142 |
| | 2014 | 0.119 | 0.144 |
| | 2015 | 0.113 | 0.151 |
| | 총계 | 0.111 | 0.141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8] 총자산증가율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단위: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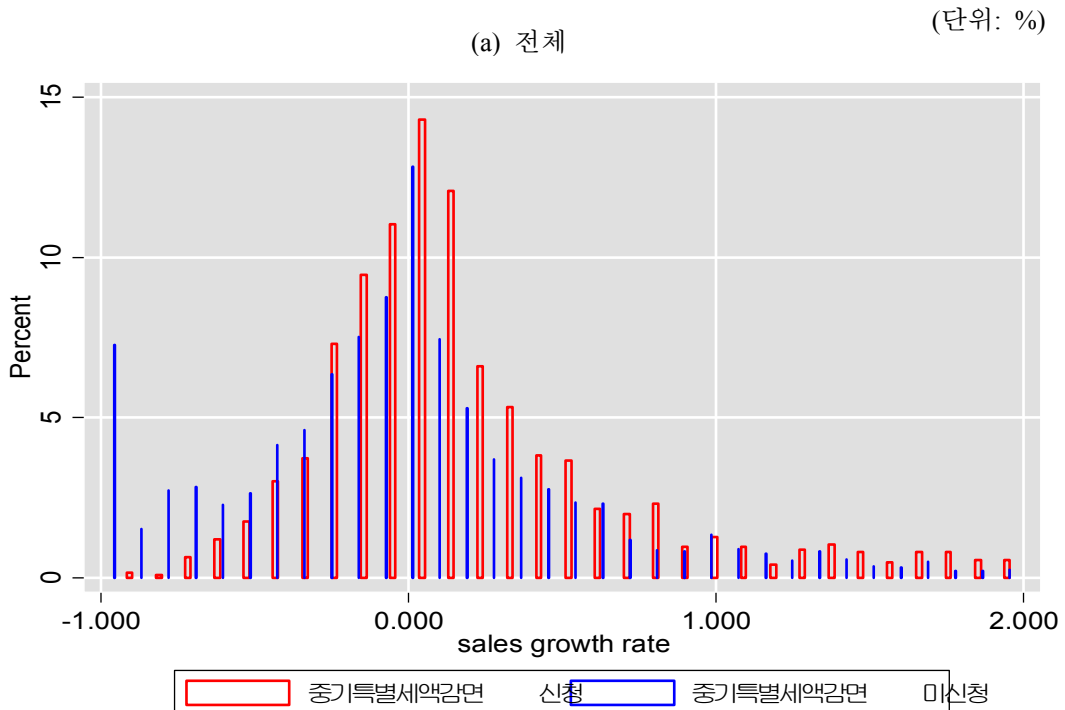
- 매출액증가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18.1%, 미사용 기업은 -2.8%이었음
- 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미사용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0.8%로 사용 기업의 매출액증가율보다 낮았음

<표 IV-20> 매출액증가율: 법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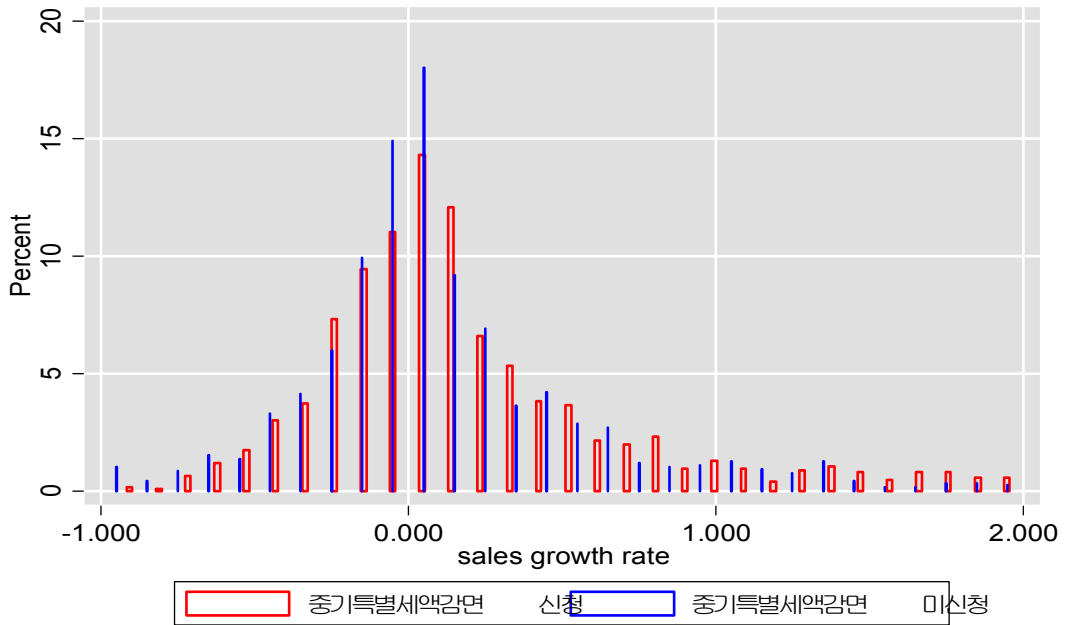
| 구 분 |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2 | 0.018 | 0.171 |
| | 2013 | 0.019 | 0.169 |
| | 2014 | -0.027 | 0.176 |
| | 2015 | -0.028 | 0.181 |
| | 총계 | -0.008 | 0.175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2 | 0.102 | 0.171 |
| | 2013 | 0.107 | 0.169 |
| | 2014 | 0.077 | 0.176 |
| | 2015 | 0.108 | 0.181 |
| | 총계 | 0.098 | 0.175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9] 매출액증가율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b) 세액>0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의 경우 43.6%로 사용하지 않은 기업의 59.3%보다 낮음
-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미사용 기업의 부채비율은 45.2%로 사용 기업과 유사해지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은 소폭 높은 편임

<표 IV-21> 부채비율: 법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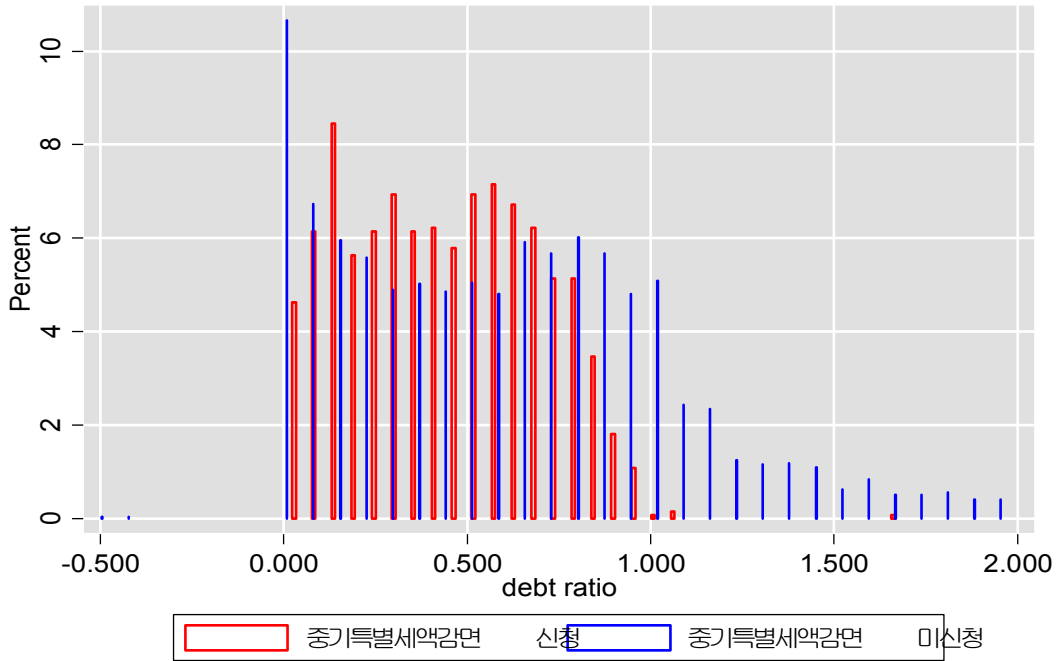
| 구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1 | 0.569 | 0.446 |
| | 2012 | 0.588 | 0.451 |
| | 2013 | 0.599 | 0.456 |
| | 2014 | 0.609 | 0.452 |
| | 2015 | 0.593 | 0.436 |
| | 총계 | 0.593 | 0.448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1 | 0.474 | 0.446 |
| | 2012 | 0.477 | 0.451 |
| | 2013 | 0.488 | 0.456 |
| | 2014 | 0.476 | 0.452 |
| | 2015 | 0.452 | 0.436 |
| | 총계 | 0.473 | 0.448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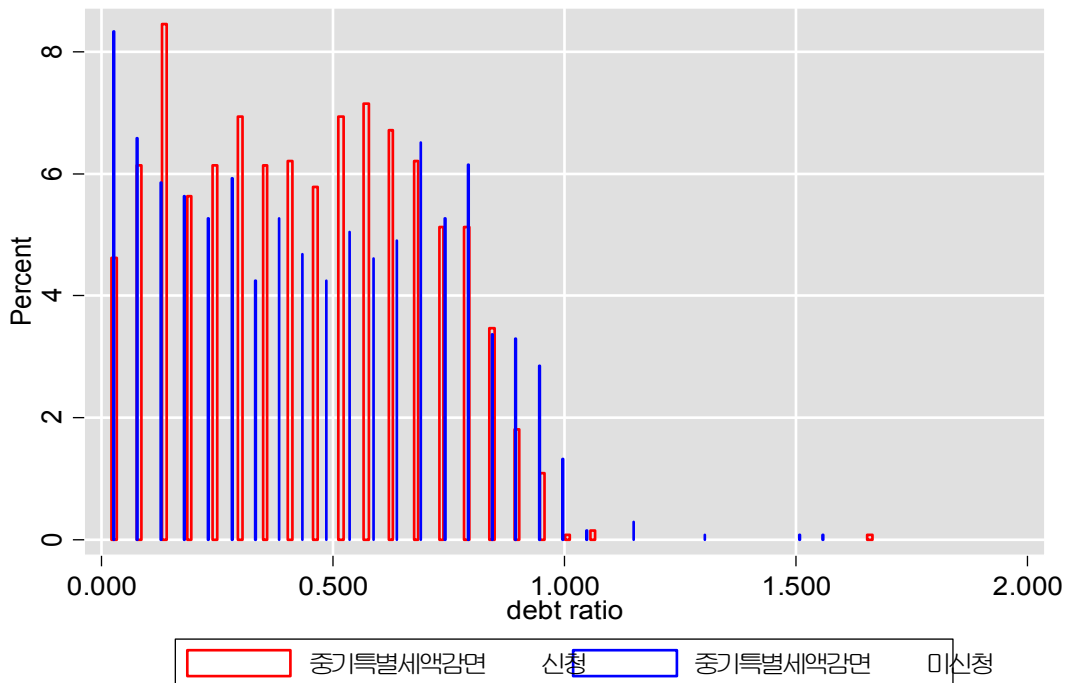
[그림 IV-10] 부채비율의 분포: 2015년 법인사업자

(단위: %)

(a) 전체



(b) 세액>0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이상의 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은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순 상관관계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해당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했다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재무적 성과가 좋은 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역인과 관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함

2)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의 재무적 성과지표들과 동일한 지표들을 개인사업자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함
 -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을,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비율을 사용
-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은 약 10.5%, 미사용 기업은 18.9%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사용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미사용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약 22.2%로 동 제도 수혜 기업보다 11.7%포인트 가까이 더 높음

<표 IV-22> 매출액영업이익률: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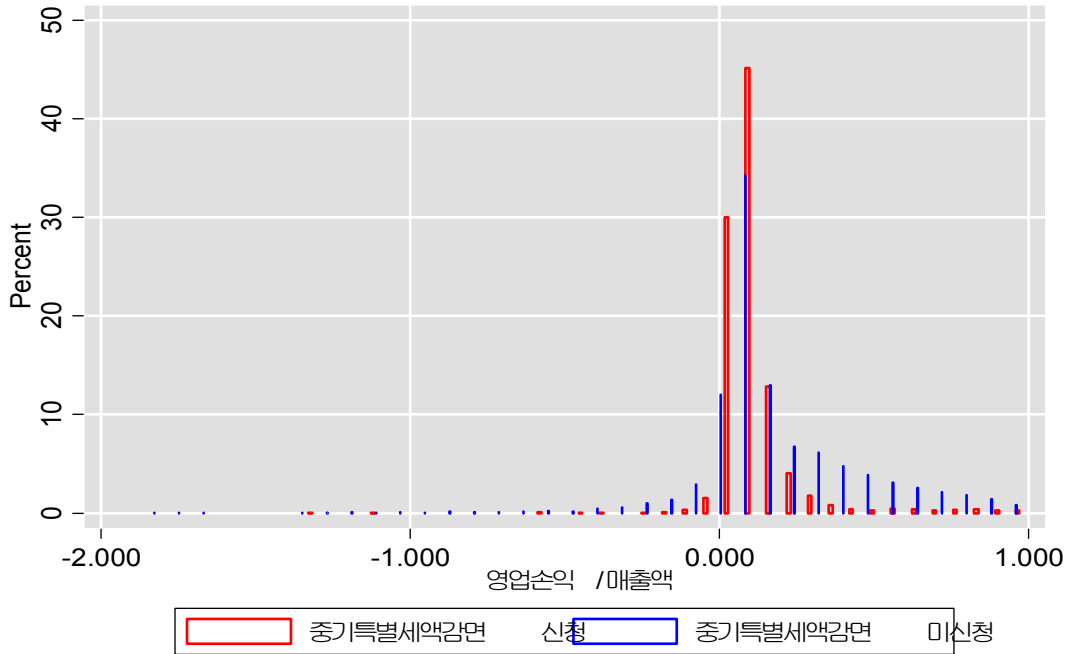
| 구 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1 | 0.203 | 0.089 |
| | 2012 | 0.204 | 0.097 |
| | 2013 | 0.204 | 0.098 |
| | 2014 | 0.204 | 0.111 |
| | 2015 | 0.189 | 0.105 |
| | 총계 | 0.200 | 0.101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1 | 0.246 | 0.089 |
| | 2012 | 0.248 | 0.097 |
| | 2013 | 0.243 | 0.098 |
| | 2014 | 0.233 | 0.111 |
| | 2015 | 0.222 | 0.105 |
| | 총계 | 0.236 | 0.101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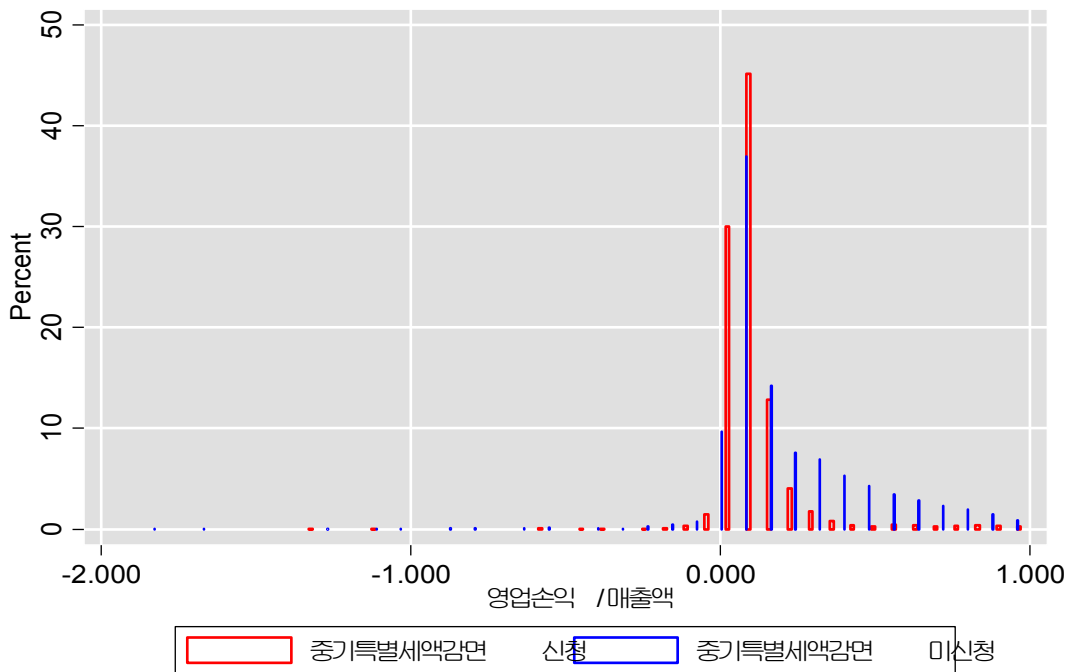
[그림 IV-11] 매출액영업이익률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단위: %)

(a) 전체



(b) 세액이 있는 기업



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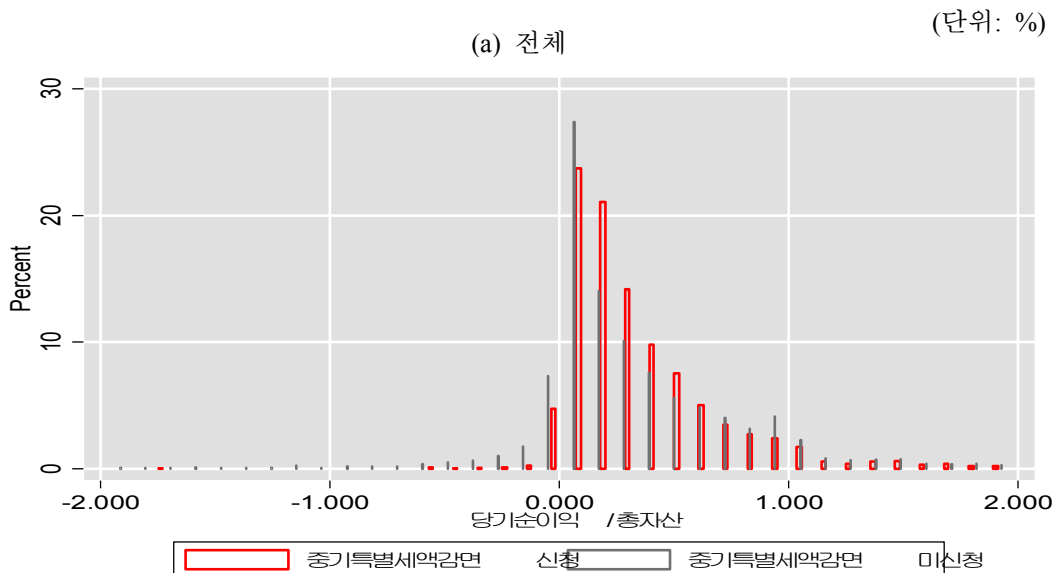
- 2015년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 개인사업자는 34.1%로 상당히 높은 편임
- 미사용 기업은 30.6%,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36.3%이었음
- 전체 기업에서는 사용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이 미사용 기업보다 높았으나,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오히려 사용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이 미사용 기업보다 낮은 모습을 보임

<표 IV-23> 총자산순이익률: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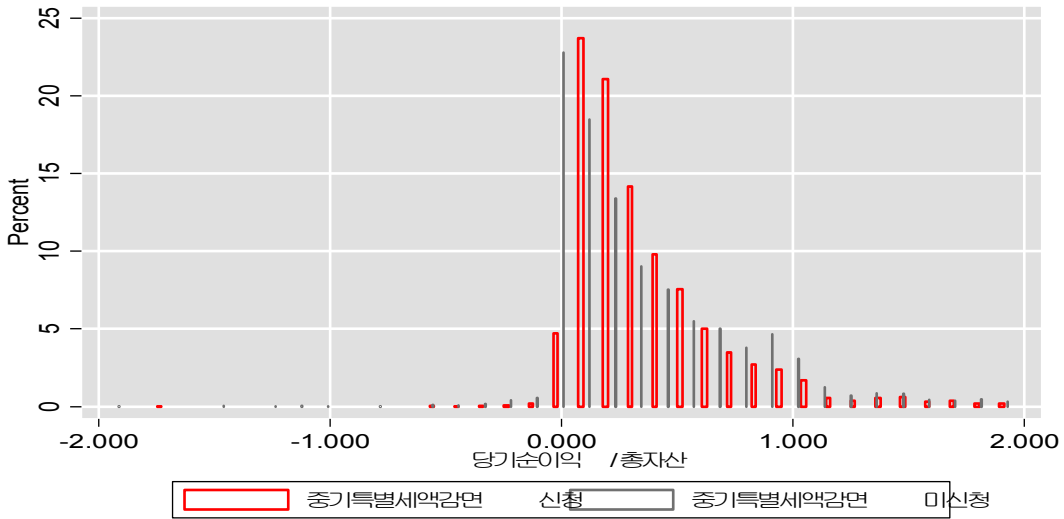
| 구 분 |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1 | 0.281 | 0.289 |
| | 2012 | 0.279 | 0.29 |
| | 2013 | 0.277 | 0.295 |
| | 2014 | 0.293 | 0.312 |
| | 2015 | 0.306 | 0.341 |
| | 총계 | 0.289 | 0.309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1 | 0.335 | 0.289 |
| | 2012 | 0.332 | 0.29 |
| | 2013 | 0.332 | 0.295 |
| | 2014 | 0.34 | 0.312 |
| | 2015 | 0.363 | 0.342 |
| | 총계 | 0.343 | 0.309 |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12] 총자산순이익률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b) 세액>0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총자산증가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이 8.2%로 미사용 기업의 -1.7%보다 높았음
- 산출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더라도 미사용 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0%에 그쳤음

<표 IV-24> 총자산증가율: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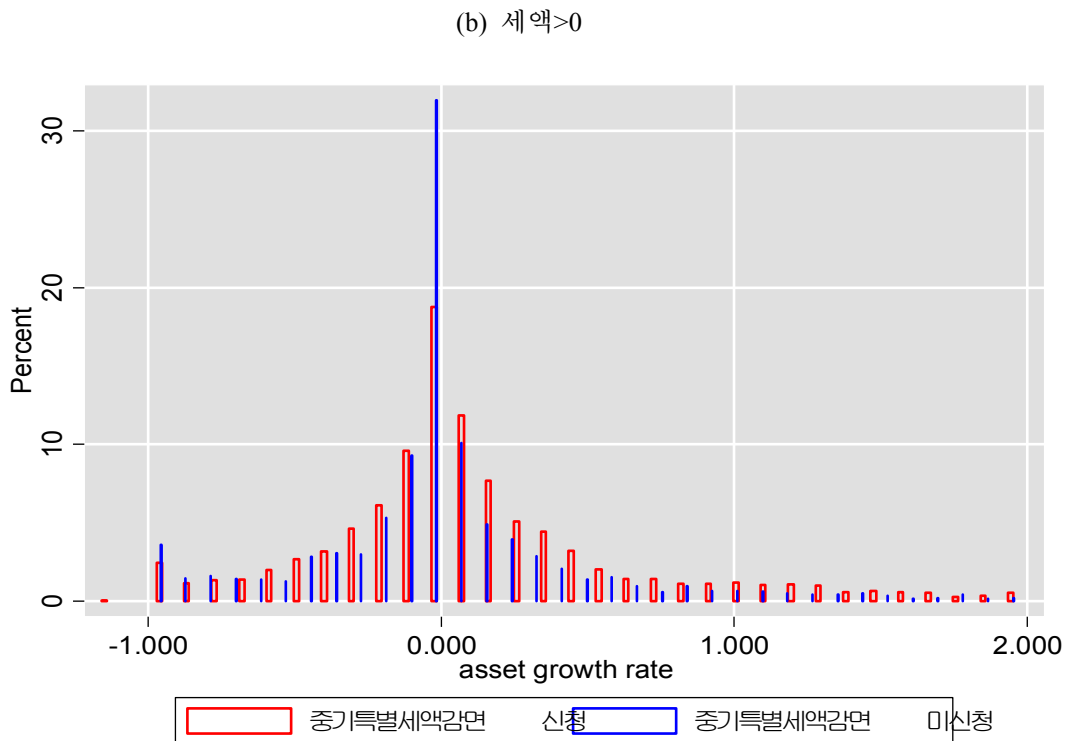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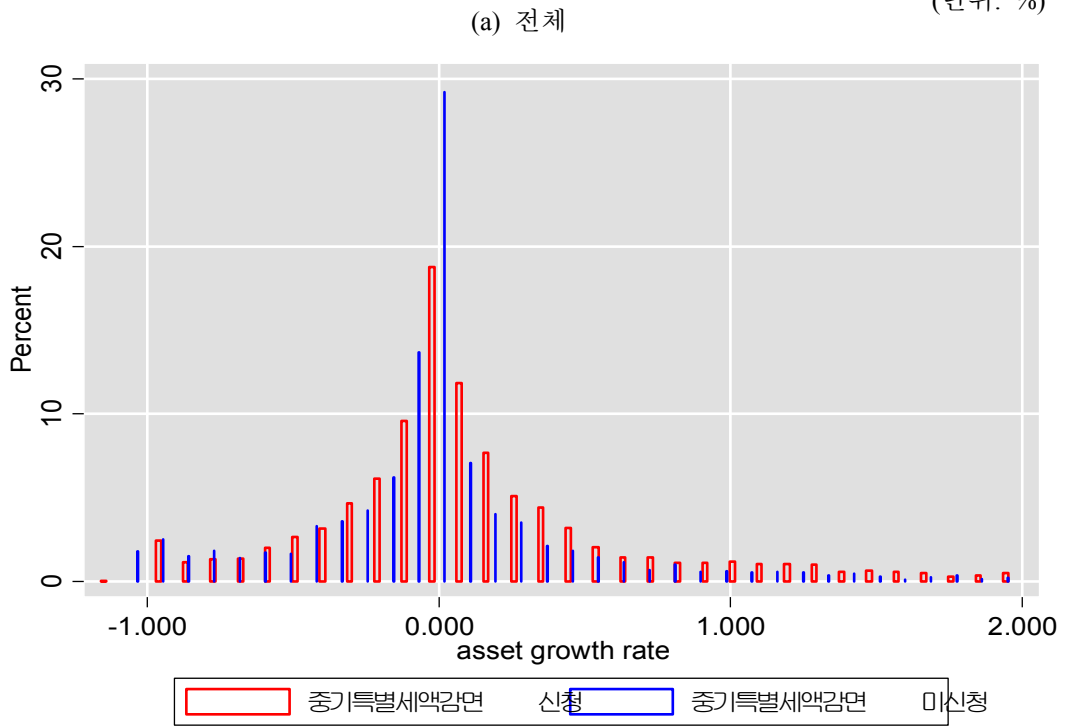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2 | 0.015 | 0.083 |
| | 2013 | 0.028 | 0.079 |
| | 2014 | 0.043 | 0.098 |
| | 2015 | -0.017 | 0.082 |
| | 총계 | 0.015 | 0.086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2 | 0.022 | 0.083 |
| | 2013 | 0.036 | 0.079 |
| | 2014 | 0.049 | 0.098 |
| | 2015 | 0 | 0.082 |
| | 총계 | 0.026 | 0.086 |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13] 총자산증가율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단위: %)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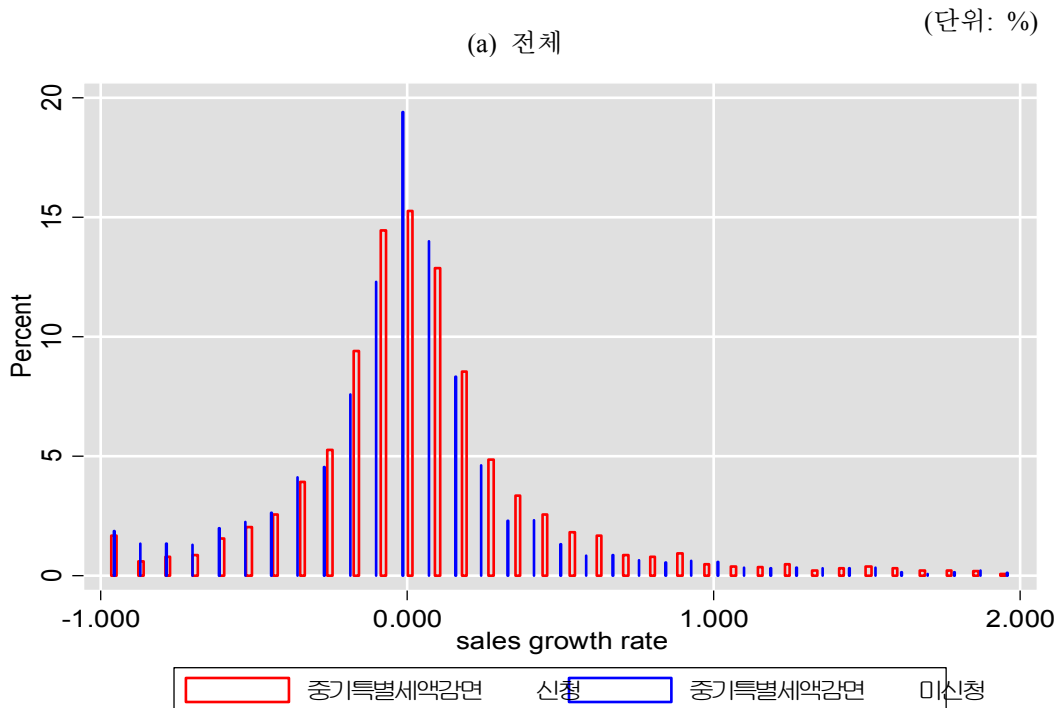
- 매출액증가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의 경우 2015년 기준 3.8%, 미사용 기업은 -1.4%이었음
- 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미사용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2%로 사용 기업의 매출액증가율보다 낮았음

<표 IV-25> 총자산증가율: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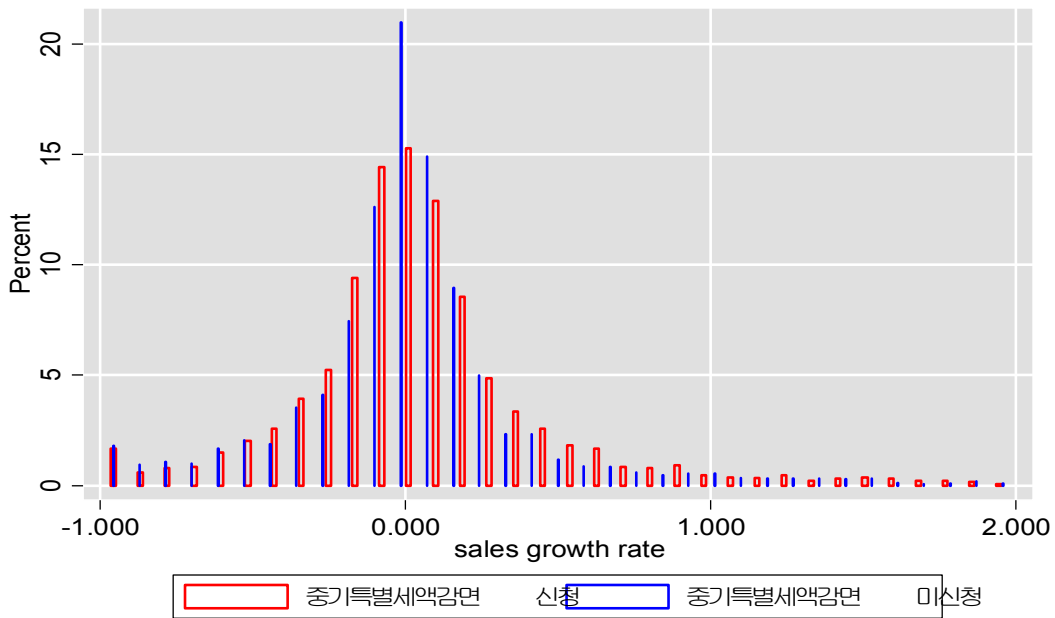
| 구 분 |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2 | 0.012 | 0.036 |
| | 2013 | 0.035 | 0.062 |
| | 2014 | 0.02 | 0.045 |
| | 2015 | -0.014 | 0.038 |
| | 총계 | 0.011 | 0.045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2 | 0.03 | 0.036 |
| | 2013 | 0.053 | 0.062 |
| | 2014 | 0.025 | 0.045 |
| | 2015 | 0.002 | 0.039 |
| | 총계 | 0.025 | 0.045 |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그림 IV-14] 매출액증가율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b) 세액>0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 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부채비율은 2015년 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의 경우 32.3%로 사용하지 않은 기업의 29.4%보다 높음
- 세액이 있는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임

<표 IV-26> 부채비율: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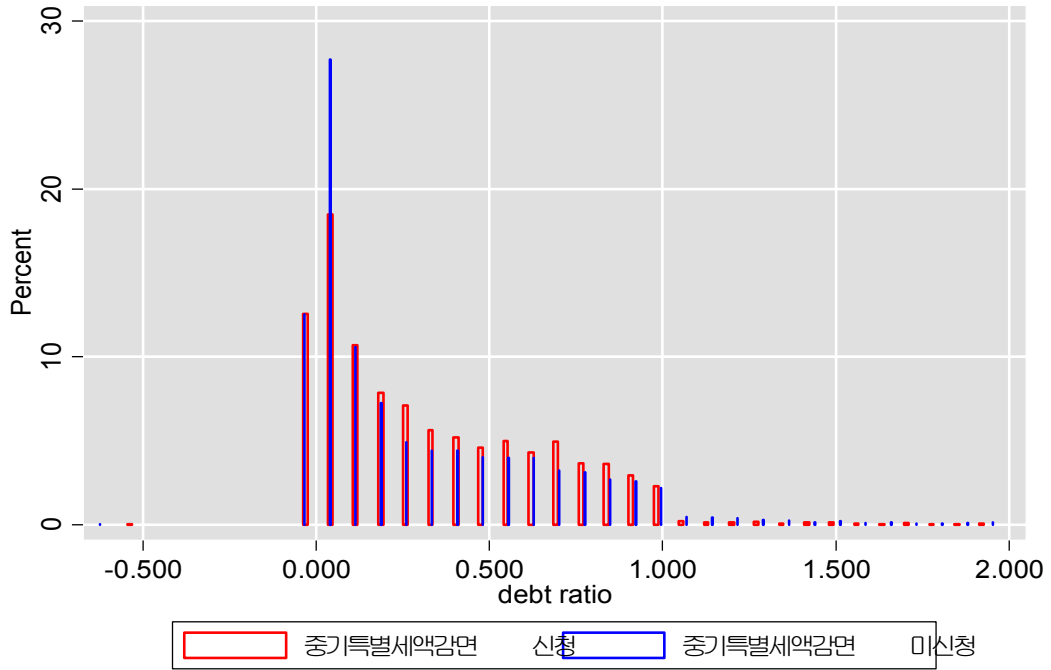
| 구 분 | 중기특별세액감면 미사용 | 중기특별세액감면 사용 |
|-----------------------|--------------|--------------|
| Panel A: 전체 기업 | 2011 | 0.292 |
| | 2012 | 0.3 |
| | 2013 | 0.303 |
| | 2014 | 0.303 |
| | 2015 | 0.294 |
| | 총계 | 0.299 |
| Panel B: 세액이 있는 기업 | 2011 | 0.295 |
| | 2012 | 0.298 |
| | 2013 | 0.302 |
| | 2014 | 0.298 |
| | 2015 | 0.292 |
| | 총계 | 0.297 |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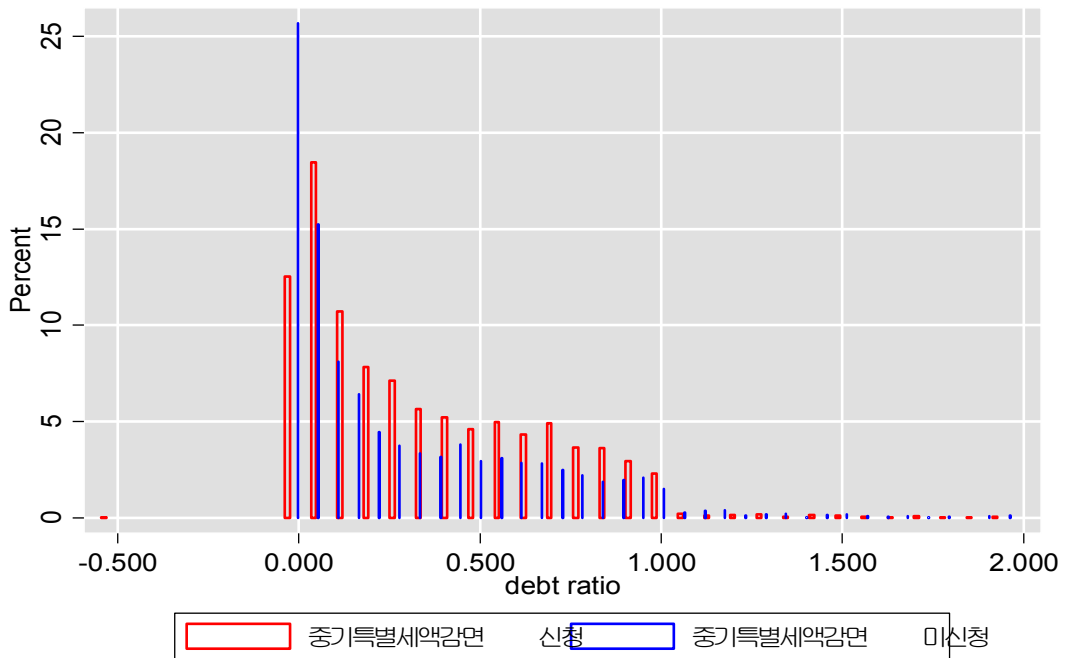
[그림 IV-15] 부채비율의 분포: 2015년 개인사업자

(단위: %)

(a) 전체



(b) 세액>0



주: 세액이 있는 기업이란 산출세액>0인 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 이상의 재무적 성과지표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개인사업자는 사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은 높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낮고,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우 세액이 있는 기업에 한정할 경우 낮게 나타남

나.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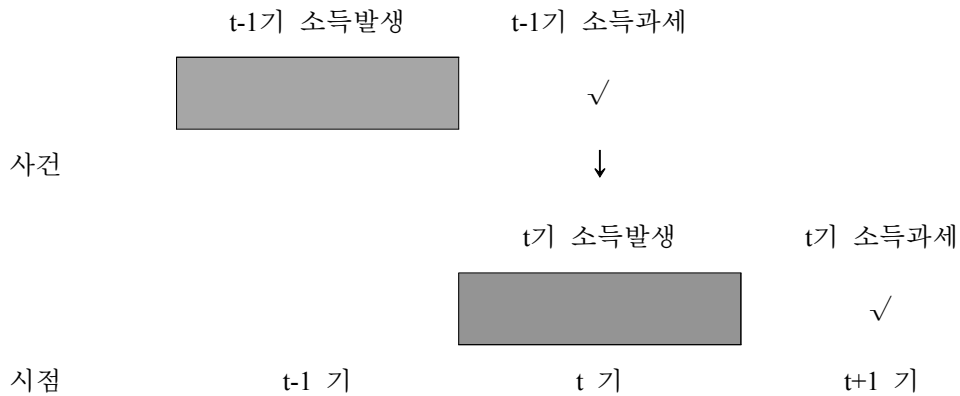
1) 법인사업자

- 본 절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패널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음

$$(1) \quad y_{ijt} = \beta_0 + \beta_1 \ln(TC_{ijt-1}^{sme}) + X_{ijt}' \gamma + \theta_i + \alpha_j + \lambda_t + \epsilon_{ijt}$$

- 여기에서 i 는 기업, j 는 지역, t 는 시점을 의미함
 - TC^{sme} 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 X_{ijt} 는 통제변수로서 기업의 관측가능한 특성
 - θ_i 는 기업 i 의 고정효과
 - α_j 는 지역 j 의 고정효과
 - λ_t 는 시점 t 의 고정효과
- 위의 고정효과 모형은 고정효과와 정책변수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과의 상관관계를 허용함으로써 해당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줄 수 있음
 - 식 (1)에서 특이한 점은 성과변수 y_{ijt} 에 영향을 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변수가 1기 시차변수라는 점임(아래의 그림 참조)
 - 이는 동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이 이미 소득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결정된다는 점과
 - 시점상 과거의 조세지출 정책이 현재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맥상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림 IV-16] 식별전략



- 식 (1)의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수혜기업의 당기의 재무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모형(1)~(5)는 각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1% 증가할 때, 총자산순이익률은 0.018%p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임
 -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는 0.008%p, 총자산증가율은 0.071%p, 매출액 증가율은 0.204%p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부채비율은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증가에 대해서 0.011%p 낮추는 경향이 있었음

- 앞의 결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적한계(intensive margin)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임
 - 로그 변환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실적이 없는 기업의 경우 결측치가 되기 때문에 추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기업만 포함한 결과임

<표 IV-27>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1: 법인사업자

| | (1) | (2) | (3) | (4) | (5) |
|-----------|-------------|--------------|------------|------------|-------------|
| | 총자산 순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총자산 증가율 | 매출액 증가율 | 부채비율 |
| 로그-중기감면액 | -0.0181*** | -0.00840*** | -0.0716*** | -0.204*** | -0.0114*** |
| 1기 시차 | (0.00226) | (0.00228) | (0.00606) | (0.0106) | (0.00155) |
| 업력 | 0.0517 | -0.0401*** | -0.179 | 0.616** | -0.00715 |
| | (0.0683) | (0.00488) | (0.177) | (0.293) | (0.0469) |
| 업력제곱 | 0.000943*** | 0.000543*** | 0.00263*** | 0.00337*** | 0.000544*** |
| | (0.000122) | (0.000123) | (0.000317) | (0.000532) | (8.32e-05) |
| 로그-자산 | 0.230*** | 0.211*** | 0.583*** | 0.402*** | -0.0665*** |
| | (0.0105) | (0.0101) | (0.0278) | (0.0461) | (0.00690) |
| 로그-부채 | -0.0745*** | -0.0573*** | 0.0612*** | -0.0130 | 0.149*** |
| | (0.00436) | (0.00440) | (0.0115) | (0.0198) | (0.00299) |
| 상수 | -3.648*** | -2.837*** | -10.89*** | -11.70*** | -0.984** |
| | (0.664) | (0.152) | (1.750) | (2.916) | (0.454) |
| 표본수 | 4,844 | 4,825 | 4,719 | 4,615 | 4,841 |
| R-squared | 0.187 | 0.147 | 0.331 | 0.180 | 0.604 |
| 연도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 지역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수혜 여부가 수혜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extensive margin)를 추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금액 대신, 수혜 여부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하였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추정결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사용한 기업들만을 이용해서 분석한 추정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한 중소기업이 총자산순이익률은 4.5%p,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p, 총자산증가율은 6.9%p, 매출액증가율은 16.5%p 낮았음
 - 반면 부채비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기업이 2.0%p 낮았음

- <표 IV-27>의 추정결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만 살펴본 것이므로 개별기업의 규모, 업종, 소재지에 따라 정해지는 감면율의 크기로 측정된 감면의 강도를 반영하여 추정할 필요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와 감면율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IV-28>과 <표 IV-29>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추정결과는 <표 IV-27>의 추정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의 본 효과는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감면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구체적으로는 10%p 감면율을 올려주면 총자산순이익률은 2.6%p,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6%p, 총자산증가율은 4.0%p, 매출액증가율은 8.3%p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
 - 한편 10%p 감면율 증가시 부채비율은 1%p 증가하였음

<표 IV-28>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감면 사용 여부): 법인사업자

| | (1) 총자산 순이익률 | (2)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총자산 증가율 | (4) 매출액 증가율 | (5) 부채비율 |
|-----------|--------------------|---------------------|-------------------|-------------------|-------------|
| 중기세액감면여부 | -0.0447*** | -0.0145* | -0.0696*** | -0.165*** | -0.0199*** |
| 1기 시차 | (0.00770) | (0.00761) | (0.0118) | (0.0181) | (0.00420) |
| 업력 | 0.0700 | -0.409*** | -0.176 | 0.572* | 0.00263 |
| | (0.157) | (0.0769) | (0.234) | (0.340) | (0.0854) |
| 업력제곱 | 0.000138 | 0.000211* | 0.00170*** | 0.00273*** | -2.16e-05 |
| | (0.000121) | (0.000124) | (0.000182) | (0.000283) | (6.75e-05) |
| 로그-자산 | 0.224*** | 0.140*** | 0.276*** | 0.117*** | -0.202*** |
| | (0.00686) | (0.00666) | (0.00836) | (0.0140) | (0.00443) |
| 로그-부채 | -0.0890*** | -0.0504*** | 0.0893*** | 0.0712*** | 0.189*** |
| | (0.00389) | (0.00416) | (0.00564) | (0.00956) | (0.00225) |
| 상수 | -3.918** | 2.078*** | -5.762** | -10.97*** | 1.042 |
| | (1.679) | (0.761) | (2.537) | (3.829) | (0.910) |
| 표본수 | 15,469 | 14,282 | 15,074 | 13,239 | 14,710 |
| R-squared | 0.096 | 0.047 | 0.189 | 0.058 | 0.418 |
| 연도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 지역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29>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3(감면율 상호작용): 법인사업자

| | (1) 총자산 순이익률 | (2)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총자산 증가율 | (4) 매출액 증가율 | (5) 부채비율 |
|-----------|--------------------|---------------------|-------------------|-------------------|-------------|
| 중기세액감면 여부 | 0.00908 | 0.0184 | 0.0137 | 0.00475 | -0.0403*** |
| 1기 시차 | (0.0182) | (0.0179) | (0.0285) | (0.0435) | (0.00991) |
| ___ × 감면율 | -0.263*** | -0.162** | -0.404*** | -0.828*** | 0.100** |
| | (0.0806) | (0.0795) | (0.126) | (0.193) | (0.0439) |
| 업력 | 0.0702 | -0.409*** | -0.176 | 0.573* | 0.00257 |
| | (0.157) | (0.0769) | (0.234) | (0.340) | (0.0854) |
| 업력제곱 | 0.000139 | 0.000212* | 0.00170*** | 0.00273*** | -2.18e-05 |
| | (0.000121) | (0.000124) | (0.000182) | (0.000283) | (6.75e-05) |
| 로그-자산 | 0.224*** | 0.140*** | 0.277*** | 0.118*** | -0.202*** |
| | (0.00686) | (0.00666) | (0.00835) | (0.0140) | (0.00443) |
| 로그-부채 | -0.0891*** | -0.0505*** | 0.0891*** | 0.0709*** | 0.189*** |
| | (0.00389) | (0.00416) | (0.00564) | (0.00955) | (0.00225) |
| 상수 | -3.920** | 2.077*** | -5.767** | -10.99*** | 1.042 |
| | (1.678) | (0.761) | (2.536) | (3.826) | (0.910) |
| 표본수 | 15,469 | 14,282 | 15,074 | 13,239 | 14,710 |
| R-squared | 0.097 | 0.047 | 0.190 | 0.060 | 0.418 |
| 연도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 지역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타 세액감면제도 및 공제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임의효과-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추정하였음
- 추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현재의 추정결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활용 가능성과 여타 공제감면제도의 활용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반대의 해석도 가능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과 같이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제도의 활용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 배제 대상인 경우에만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함께 활용가능한 최저한세 배제 대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은 특정한 수혜요건이 없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최저한세 배제 대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타 투자세액공제나 고용지원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활용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0>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pooled-probit | (2) pooled-probit | (3) RE-probit |
|--------------------|-----------------------|-------------------------|------------------------|
| 창업(6조1항) | -1.153*** (0.170) | -1.305*** (0.172) | -2.995*** (0.374) |
| 창업(6조2항) | -0.843*** (0.201) | -0.935*** (0.200) | -2.666*** (0.484) |
| 중기투자 | -1.321*** (0.216) | -1.379*** (0.222) | -2.101*** (0.401) |
| 연구개발 1 (최저한세배제) | 0.453*** (0.0460) | 0.241*** (0.0472) | 0.673*** (0.109) |
| 연구개발 2 (최저한세대상) | -1.126** (0.487) | -1.454*** (0.448) | -2.215** (1.046) |
| 고용창출투자 | -0.973*** (0.165) | -1.219*** (0.165) | -2.268*** (0.330) |
|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0.576*** (0.165) | -0.791*** (0.164) | -1.222*** (0.279) |
| 외국납부 | -1.083*** (0.262) | -1.435*** (0.264) | -1.558*** (0.507) |
| 업력 | | -0.0212*** (0.00301) | -0.0635*** (0.0111) |
| 업력제곱 | | 1.08e-05 (9.24e-05) | 7.66e-05 (0.000353) |
| 로그-자산 | | 0.274*** (0.0103) | 0.588*** (0.0325) |
| 로그-부채 | | -0.130*** (0.00746) | -0.168*** (0.0204) |
| 상수 | -0.568*** (0.0649) | -3.471*** (0.142) | -9.539*** (0.515) |
| 표본수 | 21,277 | 20,586 | 20,586 |
| Year FE | YES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위 분석은 다른 세액공제 제도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추정임
- 한편, 반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이 다른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관심일 수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다른 세액공제의 사용을 얼마나 구축하는지가 조세정책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표 IV-31>~<표 IV-37>는 각 세액공제 사용 여부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그 외의 공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추정결과는 위의 <표 IV-30>과 질적으로 동일하였음
 - 최저한세 배제 대상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음

<표 IV-31> 창업(6조1항)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창업(6조1항) pooled-probit | (2) 창업(6조1항)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834*** (0.123) | -0.865*** (0.125) |
| 창업(6조2항) | | 0.0766 (0.370) |
| 연구개발1 (최저한세 배제) 고용창출투자 | | 0.436** (0.175) |
| 업력 | -0.154*** (0.0152) | -0.157*** (0.0154) |
| 업력제공 | 0.00257*** (0.000309) | 0.00263*** (0.000312) |
| 로그-자산 | 0.168*** (0.0366) | 0.165*** (0.0374) |
| 로그-부채 | -0.0278 (0.0260) | -0.0267 (0.0263) |
| 상수 | -4.587*** (0.496) | -4.571*** (0.508) |
| 표본수 | 20,586 | 20,290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중기투자,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외국납부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32> 창업(6조2항)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창업(6조2항) pooled-probit | (2) 창업(6조2항)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507*** (0.134) | -0.695*** (0.157) |
| 창업(6조1항) | | -0.237 (0.437) |
| 연구개발1 (최저한세 배제) | | 1.317*** (0.131) |
| 고용창출투자 | | -0.0580 (0.433) |
| 외국납부 | | 0.828 (0.559) |
| 업력 | 0.0613 (0.0603) | 0.0246 (0.0620) |
| 업력제공 | -0.0215*** (0.00786) | -0.0200*** (0.00777) |
| 로그-자산 | 0.172*** (0.0394) | 0.122*** (0.0458) |
| 로그-부채 | -0.0145 (0.0324) | -0.00350 (0.0375) |
| 상수 | -5.285*** (0.540) | -4.438*** (0.609) |
| 표본수 | 17,234 | 17,081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중기투자,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 증가인원 사회보험료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33> 중기투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중기투자 pooled-probit | (2) 중기투자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790*** (0.154) | -0.849*** (0.158) |
| 연구개발1 (최저한세 배제) | | 0.542*** (0.126) |
| 고용창출투자 | | -0.237 (0.298) |
|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 0.479* (0.264) |
| 외국납부 | | -0.559 (0.455) |
| 업력 | 0.00474 (0.00992) | 0.00263 (0.0101) |
| 업력제공 | 0.000552*** (0.000207) | 0.000628*** (0.000209) |
| 로그-자산 | 0.103** (0.0490) | 0.0779 (0.0515) |
| 로그-부채 | 0.0741* (0.0426) | 0.0851* (0.0445) |
| 상수 | -6.139*** (0.525) | -5.832*** (0.562) |
| 표본수 | 20,149 | 19,915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창업(6조 1항), 창업(6조 2항),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은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34> 연구개발1(최저한세 배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연구개발1(최저한세 배제) pooled-probit | (2) 연구개발1(최저한세 배제)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328*** (0.0384) | 0.394*** (0.0396) |
| 창업(6조1항) | | 0.445** (0.215) |
| 창업(6조2항) | | 1.731*** (0.156) |
| 중기투자 | | 0.832*** (0.164) |
| 연구개발2 (최저한세 대상) | | -1.235*** (0.375) |
| 고용창출투자 | | 0.661*** (0.133) |
|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 1.028*** (0.141) |
| 외국납부 | | 0.143 (0.169) |
| 업력 | 0.0335*** (0.00667) | 0.0464*** (0.00701) |
| 업력제곱 | -0.00140*** (0.000224) | -0.00175*** (0.000237) |
| 로그-자산 | 0.364*** (0.0225) | 0.344*** (0.0237) |
| 로그-부채 | -0.00574 (0.0176) | -4.60e-05 (0.0183) |
| 상수 | -9.743*** (0.306) | -9.614*** (0.324) |
| 표본수 | 20,586 | 20,586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 -35>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 pooled-probit | (2)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561 (0.515) | -0.304 (0.621) |
| 창업(6조2항) | | 3.661*** (0.999) |
| 연구개발1 (최저한세 배제) | | -0.458 (0.585) |
| 고용창출투자 | | 1.214*** (0.416) |
| 외국납부 | | 0.655* (0.335) |
| 업력 | 0.0395 (0.0278) | 0.0774* (0.0396) |
| 업력제공 | 0.000118 (0.000618) | -0.000443 (0.000866) |
| 로그-자산 | 0.748*** (0.120) | 0.859*** (0.158) |
| 로그-부채 | 0.116 (0.0754) | 0.115 (0.0943) |
| 상수 | -26.35 (269.2) | -30.26 (211.6) |
| 표본수 | 15,888 | 15,668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창업(6조 1항), 중기투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36> 고용창출투자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고용창출투자 pooled-probit | (2) 고용창출투자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414*** (0.124) | -0.479*** (0.128) |
| 창업(6조1항) | | -0.181 (0.492) |
| 창업(6조2항) | | -0.173 (0.493) |
| 중기투자 | | -0.179 (0.332) |
| 연구개발1 (최저한세 배제) | | 0.600*** (0.112) |
| 연구개발2 (최저한세 대상) | | 0.607** (0.295) |
|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 -0.522 (0.408) |
| 외국납부 | | 0.290 (0.266) |
| 업력 | -0.0229* (0.0136) | -0.0368*** (0.0140) |
| 업력제공 | 0.000323 (0.000376) | 0.000670* (0.000377) |
| 로그-자산 | 0.342*** (0.0622) | 0.278*** (0.0713) |
| 로그-부채 | 0.117** (0.0555) | 0.141** (0.0641) |
| 상수 | -12.42*** (0.745) | -11.63*** (0.781) |
| 표본수 | 17,750 | 17,750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37>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법인사업자

| | (1)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pooled-probit | (2)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253** (0.110) | -0.321*** (0.116) |
| 중기투자 | | 0.493* (0.288) |
| 연구개발1 (최저한세 배제) | | 0.853*** (0.106) |
| 고용창출투자 | | -0.637 (0.396) |
| 외국납부 | | 0.392 (0.294) |
| 업력 | -0.0152 (0.0145) | -0.0311** (0.0151) |
| 업력제곱 | -0.000169 (0.000481) | 0.000266 (0.000481) |
| 로그-자산 | 0.273*** (0.0391) | 0.243*** (0.0423) |
| 로그-부채 | -0.0218 (0.0323) | -0.0232 (0.0345) |
| 상수 | -15.25 (247.8) | -14.75 (226.3) |
| 표본수 | 14,294 | 14,156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창업(6조 1항), 창업(6조 2항), 연구개발2(최저한세 대상)은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2) 개인사업자

- 앞의 식 (1)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한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성과지표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모형(1)~(5)는 각 총자산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1% 증가할 때,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은 0.005%p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004%p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경제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을 각각 0.069%p와 0.183%p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증가에 따라 0.00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경제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표 IV-38〉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1: 개인사업자

| | (1) 총자산 순이익률 | (2)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총자산 증가율 | (4) 매출액 증가율 | (5) 부채비율 |
|-----------|--------------------|---------------------|-------------------|-------------------|-------------|
| 로그-중기감면액 | 0.00572* | 0.00459*** | -0.0695*** | -0.183*** | 0.00424* |
| 1기 시차 | (0.00298) | (0.00162) | (0.00694) | (0.00635) | (0.00226) |
| 업력 | 0.000162 | -0.00124 | -0.0226*** | -0.0202*** | 0.00430* |
| | (0.00316) | (0.00172) | (0.00749) | (0.00671) | (0.00240) |
| 업력제곱 | 0.000126 | -0.000127** | 0.000671*** | 0.00106*** | -8.80e-05 |
| | (0.000112) | (6.15e-05) | (0.000259) | (0.000231) | (8.52e-05) |
| 로그-자산 | -0.149*** | 0.00793*** | 0.465*** | 0.117*** | -0.125*** |
| | (0.00526) | (0.00260) | (0.0119) | (0.00985) | (0.00388) |
| 로그-부채 | 0.0125*** | 0.000924 | 0.000580 | 0.0260*** | 0.135*** |
| | (0.00246) | (0.00131) | (0.00568) | (0.00500) | (0.00186) |
| 상수 | 2.841*** | -0.0681 | -7.819*** | -0.262 | 0.307*** |
| | (0.120) | (0.0633) | (0.288) | (0.242) | (0.0908) |
| 표본수 | 9,182 | 9,369 | 8,882 | 9,094 | 9,301 |
| R-squared | 0.143 | 0.019 | 0.266 | 0.173 | 0.479 |
| 연도 고정효과 | 3,369 | 3,420 | 3,339 | 3,371 | 3,405 |
| 지역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수혜 여부가 수혜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의해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성과지표 모두 개선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 여부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모든 기업을 포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 수익성 지표 중 총자산순이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비수혜기업들보다 0.014%p 낮았음
 -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들보다 각각 0.171%p 낮게 나타나며 동 제도에 의해 기업들의 성장성이 개선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모두 포괄하고 각 개별 개인사업자가 직면한 감면율을 이용하여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이용 여부와 감면의 강도가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재무적 성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볼 필요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용 여부와 감면율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다시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출액증가율을 제외한 모든 성과지표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감면율이 높을수록 수혜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은 비수혜기업의 해당 성과지표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됨
 - 구체적으로는 감면율을 10%p 올려주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은 각각 1.24%p, 3.81%p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9>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2(감면 사용 여부): 개인사업자

| | (1) 총자산 순이익률 | (2)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총자산증가율 | (4) 매출액증가율 | (5) 부채비율 |
|-----------|--------------------|---------------------|---------------|---------------|-------------|
| 중기세액감면여부 | -0.00706 | -0.0139*** | -0.0225 | -0.171*** | -0.00302 |
| 1기 시차 | (0.00710) | (0.00442) | (0.0143) | (0.0141) | (0.00493) |
| 업력 | 0.00186 | 0.000120 | -0.00967*** | -0.00726** | 0.00148 |
| | (0.00157) | (0.000989) | (0.00322) | (0.00326) | (0.00110) |
| 업력제곱 | -2.29e-05 | -5.21e-05* | 0.000245** | 0.000466*** | -1.30e-05 |
| | (4.84e-05) | (3.06e-05) | (9.58e-05) | (9.53e-05) | (3.39e-05) |
| 로그-자산 | -0.146*** | 0.0117*** | 0.345*** | 0.0770*** | -0.132*** |
| | (0.00370) | (0.00187) | (0.00657) | (0.00612) | (0.00228) |
| 로그-부채 | 0.0129*** | 0.00370*** | 0.00101 | 0.0238*** | 0.134*** |
| | (0.00176) | (0.00106) | (0.00348) | (0.00340) | (0.00120) |
| 상수 | 2.833*** | -0.123** | -6.549*** | -1.991*** | 0.603*** |
| | (0.0915) | (0.0519) | (0.177) | (0.170) | (0.0595) |
| 표본수 | 20,032 | 20,654 | 19,560 | 19,715 | 20,470 |
| R-squared | 0.122 | 0.017 | 0.216 | 0.050 | 0.475 |
| 연도 고정효과 | 6,653 | 6,788 | 6,647 | 6,617 | 6,742 |
| 지역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IV-40>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 3(감면율 상호작용): 개인사업자

| | (1) 총자산 순이익률 | (2) 매출액 영업이익률 | (3) 총자산증가율 | (4) 매출액증가율 | (5) 부채비율 |
|-----------|--------------------|---------------------|---------------|---------------|-------------|
| 중기세액감면 여부 | -0.0206 | 0.0106 | -0.0174 | -0.0962*** | -0.0122 |
| 1기 시차 | (0.0167) | (0.0104) | (0.0337) | (0.0334) | (0.0116) |
| ___ × 감면율 | 0.0686 | -0.124*** | -0.0260 | -0.381** | 0.0466 |
| | (0.0769) | (0.0478) | (0.155) | (0.153) | (0.0534) |
| 업력 | 0.00185 | 0.000116 | -0.00967*** | -0.00728** | 0.00148 |
| | (0.00157) | (0.000989) | (0.00322) | (0.00326) | (0.00110) |
| 업력제곱 | -2.28e-05 | -5.21e-05* | 0.000245** | 0.000466*** | -1.30e-05 |
| | (4.84e-05) | (3.06e-05) | (9.58e-05) | (9.53e-05) | (3.39e-05) |
| 로그-자산 | -0.146*** | 0.0118*** | 0.345*** | 0.0772*** | -0.132*** |
| | (0.00370) | (0.00187) | (0.00657) | (0.00612) | (0.00228) |
| 로그-부채 | 0.0129*** | 0.00364*** | 0.000989 | 0.0236*** | 0.134*** |
| | (0.00176) | (0.00106) | (0.00349) | (0.00340) | (0.00120) |
| 상수 | 2.835*** | -0.124** | -6.549*** | -1.994*** | 0.604*** |
| | (0.0915) | (0.0519) | (0.177) | (0.170) | (0.0595) |
| 표본수 | 20,032 | 20,654 | 19,560 | 19,715 | 20,470 |
| R-squared | 0.122 | 0.017 | 0.216 | 0.050 | 0.475 |
| 연도 고정효과 | 6,653 | 6,788 | 6,647 | 6,617 | 6,742 |
| 지역 고정효과 | YES | YES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법인사업자 분석처럼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여타 세액감면제도 및 공제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임의효과-프로빗 모형(random effect probit model)을 추정하였음
 - 추정결과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짐
 - 다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만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사업자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유의미한 보완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중소 개인사업자들은 특정한 수혜요건이 없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타 투자세액공제나 고용지원 관련 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활용에 의해 억제되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41> 임의효과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 (1) pooled-probit | (2) pooled-probit | (3) RE-probit |
|------------|----------------------|---------------------------|---------------------------|
| 창업 | -1.370*** (0.137) | -1.303*** (0.140) | -3.366*** (0.343) |
| 중기투자 | -1.270*** (0.212) | -1.256*** (0.217) | -1.286*** (0.409) |
| 연구개발 | 0.618*** (0.200) | 0.524*** (0.200) | 1.122** (0.553) |
| 고용창출투자 | -1.329*** (0.156) | -1.295*** (0.159) | -2.727*** (0.491) |
|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 -1.204*** (0.301) | -1.316*** (0.357) | -2.087* (1.169) |
| 업력 | | 0.0430*** (0.00263) | 0.0932*** (0.0122) |
| 업력제곱 | | -0.00105*** (8.54e-05) | -0.00200*** (0.000417) |
| 로그-자산 | | -0.0619*** (0.00688) | -0.0126 (0.0235) |
| 로그-부채 | | 0.0505*** (0.00434) | 0.0714*** (0.0140) |
| 상수 | 0.0531 (0.0710) | 0.111 (0.119) | -2.079*** (0.613) |
| 표본수 | 31,264 | 28,626 | 28,626 |
| Year FE | YES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YES |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 위 분석은 다른 세액공제 제도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추정임
- 한편, 반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이 다른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관심일 수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다른 세액공제의 사용을 얼마나 구축하는지가 조세정책적으로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음
- <표 IV-42>~<표 IV-45>는 각 세액공제 사용 여부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그 외의 공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추정결과는 위의 <표 IV-41>과 질적으로 동일하였음
 - 최저한세 배제 대상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음

<표 IV-4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pooled-probit |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879*** (0.0989) | -0.885*** (0.0992)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0.0720 (0.419) |
|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 0.949* (0.511)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0.166 (0.357) |
| 업력 | -0.0576*** (0.00635) | -0.0578*** (0.00637) |
| 업력제곱 | 5.58e-05*** (1.15e-05) | 5.60e-05*** (1.15e-05) |
| 로그-자산 | -0.0651** (0.0271) | -0.0648** (0.0271) |
| 로그-부채 | 0.0780*** (0.0192) | 0.0777*** (0.0193) |
| 상수 | -1.467*** (0.385) | -1.467*** (0.387) |
| 표본수 | 27,395 | 27,359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누락

<표 IV-43>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 (1)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pooled-probit | (2)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745*** (0.133) | -0.727*** (0.134)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 0.172 (0.369)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0.317 (0.476) |
| 중소기업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 1.615*** (0.288) |
| 업력 | 0.00453 (0.0139) | 0.00583 (0.0140) |
| 업력제곱 | -0.000189 (0.000431) | -0.000186 (0.000430) |
| 로그-자산 | 0.194*** (0.0440) | 0.193*** (0.0447) |
| 로그-부채 | -0.00333 (0.0246) | -0.00582 (0.0249) |
| 상수 | -6.840*** (0.772) | -6.786*** (0.783) |
| 표본수 | 27,029 | 26,990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4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pooled-probit | (2)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373*** (0.117) | 0.391*** (0.119)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 0.848** (0.431) |
| 업력 | 0.0224 (0.0199) | 0.0249 (0.0202) |
| 업력제곱 | -0.000328 (0.000580) | -0.000380 (0.000587) |
| 로그-자산 | 0.0610 (0.0696) | 0.0658 (0.0701) |
| 로그-부채 | 0.112** (0.0495) | 0.110** (0.0497) |
| 상수 | -9.655 (157.2) | -9.708 (133.4) |
| 표본수 | 19,374 | 19,261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4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 개인사업자

| |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pooled-probit |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755*** (0.103) | -0.756*** (0.103) |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 -0.0789 (0.352)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0.255 (0.448) |
| 중소기업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 0.594 (0.485) |
| 업력 | -0.0165 (0.0113) | -0.0166 (0.0113) |
| 업력제곱 | 0.000185 (0.000359) | 0.000194 (0.000357) |
| 로그-자산 | 0.238*** (0.0409) | 0.237*** (0.0410) |
| 로그-부채 | 0.0289 (0.0227) | 0.0295 (0.0228) |
| 상수 | -11.82 (126.1) | -11.79 (126.6) |
| 표본수 | 22,764 | 22,728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 p<0.01, ** p<0.05, * p<0.1

2.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표 IV-46〉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프로빗 모형 추정 결과:
개인사업자

| | (1) 중소기업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pooled-probit | (2) 중소기업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pooled-probit |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0.714*** (0.205) | -0.658*** (0.208)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1.609*** (0.280)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0.342 (0.495) |
| 업력 | -0.0138 (0.0223) | -0.0164 (0.0224) |
| 업력제곱 | -0.000246 (0.000877) | -0.000184 (0.000864) |
| 로그-자산 | 0.133** (0.0550) | 0.124** (0.0562) |
| 로그-부채 | 0.0181 (0.0343) | 0.0184 (0.0350) |
| 상수 | -12.15 (445.5) | -13.01 (450.3) |
| 표본수 | 23,876 | 23,719 |
| Year FE | YES | YES |
| Region FE | YES | YES |

주: 1.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3.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적 평가

가. 설문응답 기업 특성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총 507개 기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법인 393개(77.5%), 개인사업자 114명(22.5%)이 응답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51개(29.8%), 제조업이 195개(38.5%), 서비스업이 161개(31.8%)를 차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304개(60%),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203개(40%)임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법인의 경우 소기업이 229개(45.2%), 중기업이 164(32.3%)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14명(22.5%)을 차지함
 - 세액감면 여부를 살펴보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는 155개(30.6%), 받지 않은 경우는 352개(69.4%)를 차지함

<표 IV-4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설문조사 응답 구분

| | | 응답수 | 비중 |
|----------|-------|-----|-------|
| 전체 | | 507 | 100.0 |
| 구분 | 법인 | 393 | 77.5 |
| | 개인 | 114 | 22.5 |
| 업종 | 도소매 | 151 | 29.8 |
| | 제조 | 195 | 38.5 |
| | 서비스 | 161 | 31.8 |
| 지역 | 수도권 | 304 | 60.0 |
| | 수도권 외 | 203 | 40.0 |
| 기업규모 | 소기업 | 229 | 45.2 |
| | 중기업 | 164 | 32.3 |
| | 개인 | 114 | 22.5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30.6 |
| | 아니다 | 352 | 69.4 |

<표 IV-48> 법인 재무상태

(단위: 개, 백만원)

| | | 응답수 | 총자산 | 총부채 | 매출액 | 영업이익 | 법인세 |
|--------|-------|-------|----------|---------|----------|---------|-------|
| 전체 | | (393) | 8,524.8 | 4,667.8 | 11,193.9 | 756.9 | 195.1 |
| 구분 | 법인 | (393) | 8,524.8 | 4,667.8 | 11,193.9 | 756.9 | 195.1 |
| 업종 | 도소매 | (97) | 4,295.1 | 2,565.7 | 6,462.7 | 221.7 | 63.7 |
| | 제조 | (162) | 12,283.8 | 6,847.0 | 17,355.4 | 1,323.9 | 325.6 |
| | 서비스 | (134) | 6,637.1 | 3,342.3 | 6,814.7 | 393.4 | 131.3 |
| 지역 | 수도권 | (272) | 8,719.6 | 4,315.2 | 11,949.9 | 900.4 | 256.2 |
| | 수도권 외 | (121) | 8,113.7 | 5,401.2 | 9,630.9 | 455.4 | 77.0 |
| 기업규모 | 소기업 | (229) | 3,256.2 | 1,985.0 | 3,638.6 | 181.4 | 54.1 |
| | 중기업 | (164) | 15,276.4 | 8,151.5 | 21,230.7 | 1,522.7 | 393.3 |
| 세액감면여부 | 그렇다 | (148) | 11,681.5 | 6,048.9 | 12,834.6 | 834.1 | 199.0 |
| | 아니다 | (245) | 6,643.9 | 3,833.4 | 10,204.5 | 708.7 | 192.5 |

<표 IV-49>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단위: 개, %, 백만원)

| | | 응답수 | 100만원 이하 | 1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000만원 ~ 1억원 | 1억원 ~ 2억원 | 2억원 초과 | 무응답/거절/모름 | 평균부채 |
|--------|-------|-------|----------|-----------------|-------------------|-------------------|---------------|-----------|--------|-----------|---------|
| 전체 | | (114) | 7.9 | 7.9 | 14.9 | 21.1 | 21.1 | 10.5 | 10.5 | 6.1 | 393.9 |
| 구분 | 개인 | (114) | 7.9 | 7.9 | 14.9 | 21.1 | 21.1 | 10.5 | 10.5 | 6.1 | 393.9 |
| 업종 | 도소매 | (54) | 5.6 | 13.0 | 14.8 | 18.5 | 20.4 | 13.0 | 9.3 | 5.6 | 248.2 |
| | 제조 | (33) | 12.1 | 0.0 | 6.1 | 21.2 | 24.2 | 12.1 | 21.2 | 3.0 | 893.6 |
| | 서비스 | (27) | 7.4 | 7.4 | 25.9 | 25.9 | 18.5 | 3.7 | 0.0 | 11.1 | 149.5 |
| 지역 | 수도권 | (32) | 15.6 | 9.4 | 18.8 | 18.8 | 12.5 | 9.4 | 12.5 | 3.1 | 490.9 |
| | 수도권 외 | (82) | 4.9 | 7.3 | 13.4 | 22.0 | 24.4 | 11.0 | 9.8 | 7.3 | 357.9 |
| 기업규모 | 개인 | (114) | 7.9 | 7.9 | 14.9 | 21.1 | 21.1 | 10.5 | 10.5 | 6.1 | 393.9 |
| 세액감면여부 | 그렇다 | (7) | 14.3 | 0.0 | 28.6 | 0.0 | 42.9 | 14.3 | 0.0 | 0.0 | 1,099.7 |
| | 아니다 | (107) | 7.5 | 8.4 | 14.0 | 22.4 | 19.6 | 10.3 | 11.2 | 6.5 | 342.7 |

- 전체 응답자 중 30%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70%는 이용하지 않고 있음
 -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비교하면 법인은 37%가, 개인사업자는 6%만 해당 제도를 이용함
 -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에 비해 세무처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6%), 서비스업(29.8%), 도소매업(23%) 순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비중이 낮아짐
 - 이는 도소매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감면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35%, 수도권 외 지역은 23%가 해당 제도를 이용함
 - 수도권 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감면율이 더 높지만 오히려 해당 제도를 덜 이용한다는 것은 수도권 외 지역 기업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줌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은 45%, 중기업은 25%, 개인사업자는 6%가 해당 제도를 이용함
 - 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감면율이 더 높기 때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이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 중 60%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23%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지, 홍보 및 안내를 통해, 16%는 뉴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해당 제도를 알게 됨
 - 즉, 정부의 홍보나 대중매체를 통한 접근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

<표 IV-50> 세액감면제도 인지 경로

(단위: 개, %)

| | | 응답수 |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지, 홍보 및 안내를 통해 | 뉴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
|------|-------|-------|-------------|---------------------------|--------------------|
| 전체 | | (155) | 60.0 | 23.2 | 16.8 |
| 구분 | 법인 | (148) | 59.5 | 23.0 | 17.6 |
| | 개인 | (7) | 71.4 | 28.6 | 0.0 |
| 업종 | 도소매 | (35) | 82.9 | 14.3 | 2.9 |
| | 제조 | (72) | 50.0 | 29.2 | 20.8 |
| | 서비스 | (48) | 58.3 | 20.8 | 20.8 |
| 지역 | 수도권 | (108) | 57.4 | 25.9 | 16.7 |
| | 수도권 외 | (47) | 66.0 | 17.0 | 17.0 |
| 기업규모 | 소기업 | (105) | 57.1 | 22.9 | 20.0 |
| | 중기업 | (43) | 65.1 | 23.3 | 11.6 |
| | 개인 | (7) | 71.4 | 28.6 | 0.0 |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세액이 설비투자나 R&B투자와 같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출로 사용되기보다는 인건비 지출 위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급(36.8%), 설비투자(24.5%), 물건비 지출(16.8%), R&D 투자(12.3%), 신규 고용(11%), 사내유보(5.2%), 일반운용자금(3.2%), 회사운영비(2.6%), 배당금 지급(0.6%), 재료비 구매(0.6%) 순으로 사용함
 - 인건비 지급과 신규 고용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 정도(47.8%)가 감면된 세액을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지출함

<표 IV-5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 사용처

(단위: 개, %)

| | | 응답수 | 인건비지급 | 설비투자 | 물건비지출 | R&D 투자 | 신규고용 | 사내유보 | 일반운용자금 | 회사운영비 | 배당금지급 | 재료비구매 |
|-------|-------|-------|-------|------|-------|--------|------|------|--------|-------|-------|-------|
| 전체 | | (155) | 36.8 | 24.5 | 16.8 | 12.3 | 11.0 | 5.2 | 3.2 | 2.6 | 0.6 | 0.6 |
| 구분 | 법인 | (148) | 35.8 | 25.0 | 16.2 | 12.8 | 11.5 | 4.7 | 3.4 | 2.7 | 0.7 | 0.7 |
| | 개인 | (7) | 57.1 | 14.3 | 28.6 | 0.0 | 0.0 | 14.3 | 0.0 | 0.0 | 0.0 | 0.0 |
| 업종 | 도소매 | (35) | 31.4 | 14.3 | 25.7 | 2.9 | 11.4 | 11.4 | 2.9 | 5.7 | 0.0 | 2.9 |
| | 제조 | (72) | 30.6 | 33.3 | 15.3 | 15.3 | 8.3 | 1.4 | 5.6 | 1.4 | 0.0 | 0.0 |
| | 서비스 | (48) | 50.0 | 18.8 | 12.5 | 14.6 | 14.6 | 6.3 | 0.0 | 2.1 | 2.1 | 0.0 |
| 지역 | 수도권 | (108) | 38.0 | 25.9 | 14.8 | 13.0 | 11.1 | 3.7 | 4.6 | 1.9 | 0.9 | 0.9 |
| | 수도권 외 | (47) | 34.0 | 21.3 | 21.3 | 10.6 | 10.6 | 8.5 | 0.0 | 4.3 | 0.0 | 0.0 |
| 기업 규모 | 소기업 | (105) | 34.3 | 20.0 | 19.0 | 9.5 | 9.5 | 6.7 | 2.9 | 3.8 | 0.0 | 1.0 |
| | 중기업 | (43) | 39.5 | 37.2 | 9.3 | 20.9 | 16.3 | 0.0 | 4.7 | 0.0 | 2.3 | 0.0 |
| | 개인 | (7) | 57.1 | 14.3 | 28.6 | 0.0 | 0.0 | 14.3 | 0.0 | 0.0 | 0.0 | 0.0 |

- 반면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세액감면 비율이 낮거나, 해당 제도의 절차가 복잡해서라기보다는 감면 대상 기준에 충족되지 않거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임
- 감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40.9%), 해당 제도를 모르는 경우(37.2%),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12.8%), 다른 세액감면을 충분히 받은 경우(4%), 세무처리 및 등록절차가 복잡한 경우(3.4%), 해당 제도의 세액감면 비율이 낮아서(1.1%), 기타(무응답/거절)(0.6%)

<표 IV-52>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개, %)

| | | 응답수 | 감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 해당 제도를 몰라서 |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음 | 다른 세액감면을 충분히 받아서 | 세무처리 및 등록 절차가 복잡해서 | 해당 제도의 세액 감면 비율이 낮아서 | 기타 (무응답/거절) |
|------|-------|-------|--------------------|------------|---------------|------------------|--------------------|----------------------|-------------|
| 전체 | | (352) | 40.9 | 37.2 | 12.8 | 4 | 3.4 | 1.1 | 0.6 |
| 구분 | 법인 | (245) | 48.2 | 26.1 | 15.9 | 4.9 | 3.3 | 1.2 | 0.4 |
| | 개인 | (107) | 24.3 | 62.6 | 5.6 | 1.9 | 3.7 | 0.9 | 0.9 |
| 업종 | 도소매 | (116) | 18.1 | 61.2 | 12.9 | 2.6 | 1.7 | 2.6 | 0.9 |
| | 제조 | (123) | 61.8 | 20.3 | 8.9 | 4.1 | 3.3 | 0.8 | 0.8 |
| | 서비스 | (113) | 41.6 | 31 | 16.8 | 5.3 | 5.3 | 0 | 0 |
| 지역 | 수도권 | (196) | 53.1 | 25.5 | 11.2 | 5.1 | 4.1 | 0.5 | 0.5 |
| | 수도권 외 | (156) | 25.6 | 51.9 | 14.7 | 2.6 | 2.6 | 1.9 | 0.6 |
| 기업규모 | 소기업 | (124) | 31.5 | 36.3 | 19.4 | 7.3 | 2.4 | 2.4 | 0.8 |
| | 중기업 | (121) | 65.3 | 15.7 | 12.4 | 2.5 | 4.1 | 0 | 0 |
| | 개인 | (107) | 24.3 | 62.6 | 5.6 | 1.9 | 3.7 | 0.9 | 0.9 |

- 주 1. 결손, 당기손실, 기한미도래는 감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로 포함시킴
 2. 담당 세무사로부터 전달받지 않은 경우, 세무대리를 받아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제도를 모르는 경우로 포함시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만을 이용하는 113개의 기업의 해당 이유로는 동 제도의 이용에 의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등 다른 제도 자체를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6%에 달함
- 추가적으로 해당 제도만으로도 감면이 충분하거나, 제도 이용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감면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다는 응답이 각각 8%, 9.7%, 15%로 나타났음

<표 IV-5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만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개, %)

| | 응답수 |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 감면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아서 | 제도 이용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만으로도 세액 감면이 충분해서 | 기타 | 세무사가 알아서 진행 | |
|----------|-------|------------------|--------------------|-------------------------|----------------------------|------|-------------|-----|
| 전체 | (113) | 60.2 | 15.0 | 9.7 | 8.0 | 4.4 | 2.7 | |
| 구분 | 법인 | (109) | 60.6 | 14.7 | 9.2 | 8.3 | 4.6 | 2.8 |
| | 개인 | (4) | 50.0 | 25.0 | 25.0 | 0.0 | 0.0 | 0.0 |
| 업종 | 도소매 | (25) | 64.0 | 12.0 | 8.0 | 4.0 | 8.0 | 4.0 |
| | 제조 | (52) | 57.7 | 13.5 | 13.5 | 7.7 | 3.8 | 3.8 |
| | 서비스 | (36) | 61.1 | 19.4 | 5.6 | 11.1 | 2.8 | 0.0 |
| 지역 | 수도권 | (79) | 69.6 | 10.1 | 10.1 | 5.1 | 1.3 | 3.8 |
| | 수도권 외 | (34) | 38.2 | 26.5 | 8.8 | 14.7 | 11.8 | 0.0 |
| 기업 규모 | 소기업 | (86) | 61.6 | 16.3 | 9.3 | 7.0 | 3.5 | 2.3 |
| | 중기업 | (23) | 56.5 | 8.7 | 8.7 | 13.0 | 8.7 | 4.3 |
| | 개인 | (4) | 50.0 | 25.0 | 25.0 | 0.0 | 0.0 | 0.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13) | 60.2 | 15.0 | 9.7 | 8.0 | 4.4 | 2.7 |

□ 2016년 세법 개정에 따라 소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10%의 추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응답자 178개 사업체 중 기업의 9%만이 추가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54> 110% 추가 감면율 적용 여부

(단위: 개, %)

| | 응답수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거절/모름 | |
|----------|-------|-------|------|-----------|-----|
| 전체 | (178) | 8.4 | 91.0 | 0.6 | |
| 구분 | 법인 | (168) | 8.3 | 91.1 | 0.6 |
| | 개인 | (10) | 10.0 | 90.0 | 0.0 |
| 업종 | 도소매 | (42) | 19.0 | 81.0 | 0.0 |
| | 제조 | (77) | 5.2 | 94.8 | 0.0 |
| | 서비스 | (59) | 5.1 | 93.2 | 1.7 |
| 지역 | 수도권 | (119) | 5.9 | 94.1 | 0.0 |
| | 수도권 외 | (59) | 13.6 | 84.7 | 1.7 |
| 기업 규모 | 소기업 | (119) | 9.2 | 90.8 | 0.0 |
| | 중기업 | (49) | 6.1 | 91.8 | 2.0 |
| | 개인 | (10) | 10.0 | 90.0 | 0.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9.0 | 90.3 | 0.6 |
| | 아니다 | (23) | 4.3 | 95.7 | 0.0 |

나. 동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 앞에서 중소기업들의 재무자료와 납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상반되게 납세자들은 동 제도의 감면혜택이 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속적 성장, 재무건전성, 사업범위 확장,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 제도의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됨
 - 납세자들이 동 제도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비율은 안정적 운영, 지속적 성장, 재무건전성의 항목에는 100점 기준 71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업의 혁신성향을 나타내는 사업범위 확장과 수익성 제고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100점 기준 61.5점과 64.8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 항목들의 평가보다는 낮게 나타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주로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고용에 대한 사용보다는 기존 고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에 활용하고 있어서 기업경영안정성 이외의 성장성 또는 수익성 제고와 같은 혁신성향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나 납세자들의 응답은 여러 효과성 질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
 - 이는 설문조사의 한계로 판단되나 한편으로는 납세자들의 동 제도의 폐지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V-5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단위: 개, %)

| | 응답수 | 매우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점 평균 | 100점 평균 |
|---------|-------|-------|------|---------|------------|-------|---------|
| 안정적 운영 | (507) | 23.1 | 67.5 | 8.9 | 0.6 | 3.13 | 71.0 |
| 지속적 성장 | (507) | 22.9 | 67.9 | 8.7 | 0.6 | 3.13 | 71.0 |
| 재무건전성 | (507) | 22.9 | 67.9 | 8.7 | 0.6 | 3.13 | 71.0 |
| 사업범위 확장 | (507) | 15.0 | 55.8 | 27.8 | 1.4 | 2.84 | 61.5 |
| 수익성 제고 | (507) | 16.6 | 62.3 | 20.1 | 1.0 | 2.94 | 64.8 |

- 업종 분류 시 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분류가 달라서 비슷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이용경험 기업 178개 중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28.7%를 차지함

-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40%를 차지하므로 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분류를 통일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납세순응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복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업체 중 40%에 달하는 6개 업체가 주된 업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개 업체는 본인이 생각했던 주된 업종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른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되는 혼란스러움을 겪는다고 응답
 - 1개 업체는 해당 업종의 코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다른 사업을 주요 업종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응답
 - 또 다른 업체는 업종 간 세액감면율의 차이가 커서 주된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된 업종으로 선택하여 신고하기도 했다고 응답
 - 비록 소수의 업체들이기는 하지만 성실신고에 저해되는 제도적 요인은 수정보완하고 납세순응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56〉 업종 분류시 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분류가 달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그렇다 | 아니다 | 무응답/거절/모름 |
|----------|-------|-------|------|------|-----------|
| 전체 | | (178) | 28.7 | 70.8 | 0.6 |
| 구분 | 법인 | (168) | 28.0 | 71.4 | 0.6 |
| | 개인 | (10) | 40.0 | 60.0 | 0.0 |
| 업종 | 도소매 | (42) | 26.2 | 73.8 | 0.0 |
| | 제조 | (77) | 29.9 | 70.1 | 0.0 |
| | 서비스 | (59) | 28.8 | 69.5 | 1.7 |
| 지역 | 수도권 | (119) | 30.3 | 69.7 | 0.0 |
| | 수도권 외 | (59) | 25.4 | 72.9 | 1.7 |
| 기업 규모 | 소기업 | (119) | 31.9 | 68.1 | 0.0 |
| | 중기업 | (49) | 18.4 | 79.6 | 2.0 |
| | 개인 | (10) | 40.0 | 60.0 | 0.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29.0 | 70.3 | 0.6 |
| | 아니다 | (23) | 26.1 | 73.9 | 0.0 |

다. 제도개편 방향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1) 업종제한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 유흥업 등 사치성 소비업종과 같이 국민정서상 육성대상으로 볼 수 없는 업종들을 배제하고 여타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77.9%에 달하는 기업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총 507개 기업 중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매우 동의하는 기업은 11.2%, 동의하는 기업은 66.7%,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19.3%, 매우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2.6%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개편 방안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임

<표 IV-57>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단위: 개, %)

| | | 응답수 | 매우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무응답/거절/모름 | 4점 평균 | 100점 평균 |
|----------|-------|-------|-------|------|---------|------------|-----------|-------|---------|
| 전체 | | (507) | 11.2 | 66.7 | 19.3 | 2.6 | 0.2 | 2.87 | 62.3 |
| 구분 | 법인 | (393) | 10.9 | 65.9 | 20.6 | 2.3 | 0.3 | 2.86 | 61.9 |
| | 개인 | (114) | 12.3 | 69.3 | 14.9 | 3.5 | 0.0 | 2.90 | 63.5 |
| 업종 | 도소매 | (151) | 17.2 | 58.3 | 22.5 | 2.0 | 0.0 | 2.91 | 63.6 |
| | 제조 | (195) | 9.7 | 66.7 | 20.5 | 2.6 | 0.5 | 2.84 | 61.3 |
| | 서비스 | (161) | 7.5 | 74.5 | 14.9 | 3.1 | 0.0 | 2.86 | 62.1 |
| 지역 | 수도권 | (304) | 7.9 | 71.1 | 17.8 | 3.0 | 0.3 | 2.84 | 61.4 |
| | 수도권 외 | (203) | 16.3 | 60.1 | 21.7 | 2.0 | 0.0 | 2.91 | 63.5 |
| 기업 규모 | 소기업 | (229) | 15.7 | 59.0 | 22.7 | 2.2 | 0.4 | 2.89 | 62.9 |
| | 중기업 | (164) | 4.3 | 75.6 | 17.7 | 2.4 | 0.0 | 2.82 | 60.6 |
| | 개인 | (114) | 12.3 | 69.3 | 14.9 | 3.5 | 0.0 | 2.90 | 63.5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11.6 | 68.4 | 18.1 | 1.9 | 0.0 | 2.90 | 63.2 |
| | 아니다 | (352) | 11.1 | 65.9 | 19.9 | 2.8 | 0.3 | 2.85 | 61.8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기업들 중 53.9%의 기업들이 감면율을 낮추더라도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의 개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편에 동의하는 기업 395개 가운데, 감면율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더라도 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기업이 53.9%,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46.1%로 응답

<표 IV-58> 모든 업종을 포괄 개편 시 감면율을 낮추는 개편방안에 동의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동의하지 않는다 | 동의한다 |
|----------|-------|-------|----------|------|
| 전체 | | (395) | 46.1 | 53.9 |
| 구분 | 법인 | (302) | 44.0 | 56.0 |
| | 개인 | (93) | 52.7 | 47.3 |
| 업종 | 도소매 | (114) | 57.0 | 43.0 |
| | 제조 | (149) | 45.0 | 55.0 |
| | 서비스 | (132) | 37.9 | 62.1 |
| 지역 | 수도권 | (240) | 44.2 | 55.8 |
| | 수도권 외 | (155) | 49.0 | 51.0 |
| 기업규모 | 소기업 | (171) | 44.4 | 55.6 |
| | 중기업 | (131) | 43.5 | 56.5 |
| | 개인 | (93) | 52.7 | 47.3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24) | 52.4 | 47.6 |
| | 아니다 | (271) | 43.2 | 56.8 |

주: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대상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일부 육성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선별적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설문 결과에 의하면 개편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 111개 중 60.4%는 현재 처럼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 이외에 20.7%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서 동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16.2%는 감면업종을 확대하면 본인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표 IV-59> 모든 업종을 포괄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 | | 응답수 |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서 | 현재처럼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감면업종을 확대하면 본인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 기타 | 무응답/거절/모름 |
|----------|-------|-------|----------------------------------|------------------------------------|-------------------------------|-----|-----------|
| 전체 | | (111) | 20.7 | 60.4 | 16.2 | 1.8 | 0.9 |
| 구분 | 법인 | (90) | 22.2 | 56.7 | 17.8 | 2.2 | 1.1 |
| | 개인 | (21) | 14.3 | 76.2 | 9.5 | 0.0 | 0.0 |
| 업종 | 도소매 | (37) | 10.8 | 70.3 | 18.9 | 0.0 | 0.0 |
| | 제조 | (45) | 31.1 | 53.3 | 13.3 | 0.0 | 2.2 |
| | 서비스 | (29) | 17.2 | 58.6 | 17.2 | 6.9 | 0.0 |
| 지역 | 수도권 | (63) | 30.2 | 52.4 | 14.3 | 1.6 | 1.6 |
| | 수도권 외 | (48) | 8.3 | 70.8 | 18.8 | 2.1 | 0.0 |
| 기업규모 | 소기업 | (57) | 21.1 | 54.4 | 21.1 | 1.8 | 1.8 |
| | 중기업 | (33) | 24.2 | 60.6 | 12.1 | 3.0 | 0.0 |
| | 개인 | (21) | 14.3 | 76.2 | 9.5 | 0.0 | 0.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31) | 19.4 | 51.6 | 29.0 | 0.0 | 0.0 |
| | 아니다 | (80) | 21.3 | 63.8 | 11.3 | 2.5 | 1.3 |

주: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2)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 다음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율 체계를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약 48.3%의 기업들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업 507개 중 7.1%는 개편 방안에 매우 동의, 41.2%는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9.7%는 동의하지 않음, 2%는 매우 동의하지 않다고 응답함
 -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이 동의하는 기업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인사업체 보다는 개인사업체의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60>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폐지에 대한 인식조사

(단위: 개, %)

| | | 응답수 | 매우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점 평균 | 100점 평균 |
|----------------|-------|-------|----------|------|------------|------------------|----------|------------|
| 전체 | | (507) | 7.1 | 41.2 | 49.7 | 2.0 | 2.53 | 51.2 |
| 구분 | 법인 | (393) | 8.7 | 41.2 | 48.1 | 2.0 | 2.56 | 52.2 |
| | 개인 | (114) | 1.8 | 41.2 | 55.3 | 1.8 | 2.43 | 47.7 |
| 업종 | 도소매 | (151) | 9.9 | 39.1 | 51.0 | 0.0 | 2.59 | 53.0 |
| | 제조 | (195) | 6.2 | 41.0 | 50.3 | 2.6 | 2.51 | 50.3 |
| | 서비스 | (161) | 5.6 | 43.5 | 47.8 | 3.1 | 2.52 | 50.5 |
| 지역 | 수도권 | (304) | 6.6 | 41.8 | 50.0 | 1.6 | 2.53 | 51.1 |
| | 수도권 외 | (203) | 7.9 | 40.4 | 49.3 | 2.5 | 2.54 | 51.2 |
| 기업 규모 | 소기업 | (229) | 13.1 | 36.2 | 47.6 | 3.1 | 2.59 | 53.1 |
| | 중기업 | (164) | 2.4 | 48.2 | 48.8 | 0.6 | 2.52 | 50.8 |
| | 개인 | (114) | 1.8 | 41.2 | 55.3 | 1.8 | 2.43 | 47.7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4.5 | 40.6 | 51.6 | 3.2 | 2.46 | 48.8 |
| | 아니다 | (352) | 8.2 | 41.5 | 48.9 | 1.4 | 2.57 | 52.2 |

- 기업규모별 차등지원하는 현행 감면을 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기업 중 71.4%의 기업들은 감면혜택이 감소하더라도 기업규모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개편방안에 동의한 기업 총 245개 중 71.4%가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앞의 질문의 응답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8.6%는 바꾸겠다고 응답함
 - 즉, 현재보다 감면수준이 낮아지더라도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61〉 기업규모별 차등적 감면율 체계 개편으로 감면혜택 축소
가능성에 대한 납세자의 감수 의향

(단위: 개, %)

| | | 응답수 | 바꾸지 않는다 | 바꾼다 |
|----------|-------|-------|---------|------|
| 전체 | | (245) | 71.4 | 28.6 |
| 구분 | 법인 | (196) | 71.9 | 28.1 |
| | 개인 | (49) | 69.4 | 30.6 |
| 업종 | 도소매 | (74) | 68.9 | 31.1 |
| | 제조 | (92) | 68.5 | 31.5 |
| | 서비스 | (79) | 77.2 | 22.8 |
| 지역 | 수도권 | (147) | 76.2 | 23.8 |
| | 수도권 외 | (98) | 64.3 | 35.7 |
| 기업규모 | 소기업 | (113) | 75.2 | 24.8 |
| | 중기업 | (83) | 67.5 | 32.5 |
| | 개인 | (49) | 69.4 | 30.6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70) | 71.4 | 28.6 |
| | 아니다 | (175) | 71.4 | 28.6 |

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의 주된 이유는 소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나타남
-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262개의 기업 중 65.3%는 소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 23.7%는 기업규모보다는 업종이나 수도권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여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 11.1%는 중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IV-62>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 | | 응답수 | 소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 중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 기업규모보다는 업종이나 수도권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여서 |
|----------------|-------|-------|------------------------------|------------------------------|--|
| 전체 | | (262) | 65.3 | 11.1 | 23.7 |
| 구분 | 법인 | (197) | 61.9 | 12.7 | 25.4 |
| | 개인 | (65) | 75.4 | 6.2 | 18.5 |
| 업종 | 도소매 | (77) | 72.7 | 5.2 | 22.1 |
| | 제조 | (103) | 59.2 | 14.6 | 26.2 |
| | 서비스 | (82) | 65.9 | 12.2 | 22.0 |
| 지역 | 수도권 | (157) | 63.7 | 12.7 | 23.6 |
| | 수도권 외 | (105) | 67.6 | 8.6 | 23.8 |
| 기업규모 | 소기업 | (116) | 67.2 | 9.5 | 23.3 |
| | 중기업 | (81) | 54.3 | 17.3 | 28.4 |
| | 개인 | (65) | 75.4 | 6.2 | 18.5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85) | 62.4 | 14.1 | 23.5 |
| | 아니다 | (177) | 66.7 | 9.6 | 23.7 |

주: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
항임

3) 지역별 차등지원 폐지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 수도권기업과 비수도권기업이 차등적 감면율을 단순화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기업은 5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찬성 비율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찬성 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전체 기업 507개 중 위와 같은 개편방안에 매우 동의하는 기업은 9.1%, 동의하는 기업은 47.3%,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39.8%, 매우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3.7%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에 찬성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비수도를 비교해볼 때, 수도권은 64.8%가 찬성, 수도권 외 지역은 43.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63>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매우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점 평균 | 100점 평균 |
|----------------|-------|-------|----------|------|------------|------------------|----------|------------|
| 전체 | | (507) | 9.1 | 47.3 | 39.8 | 3.7 | 2.62 | 53.9 |
| 구분 | 법인 | (393) | 9.4 | 49.6 | 36.6 | 4.3 | 2.64 | 54.7 |
| | 개인 | (114) | 7.9 | 39.5 | 50.9 | 1.8 | 2.54 | 51.2 |
| 업종 | 도소매 | (151) | 11.3 | 40.4 | 44.4 | 4.0 | 2.59 | 53.0 |
| | 제조 | (195) | 10.3 | 53.3 | 33.8 | 2.6 | 2.71 | 57.1 |
| | 서비스 | (161) | 5.6 | 46.6 | 42.9 | 5.0 | 2.53 | 50.9 |
| 지역 | 수도권 | (304) | 9.2 | 55.6 | 33.2 | 2.0 | 2.72 | 57.3 |
| | 수도권 외 | (203) | 8.9 | 35.0 | 49.8 | 6.4 | 2.46 | 48.8 |
| 기업 규모 | 소기업 | (229) | 14.0 | 48.0 | 33.2 | 4.8 | 2.71 | 57.1 |
| | 중기업 | (164) | 3.0 | 51.8 | 41.5 | 3.7 | 2.54 | 51.4 |
| | 개인 | (114) | 7.9 | 39.5 | 50.9 | 1.8 | 2.54 | 51.2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7.7 | 47.7 | 38.7 | 5.8 | 2.57 | 52.5 |
| | 아니다 | (352) | 9.7 | 47.2 | 40.3 | 2.8 | 2.64 | 54.5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기업 중 75.5%가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더라도 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286개의 기업 중 75.5%가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개편방안에 동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5%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표 IV-64〉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 시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 동의 변경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바꾸지 않는다 | 바꾼다 |
|----------|-------|-------|---------|------|
| 전체 | | (286) | 75.5 | 24.5 |
| 구분 | 법인 | (232) | 75.0 | 25.0 |
| | 개인 | (54) | 77.8 | 22.2 |
| 업종 | 도소매 | (78) | 73.1 | 26.9 |
| | 제조 | (124) | 75.8 | 24.2 |
| | 서비스 | (84) | 77.4 | 22.6 |
| 지역 | 수도권 | (197) | 77.7 | 22.3 |
| | 수도권 외 | (89) | 70.8 | 29.2 |
| 기업규모 | 소기업 | (142) | 78.9 | 21.1 |
| | 중기업 | (90) | 68.9 | 31.1 |
| | 개인 | (54) | 77.8 | 22.2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86) | 76.7 | 23.3 |
| | 아니다 | (200) | 75.0 | 25.0 |

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 지역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거나 수도권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
 -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 221개 가운데 40.7%의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응답
 - 31.2%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동 개편방안에 반대
 - 27.6%의 기업은 기업의 위치보다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여서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표 IV-65>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 | | 응답수 |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서 | 기업의 위치보다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 | 회사의 특수성 비교 |
|----------------|-------|-------|---------------------------------------|--|---|------------------|
| 전체 | | (221) | 40.7 | 31.2 | 27.6 | 0.5 |
| 구분 | 법인 | (161) | 44.1 | 27.3 | 28.0 | 0.6 |
| | 개인 | (60) | 31.7 | 41.7 | 26.7 | 0.0 |
| 업종 | 도소매 | (73) | 27.4 | 46.6 | 26.0 | 0.0 |
| | 제조 | (71) | 52.1 | 18.3 | 28.2 | 1.4 |
| | 서비스 | (77) | 42.9 | 28.6 | 28.6 | 0.0 |
| 지역 | 수도권 | (107) | 32.7 | 25.2 | 41.1 | 0.9 |
| | 수도권 외 | (114) | 48.2 | 36.8 | 14.9 | 0.0 |
| 기업 규모 | 소기업 | (87) | 46.0 | 28.7 | 24.1 | 1.1 |
| | 중기업 | (74) | 41.9 | 25.7 | 32.4 | 0.0 |
| | 개인 | (60) | 31.7 | 41.7 | 26.7 | 0.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69) | 52.2 | 20.3 | 26.1 | 1.4 |
| | 아니다 | (152) | 35.5 | 36.2 | 28.3 | 0.0 |

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 감면율을 적용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4) 동 제도의 수혜기간을 설정하는 개편방안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 현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약 48%의 기업들이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기업 507개 가운데 3.2%는 동 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44.8%는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
 - 그러나 전체 기업의 47.5%는 동의하지 않고 4.5%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수혜기간 축소에 대해서 약 52%의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IV-66>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매우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점 평균 | 100점 평균 |
|----------|-------|-------|-------|------|---------|------------|-------|---------|
| 전체 | | (507) | 3.2 | 44.8 | 47.5 | 4.5 | 2.47 | 48.8 |
| 구분 | 법인 | (393) | 3.6 | 45.0 | 46.6 | 4.8 | 2.47 | 49.1 |
| | 개인 | (114) | 1.8 | 43.9 | 50.9 | 3.5 | 2.44 | 48.0 |
| 업종 | 도소매 | (151) | 6.0 | 38.4 | 49.0 | 6.6 | 2.44 | 47.9 |
| | 제조 | (195) | 2.1 | 43.6 | 50.8 | 3.6 | 2.44 | 48.0 |
| | 서비스 | (161) | 1.9 | 52.2 | 42.2 | 3.7 | 2.52 | 50.7 |
| 지역 | 수도권 | (304) | 2.3 | 49.0 | 46.1 | 2.6 | 2.51 | 50.3 |
| | 수도권 외 | (203) | 4.4 | 38.4 | 49.8 | 7.4 | 2.40 | 46.6 |
| 기업 규모 | 소기업 | (229) | 5.7 | 44.1 | 44.1 | 6.1 | 2.49 | 49.8 |
| | 중기업 | (164) | 0.6 | 46.3 | 50.0 | 3.0 | 2.45 | 48.2 |
| | 개인 | (114) | 1.8 | 43.9 | 50.9 | 3.5 | 2.44 | 48.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2.6 | 43.2 | 47.7 | 6.5 | 2.42 | 47.3 |
| | 아니다 | (352) | 3.4 | 45.5 | 47.4 | 3.7 | 2.49 | 49.5 |

- 현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개편 방안에 동의하는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10년 이하의 수혜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음
 - 개편방안에 동의하는 243개의 기업 중 55.1%가 5년 이내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37.9%가 5~10년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서 수혜기간 설정에 긍정적인 기업들의 93%가 10년 이하의 지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며 기한 설정이 없는 현행 제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외에 개편방안에 동의한 기업들 중 3.7%가 10~15년, 3.3%가 15~20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표 IV-67>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경우
적정 수혜기간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 | | 응답수 | 5년 이내 | 5~10년 | 10~15년 | 15~20년 |
|--------|-------|-------|-------|-------|--------|--------|
| 전체 | | (243) | 55.1 | 37.9 | 3.7 | 3.3 |
| 구분 | 법인 | (191) | 49.7 | 42.4 | 3.7 | 4.2 |
| | 개인 | (52) | 75.0 | 21.2 | 3.8 | 0.0 |
| 업종 | 도소매 | (67) | 52.2 | 43.3 | 3.0 | 1.5 |
| | 제조 | (89) | 57.3 | 37.1 | 1.1 | 4.5 |
| | 서비스 | (87) | 55.2 | 34.5 | 6.9 | 3.4 |
| 지역 | 수도권 | (156) | 48.7 | 44.2 | 4.5 | 2.6 |
| | 수도권 외 | (87) | 66.7 | 26.4 | 2.3 | 4.6 |
| 기업규모 | 소기업 | (114) | 47.4 | 45.6 | 3.5 | 3.5 |
| | 중기업 | (77) | 53.2 | 37.7 | 3.9 | 5.2 |
| | 개인 | (52) | 75.0 | 21.2 | 3.8 | 0.0 |
| 세액감면여부 | 그렇다 | (71) | 43.7 | 43.7 | 4.2 | 8.5 |
| | 아니다 | (172) | 59.9 | 35.5 | 3.5 | 1.2 |

주: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 현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편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 총 264개 중 75.4%가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 16.7%가 특정 업종은 계속 지원되어야 하므로 수혜기간 설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음
 - 6.1%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표 IV-68> 세액감면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 | | 응답수 |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므로 | 특정 업종은 계속 지원되어야 하므로 |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므로 | 기타 | 비수도권 특정업종의 중소기업 지속적 지원 |
|----------------|-------|-------|-------------------------------|---------------------------------|---|-----|---------------------------------|
| 전체 | | (264) | 75.4 | 16.7 | 6.1 | 0.4 | 1.5 |
| 구분 | 법인 | (202) | 81.2 | 10.4 | 6.4 | 0.5 | 1.5 |
| | 개인 | (62) | 56.5 | 37.1 | 4.8 | 0.0 | 1.6 |
| 업종 | 도소매 | (84) | 50.0 | 42.9 | 6.0 | 0.0 | 1.2 |
| | 제조 | (106) | 86.8 | 4.7 | 6.6 | 0.0 | 1.9 |
| | 서비스 | (74) | 87.8 | 4.1 | 5.4 | 1.4 | 1.4 |
| 지역 | 수도권 | (148) | 88.5 | 7.4 | 2.7 | 0.0 | 1.4 |
| | 수도권 외 | (116) | 58.6 | 28.4 | 10.3 | 0.9 | 1.7 |
| 기업 규모 | 소기업 | (115) | 83.5 | 5.2 | 7.8 | 0.9 | 2.6 |
| | 중기업 | (87) | 78.2 | 17.2 | 4.6 | 0.0 | 0.0 |
| | 개인 | (62) | 56.5 | 37.1 | 4.8 | 0.0 | 1.6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84) | 86.9 | 8.3 | 3.6 | 1.2 | 0.0 |
| | 아니다 | (180) | 70.0 | 20.6 | 7.2 | 0.0 | 2.2 |

주: 세액감면 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5) 현행 제도의 전면 재설계에 대한 납세자 인식조사

- 현재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기업의 77.3%가 해당 개편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현재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들이 내야 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기업규모, 소재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고용수준과 연계하여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12%의 기업들은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65.3%의 기업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
 - 부정적인 응답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35.1%로 법인사업자의 19.1%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69>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 방안 동의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매우 동의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점 평균 | 100점 평균 |
|----------------|-------|-------|----------|------|------------|------------------|----------|------------|
| 전체 | | (507) | 12.0 | 65.3 | 21.1 | 1.6 | 2.88 | 62.6 |
| 구분 | 법인 | (393) | 12.2 | 68.7 | 18.1 | 1.0 | 2.92 | 64.0 |
| | 개인 | (114) | 11.4 | 53.5 | 31.6 | 3.5 | 2.73 | 57.6 |
| 업종 | 도소매 | (151) | 16.6 | 54.3 | 25.2 | 4.0 | 2.83 | 61.1 |
| | 제조 | (195) | 9.2 | 69.7 | 20.5 | 0.5 | 2.88 | 62.6 |
| | 서비스 | (161) | 11.2 | 70.2 | 18.0 | 0.6 | 2.92 | 64.0 |
| 지역 | 수도권 | (304) | 9.5 | 70.7 | 19.1 | 0.7 | 2.89 | 63.0 |
| | 수도권 외 | (203) | 15.8 | 57.1 | 24.1 | 3.0 | 2.86 | 61.9 |
| 기업 규모 | 소기업 | (229) | 16.6 | 61.1 | 20.5 | 1.7 | 2.93 | 64.2 |
| | 중기업 | (164) | 6.1 | 79.3 | 14.6 | 0.0 | 2.91 | 63.8 |
| | 개인 | (114) | 11.4 | 53.5 | 31.6 | 3.5 | 2.73 | 57.6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55) | 10.3 | 67.7 | 20.6 | 1.3 | 2.87 | 62.4 |
| | 아니다 | (352) | 12.8 | 64.2 | 21.3 | 1.7 | 2.88 | 62.7 |

- 만약 환급형 제도로 개편할 경우 적자상태인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산출된 공제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흑자상태인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의한 감면액보다 사회보험료 지원액이 작을 수 있더라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함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찬성한 기업들 중 약 4분의 3은 지원 규모가 현행 중기특별세액감면 수혜금액보다 작아지더라도 환급형일 경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약 4분의 1은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응답을 바꿈

<표 IV-70>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 시 사회보험료 지원액이 작아질 경우 동의 여부

(단위: 개, %)

| | | 응답수 | 예 | 아니오 |
|----------------|-------|-------|------|------|
| 전체 | | (392) | 75.3 | 24.7 |
| 구분 | 법인 | (318) | 75.8 | 24.2 |
| | 개인 | (74) | 73.0 | 27.0 |
| 업종 | 도소매 | (107) | 72.9 | 27.1 |
| | 제조 | (154) | 77.9 | 22.1 |
| | 서비스 | (131) | 74.0 | 26.0 |
| 지역 | 수도권 | (244) | 76.6 | 23.4 |
| | 수도권 외 | (148) | 73.0 | 27.0 |
| 기업규모 | 소기업 | (178) | 77.5 | 22.5 |
| | 중기업 | (140) | 73.6 | 26.4 |
| | 개인 | (74) | 73.0 | 27.0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121) | 71.9 | 28.1 |
| | 아니다 | (271) | 76.8 | 23.2 |

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개편에 동의하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주된 이유는 ‘고용 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액으로는 고용 유지 및 증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70.4%)로 나타남
 - 추가적으로 흑자 기업이어서 해당 개편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의견이 11.3%, 향후 고용축소 후 자동화시설투자 계획이라는 의견이 5.2%, 균등한 지원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5.2%,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1.7%를 차지함

<표 IV-71> 사회보험료 지원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단위: 개, %)

| | | 응답수 |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환급액으로는 고용 유지 및 증가에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흑자 기업이므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 향후 우리 회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용을 축소하고 자동화시설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어서 | 제도의 악용 우려 | 균등한 지원 | 경쟁력 약화 | 무응답/ 거절/ 모름 |
|----------------|----------|-------|--|---|---|-----------------|-----------|-----------|-------------------|
| 전체 | | (115) | 70.4 | 11.3 | 5.2 | 5.2 | 5.2 | 1.7 | 0.9 |
| 구분 | 법인 | (75) | 73.3 | 14.7 | 6.7 | 2.7 | 2.7 | 0 | 0 |
| | 개인 | (40) | 65 | 5 | 2.5 | 10 | 10 | 5 | 2.5 |
| 업종 | 도소매 | (44) | 65.9 | 4.5 | 0 | 11.4 | 11.4 | 4.5 | 2.3 |
| | 제조 | (41) | 68.3 | 17.1 | 9.8 | 2.4 | 2.4 | 0 | 0 |
| | 서비스 | (30) | 80 | 13.3 | 6.7 | 0 | 0 | 0 | 0 |
| 지역 | 수도권 | (60) | 66.7 | 13.3 | 8.3 | 3.3 | 5 | 1.7 | 1.7 |
| | 수도권 외 | (55) | 74.5 | 9.1 | 1.8 | 7.3 | 5.5 | 1.8 | 0 |
| 기업 규모 | 소기업 | (51) | 76.5 | 9.8 | 7.8 | 2 | 3.9 | 0 | 0 |
| | 중기업 | (24) | 66.7 | 25 | 4.2 | 4.2 | 0 | 0 | 0 |
| | 개인 | (40) | 65 | 5 | 2.5 | 10 | 10 | 5 | 2.5 |
| 세액 감면 여부 | 그렇다 | (34) | 79.4 | 11.8 | 8.8 | 0 | 0 | 0 | 0 |
| | 아니다 | (81) | 66.7 | 11.1 | 3.7 | 7.4 | 7.4 | 2.5 | 1.2 |

주: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어지는 문항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추가적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의견을 조사한 결과 고용관련 비용에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건비 지급(34.9%)과 신규 고용(25.4%)을 합치면 전체의 60.3%가 추가 세액감면액을 인건비 지출로 사용할 계획임
 - 설비투자는 30%, 사내유보는 26%, 물건비 지출은 16.2%, R&D 투자는 7.1%, 배당금 지급은 3.4%, 회사운영비 2.6%, 복지 1.6%, 계획 없음 0.4%
 - 이 중 사내유보로 쌓는 것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종의 완충장치(Buffer)의 역할을 해주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고용이나 투자, 배당 등으로 감면된 세액이 지출되지 않는 것은 자금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 혜택이 축소되어 세액감면액이 줄어들 경우 어디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것인지 의견을 조사함
 - 신규고용(32.9%)과 인건비 지급(23.1%)을 합친 56%는 상대적으로 지출 규모 변경이 용이한 고용 관련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일 계획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 23.7%, 물건비 지출 20.7%, 사내유보 17%, 배당금 지급 8.7%, R&D 투자 5.3%, 회사운영비 1.8%, 지출 축소 계획 없음 1.6%, 경상지출 0.2%, 직원복지 0.2%의 순으로 나타남

V. 형평성 평가



V. 형평성 평가

-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부담을 지우는 수평적 형평성은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세원칙이지만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수평적 형평성을 다소 훼손하기도 함
 - 수평적 형평성을 훼손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가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정부정책의 타당성이 확보됨
 - 그러나 정책목표의 달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정책목표의 긍정적 과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의해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에서 정책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결과와 함께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활용하고자 함
 - 각 사업자 유형별로 수입금액규모별 실효세율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에 대해 측정하고 그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형평성 분석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협조해준 각 사업자 유형별 개별 납세자료를 이용하고자 함
 - 법인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현황은 비교적 상세히 수입금액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료는 부재하므로 국세청 협조자료를 이용함
 - 평균 실효세율은 후자기업을 대상으로 각 수입금액 구간별, 업종별, 지역별 과세표준 합계액 대비 총부담세액 합계액의 비율로 측정
 - 수혜기업들의 동 제도 감면혜택 이전의 평균 실효세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총부담세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합산하여 분자로 설정하고 과세표준 합계액을 분모로 설정함
 - 평균 실효세율을 측정하는 데 충분한 표본의 크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2011~2015년 기간의 자료를 합산하여 기간 평균 실효세율을 측정함

1. 수입금액규모별 형평성 평가

가. 법인사업자 비교

- 동 제도의 수혜법인은 감면 이후 평균 2.2%포인트 수준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수입금액 50억 초과~100억원 이하 구간의 기업들이 가장 큰 2.9%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1천억원 초과구간의 법인들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2.7%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나며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 인하효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여타 구간의 실효세율 인하효과는 2%포인트 안팎 수준임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동 제도의 감면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비수혜법인들의 실효세율보다 평균 3.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비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소폭 낮게 나타남
 -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의 비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동 제도의 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낮게 나타난 원인은 해당 비수혜기업들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됨
 -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구간의 수혜기업들의 감면 혜택 이전의 실효세율은 연구개발활동을 많이 수행하는 동 구간의 비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최대 4%포인트까지 높았으나 동 제도의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져서 비수혜기업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수혜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동 구간에 속하는 수혜법인들의 평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4,353만원 수준이나 비수혜법인들의 경우는 평균 2억 6,710만원 수준임
 - 또한 동 구간의 비수혜법인들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 수혜법인들은 대체적으로 동 제도에 의해 평균 실효세율 인하효과를 누리는 반면에 비수혜법인들은 연구개발활동이나 설비투자 및 고용을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고 있으나 수평적 형평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정책대상자라는 이유로 특정한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비수혜기업들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향유하는 것을 합리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속하는 비수혜법인들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세부담을 낮추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세율 인하효과가 훨씬 큼

〈표 V-1〉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p)

| 수입금액 구간 | 수혜 법인 실효세율 | | | 비수혜법인 실효세율(C) | 실효세율 차이 | |
|-----------|-------------|-------------|-------------|------------------|---------------|---------------|
| | 감면 후 (A) | 감면 전 (B) | 차이 (B-A) | | 감면 후 (C-A) | 감면 전 (C-B) |
| 10억 이하 | 8.1 | 10.1 | 2.0 | 13.0 | 4.9 | 2.9 |
| 20억 이하 | 8.9 | 11.0 | 2.0 | 12.0 | 3.1 | 1.0 |
| 50억 이하 | 9.7 | 12.0 | 2.3 | 13.1 | 3.4 | 1.1 |
| 100억 이하 | 11.4 | 14.3 | 2.9 | 13.9 | 2.6 | -0.3 |
| 200억 이하 | 14.7 | 16.8 | 2.1 | 14.4 | -0.3 | -2.4 |
| 300억 이하 | 15.1 | 17.0 | 1.9 | 15.1 | 0.0 | -1.9 |
| 500억 이하 | 16.1 | 18.2 | 2.1 | 14.2 | -1.9 | -4.0 |
| 1,000억 이하 | 15.5 | 17.3 | 1.8 | 15.5 | -0.1 | -1.8 |
| 5,000억 이하 | 16.4 | 19.1 | 2.7 | 18.4 | 2.0 | -0.7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V-2〉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수입금액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86①)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86②)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대상)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 중소기업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 | |
|-----------|-----------|---------------------------|-------|---------------------------|---------|----------------|-------|--------------------------|---------|---------------------------|---------|----------------|---------|------------------------------|-------|--------------|---------|---|------|
| |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 |
| 수혜 법인 | 10억 이하 | 0 | 0.0 | 1 | 3.1 | 1 | 0.2 | 32 | 294.4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20억 이하 | 5 | 10.4 | 1 | 27.2 | 1 | 0.1 | 62 | 656.6 | 0 | 0.0 | 4 | 9.9 | 2 | 1.6 | 0 | 0.0 | 0 | 0.0 |
| | 50억 이하 | 2 | 48.2 | 2 | 73.7 | 0 | 0.0 | 115 | 2,292.6 | 0 | 0.0 | 4 | 23.5 | 7 | 24.8 | 0 | 0.0 | 0 | 0.0 |
| | 100억 이하 | 1 | 43.7 | 3 | 24.6 | 2 | 21.3 | 93 | 3,655.6 | 1 | 5.7 | 2 | 21.7 | 3 | 6.3 | 1 | 23.6 | 0 | 0.0 |
| | 200억 이하 | 0 | 0.0 | 0 | 0.0 | 1 | 65.8 | 35 | 2,029.2 | 0 | 0.0 | 1 | 2.2 | 1 | 2.6 | 2 | 21.1 | 0 | 0.0 |
| | 300억 이하 | 0 | 0.0 | 0 | 0.0 | 0 | 0.0 | 14 | 1,001.6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500억 이하 | 0 | 0.0 | 0 | 0.0 | 0 | 0.0 | 7 | 304.8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1,000억 이하 | 0 | 0.0 | 0 | 0.0 | 0 | 0.0 | 2 | 309.4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30.8 |
| | 5,000억 이하 | 0 | 0.0 | 0 | 0.0 | 0 | 0.0 | 2 | 214.5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5,000억 초과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비수혜 법인 | 10억 이하 | 53 | 59.2 | 22 | 72.0 | 13 | 9.3 | 56 | 296.0 | 0 | 0.0 | 3 | 4.8 | 5 | 2.4 | 1 | 7.2 | 0 | 0.0 |
| | 20억 이하 | 21 | 59.7 | 23 | 331.1 | 19 | 41.0 | 58 | 861.0 | 1 | 22.6 | 6 | 10.5 | 10 | 31.8 | 0 | 0.0 | 0 | 0.0 |
| | 50억 이하 | 36 | 838.5 | 14 | 541.2 | 21 | 110.2 | 127 | 2,403.2 | 0 | 0.0 | 17 | 76.3 | 7 | 25.6 | 5 | 1,236.5 | 0 | 0.0 |
| | 100억 이하 | 9 | 364.0 | 6 | 97.5 | 7 | 37.4 | 72 | 2,982.7 | 0 | 0.0 | 8 | 194.5 | 16 | 141.7 | 11 | 311.5 | 0 | 0.0 |
| | 200억 이하 | 7 | 349.3 | 5 | 673.4 | 14 | 163.8 | 89 | 7,418.4 | 0 | 0.0 | 14 | 393.4 | 21 | 283.2 | 11 | 569.0 | 0 | 0.0 |
| | 300억 이하 | 0 | 0.0 | 0 | 0.0 | 10 | 302.2 | 53 | 4,694.5 | 0 | 0.0 | 11 | 814.7 | 12 | 513.0 | 6 | 704.0 | 0 | 0.0 |
| | 500억 이하 | 0 | 0.0 | 1 | 1,542.8 | 7 | 90.3 | 34 | 9,081.4 | 1 | 43.5 | 12 | 951.6 | 7 | 121.4 | 8 | 763.6 | 0 | 0.0 |
| | 1,000억 이하 | 0 | 0.0 | 0 | 0.0 | 5 | 498.8 | 32 | 9,322.9 | 15 | 2,163.5 | 24 | 4,277.8 | 3 | 58.7 | 21 | 2,689.7 | 0 | 0.0 |
| | 5,000억 이하 | 0 | 0.0 | 0 | 0.0 | 0 | 0.0 | 11 | 6,963.8 | 12 | 2,341.8 | 18 | 5,799.0 | 4 | 373.6 | 13 | 1,948.8 | 0 | 0.0 |
| | 5,000억 초과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나. 개인사업자 비교

-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수혜대상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 인하 효과는 앞서 살펴본 법인사업자의 경우보다 훨씬 크고 수평적 형평성을 더욱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 인하효과는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확대되며 5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포인트를 초과하는 수준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함
 -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규모별 실효세율과 비교해보면 감면 후 실효세율의 차이가 최소 4.9%포인트에서 최대 12.5%포인트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증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특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제도들을 훨씬 더 많이 활용했으나 높은 실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수혜 및 수혜 개인사업자의 연구개발활동은 모두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표 V-3> 수입금액 규모별 수혜 개인사업자와 비수혜 개인사업자 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p)

| 수입금액 구간 | 수혜 개인사업자 실효세율 | | | 비수혜 개인사업자 실효세율(C) | 실효세율 차이 | |
|---------|---------------|----------|----------|-------------------|------------|------------|
| | 감면 후 (A) | 감면 전 (B) | 차이 (B-A) | | 감면 후 (C-A) | 감면 전 (C-B) |
| 10억 이하 | 10.4 | 12.6 | 2.2 | 18.9 | 8.5 | 6.3 |
| 20억 이하 | 17.3 | 20.9 | 3.5 | 29.9 | 12.5 | 9.0 |
| 50억 이하 | 21.9 | 26.5 | 4.7 | 31.0 | 9.1 | 4.4 |
| 100억 이하 | 25.7 | 31.5 | 5.8 | 33.1 | 7.3 | 1.5 |
| 200억 이하 | 30.1 | 35.2 | 5.1 | 35.0 | 4.9 | -0.2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V-4>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수입금액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 수혜 개인 기업 | 10억 이하 | 9 | 5.6 | 7 | 7.3 | 12 | 43.1 | 17 | 23.4 | 3 | 1.6 |
| | 20억 이하 | 0 | 0.0 | 0 | 0.0 | 7 | 67.8 | 1 | 9.8 | 0 | 0.0 |
| | 50억 이하 | 6 | 396.2 | 1 | 1.0 | 2 | 27.2 | 0 | 0.0 | 0 | 0.0 |
| | 100억 이하 | 0 | 0.0 | 0 | 0.0 | 4 | 90.9 | 0 | 0.0 | 0 | 0.0 |
| | 200억 이하 | 0 | 0.0 | 0 | 0.0 | 5 | 159.9 | 0 | 0.0 | 0 | 0.0 |
| 비수혜 개인 기업 | 10억 이하 | 181 | 580.7 | 58 | 63.3 | 8 | 33.5 | 91 | 166.3 | 26 | 29.2 |
| | 20억 이하 | 17 | 255.0 | 12 | 22.4 | 1 | 3.8 | 17 | 70.0 | 10 | 34.9 |
| | 50억 이하 | 8 | 395.2 | 4 | 26.3 | 0 | 0.0 | 15 | 120.0 | 3 | 16.1 |
| | 100억 이하 | 0 | 0.0 | 0 | 0.0 | 1 | 32.4 | 1 | 28.0 | 1 | 11.6 |
| | 200억 이하 | 0 | 0.0 | 0 | 0.0 | 4 | 133.2 | 1 | 231.9 | 1 | 11.4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2. 업종별 형평성 평가

가. 법인사업자 비교

-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동 제도 수혜법인의 실효세율은 비수혜대상 법인의 실효세율보다 1.6%포인트~8.8%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같은 대분류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세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큰 세부담 차이를 보인 업종은 건설업으로 비수혜법인들의 실효세율은 19.2%이지만 수혜법인들의 감면 후 실효세율은 10.3%에 불과하여 8.8%포인트의 실효세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업 등이 5%포인트 이상의 실효세율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창고통신업, 서비스업의 경우도 비수혜대상 법인의 실효세율이 수혜대상 법인의 실효세율보다 4%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을 이용하여 동 제도의 수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법인들이 2011~2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1,572개로 파악되며 이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1.6%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수혜기업들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외의 여러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높은 실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음식숙박업 및 금융보험업은 동 제도의 정책대상업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서 수혜법인의 실효세율을 구할 수 없고, 비수혜법인은 각각 16.8%와 18.4%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실효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업종에 속하는 법인들은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V-5> 업종별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p)

| 수입금액 구간 | 수혜법인 실효세율 | | | 비수혜법인 실효세율(C) | 실효세율 차이 | |
|-----------|-------------|-------------|-------------|------------------|---------------|---------------|
| | 감면 후 (A) | 감면 전 (B) | 차이 (B-A) | | 감면 후 (C-A) | 감면 전 (C-B) |
| 농·임·어업 | 8.2 | 10.7 | 2.4 | 6.9 | -1.4 | -3.8 |
| 광업 | 13.0 | 16.6 | 3.6 | 11.2 | -1.8 | -5.4 |
| 제조업 | 11.7 | 14.6 | 2.8 | 13.3 | 1.6 | -1.3 |
| 전기·가스·수도업 | 7.6 | 10.8 | 3.2 | 10.5 | 2.9 | -0.3 |
| 건설업 | 10.3 | 13.0 | 2.6 | 19.2 | 8.8 | 6.2 |
| 도매업 | 12.4 | 13.5 | 1.1 | 18.3 | 5.9 | 4.8 |
| 소매업 | 14.2 | 15.3 | 1.1 | 19.2 | 5.0 | 3.9 |
| 음식·숙박업 | - | - | - | 16.8 | - | - |
| 운수·창고·통신업 | 10.7 | 13.2 | 2.5 | 14.9 | 4.2 | 1.7 |
| 금융·보험업 | - | - | - | 18.4 | - | - |
| 부동산업 | 11.7 | 13.8 | 2.1 | 16.9 | 5.2 | 3.1 |
| 서비스업 | 9.1 | 10.9 | 1.9 | 13.5 | 4.5 | 2.6 |
| 보건업 | 9.5 | 10.0 | 0.5 | 12.9 | 3.4 | 2.9 |
| 기타 업종 | 8.0 | 10.0 | 2.0 | 10.0 | 2.0 | 0.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V-6〉 업종별 법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업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6①)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6②)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대상)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 중소기업고용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외국납부 세액공제 | |
|-----------|-----------|---------------------------|---------|---------------------------|---------|----------------|-------|--------------------------|----------|---------------------------|---------|----------------|----------|---------------------------------|-------|--------------|---------|
| |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 수혜 기업 | 농·임·어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광업 | 0 | 0.0 | 0 | 0.0 | 1 | 19.1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제조업 | 2 | 46.0 | 0 | 0.0 | 3 | 68.1 | 247 | 6,742.1 | 1 | 5.7 | 11 | 57.3 | 5 | 8.2 | 3 | 52.0 |
| | 전기·가스·수도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건설업 | 4 | 52.3 | 0 | 0.0 | 1 | 0.2 | 29 | 910.7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도매업 | 1 | 0.4 | 1 | 5.5 | 0 | 0.0 | 23 | 317.8 | 0 | 0.0 | 0 | 0.0 | 1 | 2.6 | 0 | 0.0 |
| | 소매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음식·숙박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운수·창고·통신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금융·보험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부동산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서비스업 | 1 | 3.6 | 6 | 123.2 | 0 | 0.0 | 63 | 2,788.0 | 0 | 0.0 | 0 | 0.0 | 7 | 24.4 | 1 | 23.6 |
| | 보건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기타 업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농·임·어업 | 0 | 0.0 | 0 | 0.0 | 0 | 0.0 | 3 | 32.1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광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비수혜 기업 | 제조업 | 85 | 1,376.5 | 26 | 548.9 | 36 | 969.7 | 328 | 36,456.7 | 16 | 3,990.1 | 100 | 12,301.8 | 30 | 560.8 | 32 | 3,875.7 |
| | 전기·가스·수도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건설업 | 14 | 123.7 | 2 | 42.4 | 7 | 18.1 | 17 | 517.0 | 4 | 34.0 | 0 | 0.0 | 3 | 38.3 | 2 | 15.5 |
| | 도매업 | 10 | 82.4 | 3 | 22.5 | 13 | 149.6 | 39 | 1,054.4 | 0 | 0.0 | 11 | 94.1 | 23 | 363.5 | 12 | 417.9 |
| | 소매업 | 0 | 0.0 | 0 | 0.0 | 0 | 0.0 | 6 | 112.1 | 0 | 0.0 | 0 | 0.0 | 2 | 41.9 | 0 | 0.0 |
| | 음식·숙박업 | 2 | 1.8 | 0 | 0.0 | 3 | 12.9 | 0 | 0.0 | 0 | 0.0 | 0 | 0.0 | 3 | 46.8 | 0 | 0.0 |
| | 운수·창고·통신업 | 0 | 0.0 | 0 | 0.0 | 34 | 101.7 | 2 | 15.1 | 0 | 0.0 | 1 | 97.5 | 1 | 2.7 | 0 | 0.0 |
| | 금융·보험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부동산업 | 0 | 0.0 | 0 | 0.0 | 3 | 0.9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서비스업 | 15 | 86.4 | 40 | 2,644.0 | 0 | 0.0 | 137 | 5,836.3 | 9 | 547.2 | 1 | 29.2 | 23 | 497.4 | 28 | 2,736.7 |
| | 보건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기타 업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자료: 국제청 협조자료(2017)

나. 개인사업자 비교

-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후 실효세율이 같은 업종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실효세율보다 10.1%포인트, 4.3%포인트, 6.4%포인트나 낮게 나타나지만 이외의 업종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관측됨
 - 이외의 업종들의 경우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실효세율이 수혜 개인사업자들의 감면 후 세율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서 낮은 세율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앞에서 살펴본 <표 V-4> 수입금액규모별 조세지원 활용현황을 다시 살펴보면,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실효세율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이 낮은 소득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타조세지원 제도의 활용이 집중된 1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39,693명의 개인사업자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25백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파악됨

<표 V-7> 업종별 수혜 개인사업자와 비수혜 개인사업자 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p)

| 수입금액 구간 | 수혜 개인사업자 실효세율 | | | 비수혜 개인사업자 실효세율(C) | 실효세율 차이 | |
|-----------|---------------|----------|----------|-------------------|------------|------------|
| | 감면 후 (A) | 감면 전 (B) | 차이 (B-A) | | 감면 후 (C-A) | 감면 전 (C-B) |
| 농·임·어업 | 16.5 | 23.3 | 6.8 | 14.0 | -2.5 | -9.3 |
| 광업 | 15.9 | 20.4 | 4.4 | - | - | - |
| 제조업 | 17.2 | 22.4 | 5.3 | 17.6 | 0.5 | -4.8 |
| 전기·가스·수도업 | 19.9 | 24.8 | 4.9 | 6.7 | -13.2 | -18.0 |
| 건설업 | 10.8 | 14.4 | 3.6 | 21.0 | 10.1 | 6.5 |
| 도매업 | 14.1 | 15.6 | 1.5 | 13.1 | -1.0 | -2.5 |
| 소매업 | 14.5 | 16.0 | 1.5 | 11.6 | -2.9 | -4.3 |
| 음식·숙박업 | - | - | - | 12.4 | - | - |
| 운수·창고·통신업 | 7.5 | 9.9 | 2.4 | 11.8 | 4.3 | 2.0 |
| 금융·보험업 | - | - | - | 9.7 | - | - |
| 부동산업 | 17.7 | 18.9 | 1.2 | 24.1 | 6.4 | 5.3 |
| 서비스업 | 16.2 | 19.6 | 3.4 | 15.9 | -0.3 | -3.7 |
| 보건업 | 30.6 | 32.2 | 1.5 | 27.6 | -3.1 | -4.6 |
| 기타 업종 | 27.8 | 28.3 | 0.5 | 13.2 | -14.5 | -15.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V-8> 업종별 개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업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 수혜 개인 기업 | 농·임·어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광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제조업 | 9 | 397.2 | 6 | 8.1 | 21 | 347.9 | 15 | 32.3 | 2 | 1.3 |
| | 전기·가스·수도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건설업 | 0 | 0.0 | 0 | 0.0 | 0 | 0.0 | 2 | 0.2 | 0 | 0.0 |
| | 도매업 | 3 | 1.0 | 2 | 0.2 | 3 | 14.3 | 0 | 0.0 | 1 | 0.3 |
| | 소매업 | 0 | 0.0 | 0 | 0.0 | 1 | 0.8 | 0 | 0.0 | 0 | 0.0 |
| | 음식·숙박업 | 3 | 3.6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운수·창고·통신업 | 0 | 0.0 | 0 | 0.0 | 0 | 0.0 | 1 | 0.7 | 0 | 0.0 |
| | 금융·보험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부동산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서비스업 | 0 | 0.0 | 0 | 0.0 | 4 | 12.7 | 0 | 0.0 | 0 | 0.0 |
| | 보건업 | 0 | 0.0 | 0 | 0.0 | 1 | 13.3 | 0 | 0.0 | 0 | 0.0 |
| | 기타 업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비수혜 개인 기업 | 농·임·어업 | 1 | 5.3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광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제조업 | 92 | 598.0 | 11 | 39.4 | 11 | 185.9 | 23 | 80.7 | 2 | 7.6 |
| | 전기·가스·수도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건설업 | 27 | 96.8 | 3 | 0.8 | 0 | 0.0 | 2 | 0.4 | 0 | 0.0 |
| | 도매업 | 3 | 0.7 | 1 | 0.6 | 0 | 0.0 | 0 | 0.0 | 1 | 0.5 |
| | 소매업 | 4 | 0.1 | 1 | 0.3 | 0 | 0.0 | 0 | 0.0 | 1 | 11.2 |
| | 음식·숙박업 | 63 | 396.9 | 0 | 0.0 | 0 | 0.0 | 0 | 0.0 | 2 | 0.7 |
| | 운수·창고·통신업 | 9 | 128.1 | 2 | 1.1 | 0 | 0.0 | 4 | 5.6 | 0 | 0.0 |
| | 금융·보험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부동산업 | 1 | 0.1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서비스업 | 6 | 4.9 | 0 | 0.0 | 3 | 17.0 | 0 | 0.0 | 0 | 0.0 |
| | 보건업 | 0 | 0.0 | 56 | 69.8 | 0 | 0.0 | 96 | 529.5 | 35 | 83.2 |
| | 기타 업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3. 지역별 형평성 평가

가. 법인사업자 비교

-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혜법인의 실효세율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구, 대전,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수혜법인의 실효세율이 소폭 낮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서울과 광주 소재 비수혜법인 실효세율은 같은 지역의 수혜법인 실효세율보다 각각 7.6%포인트와 8.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음
 - 이외에 부산, 경기, 충북, 충남의 비수혜법인들의 실효세율이 수혜법인들의 세율보다 3~5%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사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실효세율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표 V-9〉 지역별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p)

| 수입금액 구간 | 수혜 법인 실효세율 | | | 비수혜법인 실효세율(C) | 실효세율 차이 | |
|---------|-------------|-------------|-------------|------------------|---------------|---------------|
| | 감면 후 (A) | 감면 전 (B) | 차이 (B-A) | | 감면 후 (C-A) | 감면 전 (C-B) |
| 서울 | 10.0 | 11.8 | 1.8 | 17.6 | 7.6 | 5.8 |
| 부산 | 12.5 | 14.8 | 2.3 | 16.0 | 3.5 | 1.2 |
| 대구 | 13.8 | 16.4 | 2.6 | 10.0 | -3.8 | -6.4 |
| 인천 | 10.6 | 12.8 | 2.2 | 11.7 | 1.1 | -1.1 |
| 광주 | 10.9 | 12.6 | 1.8 | 19.3 | 8.4 | 6.7 |
| 대전 | 12.6 | 14.2 | 1.6 | 11.3 | -1.2 | -2.8 |
| 울산 | 12.4 | 15.2 | 2.8 | 13.4 | 0.9 | -1.8 |
| 세종 | 10.8 | 14.1 | 3.3 | 10.2 | -0.6 | -3.9 |
| 경기 | 10.6 | 12.7 | 2.2 | 14.0 | 3.5 | 1.3 |
| 강원 | 10.4 | 12.9 | 2.4 | 12.0 | 1.5 | -0.9 |
| 충북 | 11.6 | 14.2 | 2.6 | 14.8 | 3.2 | 0.6 |
| 충남 | 11.0 | 13.6 | 2.6 | 15.9 | 4.9 | 2.3 |
| 전북 | 13.5 | 15.8 | 2.3 | 13.9 | 0.3 | -1.9 |
| 전남 | 9.7 | 12.7 | 3.0 | 7.8 | -1.9 | -4.9 |
| 경북 | 13.0 | 15.9 | 2.8 | 12.5 | -0.5 | -3.3 |
| 경남 | 12.3 | 15.3 | 2.9 | 11.6 | -0.8 | -3.7 |
| 제주 | 11.1 | 13.1 | 2.0 | 14.1 | 3.0 | 1.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V-10〉 지역별 법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비교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지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6①)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6②)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배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대상)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
|----------|----|---------------------------|------|---------------------------|-------|----------------|-------|---------------------------|---------|---------------------------|-----|----------------|-----|---------------------------------|------|----------|------|---------|------|
| |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 수혜 기업 | 서울 | 1 | 3.6 | 6 | 123.2 | 0 | 0.0 | 82 | 3,411.4 | 0 | 0.0 | 0 | 0.0 | 0 | 0.0 | 6 | 8.8 | 0 | 0.0 |
| | 인천 | 0 | 0.0 | 0 | 0.0 | 22 | 549.5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경기 | 1 | 0.4 | 1 | 5.5 | 1 | 19.1 | 119 | 2,589.9 | 0 | 0.0 | 0 | 0.0 | 6 | 26.4 | 5 | 21.4 | 0 | 0.0 |
| | 강원 | 0 | 0.0 | 0 | 0.0 | 0 | 0.0 | 4 | 62.7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대전 | 0 | 0.0 | 0 | 0.0 | 0 | 0.0 | 6 | 32.2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충북 | 0 | 0.0 | 0 | 0.0 | 0 | 0.0 | 8 | 168.6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충남 | 0 | 0.0 | 0 | 0.0 | 1 | 65.8 | 23 | 405.8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세종 | 0 | 0.0 | 0 | 0.0 | 0 | 0.0 | 2 | 43.1 | 0 | 0.0 | 0 | 0.0 | 1 | 12.2 | 0 | 0.0 | 0 | 0.0 |
| | 광주 | 1 | 1.4 | 0 | 0.0 | 0 | 0.0 | 6 | 56.4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전북 | 1 | 2.6 | 0 | 0.0 | 0 | 0.0 | 10 | 209.7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전남 | 0 | 0.0 | 0 | 0.0 | 1 | 0.1 | 12 | 505.1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대구 | 0 | 0.0 | 0 | 0.0 | 0 | 0.0 | 13 | 637.5 | 0 | 0.0 | 0 | 0.0 | 2 | 10.5 | 0 | 0.0 | 2 | 21.1 |
| | 경북 | 1 | 44.6 | 0 | 0.0 | 0 | 0.0 | 6 | 135.8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부산 | 0 | 0.0 | 0 | 0.0 | 0 | 0.0 | 14 | 654.9 | 1 | 5.7 | 2 | 8.2 | 0 | 0.0 | 0 | 0.0 | 1 | 23.6 | |
| 울산 | 0 | 0.0 | 0 | 0.0 | 0 | 0.0 | 6 | 112.0 | 0 | 0.0 | 0 | 0.0 | 0 | 0.0 | 2 | 5.1 | 0 | 0.0 | |
| 경남 | 0 | 0.0 | 0 | 0.0 | 1 | 2.3 | 28 | 1,182.5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30.8 | |
| 제주 | 3 | 49.7 | 0 | 0.0 | 0 | 0.0 | 1 | 1.7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서울 | 4 | 75.6 | 34 | 2,667.4 | 12 | 435.3 | 179 | 11,471.9 | 18 | 1,276.3 | 9 | 240.5 | 45 | 1,105.1 | 47 | 4,301.7 | 47 | 4,301.7 | |
| 인천 | 5 | 65.2 | 3 | 32.9 | 5 | 84.4 | 47 | 4,310.3 | 0 | 0.0 | 7 | 1,246.5 | 6 | 81.6 | 5 | 310.0 | 5 | 310.0 | |
| 경기 | 29 | 401.9 | 15 | 120.9 | 30 | 185.2 | 230 | 24,963.8 | 1 | 1,348.4 | 51 | 3,179.6 | 29 | 347.4 | 11 | 1,862.1 | 11 | 1,862.1 | |
| 강원 | 3 | 1.0 | 5 | 48.1 | 5 | 23.8 | 7 | 208.6 | 0 | 0.0 | 0 | 0.0 | 3 | 985.7 | 0 | 0.0 | 0 | 0.0 | |
| 대전 | 8 | 14.7 | 1 | 1.0 | 0 | 0.0 | 8 | 270.4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충북 | 9 | 15.9 | 1 | 93.9 | 2 | 93.4 | 12 | 825.1 | 0 | 0.0 | 0 | 0.0 | 10 | 791.1 | 0 | 0.0 | 5 | 17.4 | |
| 충남 | 4 | 3.6 | 0 | 0.0 | 5 | 2.1 | 5 | 141.6 | 0 | 0.0 | 0 | 0.0 | 0 | 0.0 | 2 | 0.5 | 6 | 1,726.2 | |
| 세종 | 1 | 1.8 | 3 | 273.8 | 4 | 5.7 | 1 | 5.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광주 | 4 | 94.0 | 0 | 0.0 | 11 | 34.1 | 3 | 31.9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전북 | 8 | 61.3 | 0 | 0.0 | 2 | 133.4 | 4 | 68.7 | 2 | 248.7 | 9 | 4,897.6 | 0 | 0.0 | 0 | 0.0 | 1 | 3.8 | |
| 전남 | 9 | 136.5 | 1 | 0.0 | 1 | 1.0 | 1 | 93.5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대구 | 8 | 78.3 | 2 | 5.4 | 2 | 67.7 | 15 | 431.5 | 0 | 0.0 | 0 | 0.0 | 5 | 305.1 | 0 | 0.0 | 0 | 0.0 | |
| 경북 | 5 | 4.0 | 4 | 8.3 | 1 | 1.9 | 1 | 13.8 | 2 | 107.2 | 7 | 360.3 | 0 | 0.0 | 0 | 0.0 | 0 | 0.0 | |
| 부산 | 11 | 71.5 | 0 | 0.0 | 8 | 178.6 | 12 | 392.6 | 1 | 22.6 | 3 | 80.0 | 0 | 0.0 | 0 | 0.0 | 0 | 0.0 | |
| 울산 | 1 | 1.3 | 0 | 0.0 | 1 | 0.7 | 0 | 0.0 | 0 | 0.0 | 0 | 0.0 | 1 | 13.1 | 0 | 0.0 | 0 | 0.0 | |
| 경남 | 13 | 622.9 | 2 | 6.1 | 1 | 2.4 | 7 | 795.2 | 5 | 1,568.2 | 9 | 436.4 | 0 | 0.0 | 0 | 0.0 | 1 | 9.1 | |
| 제주 | 4 | 21.2 | 0 | 0.0 | 6 | 3.1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2 | 3.6 | 0 | 0.0 |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나. 개인사업자 비교

-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활발히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모든 지역에서 비수혜 개인사업자들의 실효세율이 수혜기업 실효세율보다 높게 나타남
 -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울산, 전남지역에서 종사한 개인사업자들의 실효세율 차이는 7%포인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대구, 세종, 전북, 경남, 제주지역이 실효세율 차이는 1~3%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외의 지역의 실효세율 차이는 4~7%포인트 수준임

<표 V-11> 지역별 수혜개인사업자와 비수혜개인사업자 간 실효세율 차이

(단위: %, %p)

| 수입금액 구간 | 수혜 개인사업자 실효세율 | | | 비수혜 개인사업자 실효세율(C) | 실효세율 차이 | |
|---------|---------------|----------|----------|-------------------|------------|------------|
| | 감면 후 (A) | 감면 전 (B) | 차이 (B-A) | | 감면 후 (C-A) | 감면 전 (C-B) |
| 서울 | 14.8 | 16.8 | 2.0 | 24.2 | 9.4 | 7.4 |
| 부산 | 15.0 | 18.2 | 3.2 | 19.5 | 4.5 | 1.2 |
| 대구 | 17.7 | 21.7 | 4.0 | 18.7 | 1.1 | -2.9 |
| 인천 | 14.2 | 16.7 | 2.6 | 23.9 | 9.7 | 7.2 |
| 광주 | 14.5 | 16.3 | 1.8 | 18.2 | 3.7 | 1.9 |
| 대전 | 11.7 | 13.7 | 2.0 | 20.8 | 9.1 | 7.1 |
| 울산 | 17.0 | 20.9 | 3.9 | 24.3 | 7.3 | 3.4 |
| 세종 | 9.7 | 11.6 | 1.9 | 11.8 | 2.1 | 0.2 |
| 경기 | 15.2 | 18.2 | 3.0 | 22.9 | 7.7 | 4.7 |
| 강원 | 11.7 | 14.4 | 2.7 | 16.4 | 4.7 | 2.0 |
| 충북 | 13.7 | 16.4 | 2.8 | 20.4 | 6.8 | 4.0 |
| 충남 | 13.3 | 16.0 | 2.7 | 18.1 | 4.8 | 2.1 |
| 전북 | 17.8 | 20.7 | 2.9 | 20.1 | 2.3 | -0.6 |
| 전남 | 14.2 | 16.3 | 2.1 | 21.3 | 7.1 | 5.0 |
| 경북 | 15.3 | 19.4 | 4.0 | 20.3 | 5.0 | 0.9 |
| 경남 | 16.8 | 22.1 | 5.3 | 19.3 | 2.5 | -2.8 |
| 제주 | 16.2 | 18.6 | 2.3 | 17.5 | 1.2 | -1.1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표 V-12> 지역별 개인사업자의 조세지원제도 활용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지역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기업수 | 금액 |
| 수혜 개인 기업 | 서울 | 0 | 0.0 | 0 | 0.0 | 6 | 16.5 | 0 | 0.0 | 0 | 0.0 |
| | 인천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2 | 1.3 |
| | 경기 | 0 | 0.0 | 0 | 0.0 | 9 | 138.9 | 1 | 1.3 | 1 | 0.3 |
| | 강원 | 2 | 0.9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대전 | 1 | 0.1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충북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충남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세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광주 | 0 | 0.0 | 0 | 0.0 | 1 | 1.4 | 0 | 0.0 | 0 | 0.0 |
| | 전북 | 0 | 0.0 | 1 | 0.0 | 0 | 0.0 | 0 | 0.0 | 0 | 0.0 |
| | 전남 | 0 | 0.0 | 0 | 0.0 | 0 | 0.0 | 2 | 0.2 | 0 | 0.0 |
| | 대구 | 1 | 0.1 | 5 | 5.5 | 10 | 202.1 | 1 | 0.4 | 0 | 0.0 |
| | 경북 | 3 | 54.1 | 0 | 0.0 | 3 | 28.5 | 5 | 13.7 | 0 | 0.0 |
| | 부산 | 3 | 1.7 | 1 | 1.7 | 1 | 1.5 | 3 | 3.1 | 0 | 0.0 |
| | 울산 | 0 | 0.0 | 0 | 0.0 | 0 | 0.0 | 2 | 4.1 | 0 | 0.0 |
| | 경남 | 1 | 2.7 | 0 | 0.0 | 0 | 0.0 | 4 | 10.4 | 0 | 0.0 |
| | 제주 | 4 | 342.1 | 1 | 1.0 | 0 | 0.0 | 0 | 0.0 | 0 | 0.0 |
| 비수혜 개인 기업 | 서울 | 8 | 73.5 | 3 | 2.8 | 2 | 13.0 | 0 | 0.0 | 12 | 21.5 |
| | 인천 | 3 | 8.1 | 1 | 0.7 | 5 | 165.6 | 1 | 1.2 | 2 | 3.7 |
| | 경기 | 19 | 220.1 | 5 | 4.0 | 3 | 10.5 | 3 | 1.7 | 13 | 42.3 |
| | 강원 | 7 | 101.0 | 2 | 0.6 | 0 | 0.0 | 1 | 0.6 | 0 | 0.0 |
| | 대전 | 8 | 17.1 | 7 | 10.9 | 0 | 0.0 | 12 | 21.0 | 1 | 5.3 |
| | 충북 | 22 | 385.3 | 3 | 0.7 | 0 | 0.0 | 8 | 81.6 | 3 | 3.7 |
| | 충남 | 15 | 29.8 | 1 | 0.6 | 0 | 0.0 | 9 | 37.4 | 1 | 2.7 |
| | 세종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 | 광주 | 0 | 0.0 | 7 | 4.6 | 0 | 0.0 | 12 | 31.7 | 2 | 2.0 |
| | 전북 | 5 | 46.3 | 10 | 16.7 | 0 | 0.0 | 17 | 260.8 | 2 | 5.4 |
| | 전남 | 11 | 7.0 | 3 | 10.0 | 0 | 0.0 | 4 | 26.1 | 2 | 0.4 |
| | 대구 | 22 | 38.5 | 6 | 23.8 | 1 | 4.0 | 15 | 49.6 | 2 | 14.3 |
| | 경북 | 24 | 85.7 | 7 | 6.8 | 3 | 9.8 | 15 | 47.5 | 1 | 2.0 |
| | 부산 | 22 | 54.0 | 9 | 9.2 | 0 | 0.0 | 2 | 3.5 | 0 | 0.0 |
| | 울산 | 8 | 65.5 | 1 | 0.0 | 0 | 0.0 | 9 | 19.9 | 0 | 0.0 |
| | 경남 | 31 | 97.6 | 9 | 20.4 | 0 | 0.0 | 17 | 33.7 | 0 | 0.0 |
| | 제주 | 1 | 1.3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자료: 국세청 협조자료(2017)

Ⅵ. 제도 개선 방안



VI. 제도 개선 방안

1. 종합 평가

가. 타당성 평가결과

-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동 제도의 정책대상자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고,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여타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의 가능성이 있음
 - (정부 개입의 근거) 중소기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금융시장 접근성, 상품시장 진입장벽 및 불공정거래, 작은 규모에 기인한 비효율성 등 여러 어려운 경영환경을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
 - (불명확한 정책목표) 1992년 중소 제조업의 경영난 지원을 위해 도입된 동 제도는 이후 여러 정책대상업종을 추가하며 새로운 유망업종 지원부터 외부불경제 교정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목표가 포괄되어 있음
 - 2016년 세제개편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유 자동차 대여업을 정책대상업종에 추가했으나 그 효과성은 회의적임
 - 우선 해당 요건을 갖추는 중소 자동차 대여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유 자동차 중 50%에 달하는 전기차 보유 요건은 현재 전기차 충전소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도설계의 문제점)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특정한 수혜요건 부재, 제조업 중심의 폭넓은 정책대상자 설정, 납세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불명확한 업종명칭,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있음
 - 정책대상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해당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매출액 1,500억원의 제조업체도 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며 동 제도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처럼 세법상 중소기업 지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세법상 범위를 별도로 설정할 필요
 - 주요 국가들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매우 작은 규모로 업종 구분없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 (유사중복성)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을 수혜한 흑자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 사업내역의 정책목표가 유사하여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음
 - 수입금액규모별, 업종별, 기업소재지별 중소기업청 예산사업의 수혜법인과 금액 비중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현황과 상당히 유사
 - 중소기업청의 투융자복합금융지원(1254-301)과 성장안정자금(1261-301)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정책목적과 유사하며 중복지원의 가능성

나. 효과성 평가결과

- 기업경영안정, 수익성 제고, 성장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여타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경영안정) 부채비율로 측정된 기업의 경영안정성은 동 제도 수혜법인사업자의 경우 소폭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동 제도의 대다수 이용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선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나며 납세자들은 동 제도를 기업경영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
 -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납세자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 제고) 총자산순이익률과 매출액영업이익률로 측정된 기업의 수익성 지표는 수혜기업(법인·개인)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혜기업의 수익성 제고효과에 대한 긍정적 실증분석 결과를 찾기 어려움
 -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묻은 설문에 납세자들은 100점 기준 64.8점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경영 안정성에 관한 응답자들의 설문결과와 비교하여 수익성 제고에 대한 납세자들의 응답점수는 소폭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성장지원) 수혜기업(법인·개인)들의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도 비수혜기업보다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일부 추정결과에서는 비수혜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사업범위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며 납세자들은 동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
- (여타 지원제도 활용 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제도의 활용은 동제도의 비수혜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동 제도 수혜기업들은 주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활용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타 제도들은 동 제도에 의해 활용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 형평성 평가결과

- 동 제도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법인사업자 2%포인트, 개인사업자 5%포인트 안팎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며 동일한 기업규모와 업종의 비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최대 12.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형평성을 왜곡하는 것으로 평가됨
 - 비수혜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비롯한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평균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는 비수혜법인들의 경우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수혜 법인들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훨씬 큼

라. 종합의견

- 이상의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동 제도는 폐지 내지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동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불분명하며 제도 설계상 여러 문제점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예산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큼
 - 긍정적 외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제조업 중심으로 정책대상자가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납세순응비용을 높이는 불명확한 업종명칭 등 제도 설계상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개별납세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실증적으로 동 제도의 효과성에 회의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타 지원제도의 활용을 억제 및 구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동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동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비록 납세자들이 동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은 동 제도의 설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정책대상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약 78%)이 찬성하며 업종 확대에 따라 감면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찬성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난 점을 참고할 필요
 - 동 제도에 의해 대체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2%포인트, 개인사업자의 경우 5%포인트 안팎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업규모와 업종의 비수혜기업들의 실효세율보다 최대 12.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평적 형평성을 왜곡하고 있음
 -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 왜곡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거나 해당 기업들이 여타 기업들보다 빠르게 성장하거나 수익성을 확대하거나 기업경영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은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및 비효과적 사용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2.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기본적으로 동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납세자들의 인식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폐지 시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제도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개편할 필요
 -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세액감면제도의 특성상 산출세액이 큰 수익성을 확보한 우량 중소기업들에 더 큰 혜택이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현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저항 등 정치과정을 고려하여 현행을 유지하더라도 세액감면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제도의 세 가지 기본 구성요소인 업종, 기업규모, 소재지 중 정책대상 업종 설정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
 - 현재는 정책대상 업종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
 - 국민정서상 육성지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유흥음식업 등 사치성 소비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할 필요
 - 설문응답기업의 78%가 이러한 개편에 찬성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감면혜택이 줄어들더라도 업종제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
 -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사이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되는 투자 및 고용과 연계하여 동 제도를 재설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므로 이 제도들과의 통폐합을 고려할 필요
 - 중기특별세액감면제도를 투자 또는/그리고 고용과 연계하는 형태로 개편할 경우 기 시행 중인 제도들과 유사중복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참 고 문 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학수,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_____,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6년 4월호 (제23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_____,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b.
- 대한민국 국회 재무위원회,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2. 12.
- _____,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4. 12.
- _____,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5. 12.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 삼일아이닷컴(<http://www.samili.com/>)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main.html>)
- 조세심판원, 조세법령·판례, (<http://www.tt.go.kr/mUser/law/lawList.do>)
- 일본 재무성(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215.htm)
- Autio, E. and W. Holzl, “Addressing Challenges for High-Growth Companies: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Europe Innova Gazelles Innovation Panel,” Erope Innova Paper No. 6, 2008.
- Burton M., “The Australian Small Business Tax Concessions – Public Choice, Public Interest or Policy Folly?” *Australian Tax Forum*, 21, 2006.
- Freedman, J., “Reforming the Business Tax System: Does Size Matter? Fundamental Issues in Small Business Taxation,” in Evans, C. and R. Krever(eds.), *Australian Business Tax Reform in Retrospect and Prospect*, Thomson Reuters, Australia, 2009.

- Jones, R.S. and M. Kim, “Fostering a Creative Economy to Drive Korean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152, 2014.
- OECD, “Taxation of SMEs in OECD and G20 Countries,” *OECD Tax Policy Studies*, 2015.
- W. Gale and S. Brown, “Small Business, Innovation and Tax Policy: A Review,” Tax Policy Center, Urban Institute and Brookings Institution, 2013.

부 록



<부 록> 설문지

| | | | | | |
|----------------|--|--|--|--|--|
| List ID | | | | | |
|----------------|--|--|--|--|--|

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전문기관 (주)리서치랩 입니다. 본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 수준, 이용 현황 및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심층 평가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한 귀중한 기초가 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고 최대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5월

(※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기관인 ‘리서치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 (주)리서치랩
담당연구원: 홍지문 연구원
(☎ 02-559-2791)

주관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담당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원
(☎ 044-414-227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특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지원 혜택) 기업의 소재지, 규모, 업종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을 허용

- 비수도권, 소규모, 제조업종의 세액 감면율이 높고 수도권, 중규모, 서비스업종의 세액 감면율이 낮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투자나 고용과 같은 특정 경제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지원제도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기업, 제조업, 수도권 외의 경우 3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 | 업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 소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10% | 10% |
| | 그 외 업종 | 20% | 30% |
| 중기업 | 도·소매업, 의료업 | - | 5% |
| | 그 외 업종 | - | 15% |
| | 지식기반산업 | 10% | 15%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http://www.law.go.kr/main.html>), 2017.4.6. 접속

주: 1.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장수 성실중소기업은 상기 감면율의 1.1배를 적용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③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2.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30% 감면함(2019.12.31.까지 적용)

Part A.

1. 일반현황

◆ A1. 사업체 [응답자가 법인 대표인 경우] ◆ (※ 여러 사업체 대표인 경우 주력 사업체)

| | |
|---------------|---|
| A1-1. 운영사업체 수 | 가. () 개사 |
| A1-2. 사업체명 | 나. () ※ 약식이 아닌 정식명칭 기입 |
| A1-3. 법인설립등기일 | 다. ()년 ()월 |
| A1-4. 업종 | 해당 항목 () ※ 별지(설문지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업종을 기입해주시시오. 예) 가. 작물재배업 해당되는 업종이 없는 경우 직접 기입해주시시오. |
| A1-5. 종업원수 | 라. 상시근로자수 ()명 |
| A1-6. 소재지 | 마. ()시·도 바. ()시·군·구 사. ()읍·면·동 |
| A1-7. 대표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
| A1-8. 응답자 직급 | ① 대표 ② 실무자 |

◆ A2. 사업자 [응답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 여러 가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력 사업)

| | |
|--------------------|---|
| A2-1. 운영 사업체명 및 갯수 | 사업체명 () / () 개 사업 |
| A2-2.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
| A2-3. 사업장 주소 | 아. ()시·도 자. ()시·군·구 차. ()읍·면·동 |
| A2-4. 종업원수 | 카. 상시근로자 ()명 |
| A2-5. 부채 (2016년 말) | 타. ()원 파. 월 평균 이자 부담액: ()원 |
| A2-6. 사업자등록월 | 하. ()년 ()월 (현재 운영하는 사업장) |
| A2-7. 개인사업자 시작 | 거. ()년 ()월 |
| A2-8. 업종 | 해당 항목 () ※ 별지(설문지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업종을 기입해주시시오. 예) 가. 작물재배업 해당되는 업종이 없는 경우 직접 기입해주시시오. |
| A1-9. 응답자 직급 | ① 대표 ② 실무자 |

○ 감면 업종

※ 별지(설문지 마지막 장) 참조

※ 사업소득: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제한 후의 소득임(총수입-필요경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B2-2. 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5월에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습니까? ()

- ① 그렇다 →B2-3으로 이동 ② 아니다 →B2-4로 이동

B2-3. 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5월에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 세금을 추가 납부하셨습니까? 아니면 환급받으셨습니까? ()

- ① 납부했다 →B2-3-1로 이동
② 환급 받았다 →B2-3-2로 이동

B2-3-1. 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5월에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얼마를 납부하셨습니까? ()

- ① 5백만원 이하
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③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④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⑤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⑥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⑦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⑧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⑨ 2억원 초과

→B2-4로 이동

B2-3-2. 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5월에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세금을 환급 받으셨다면, 얼마를 환급 받으셨습니까? ()

- ① 2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③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④ 1,000만원 초과

→B2-4로 이동

B2-4.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얼마에 양도하시겠습니까?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시오. (응답자가 실무자인 경우 본인이 사업체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시시오.)

() 백만 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기업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C-1. 귀하께서는 2016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여 세액감면을 받으셨습니까? ()

- ① 그렇다 →C-2로 이동 ② 아니다 →C-4로 이동

C-2. 귀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 ①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지, 홍보 및 안내를 통해
 ② 뉴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③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④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⑤ 기타 ()

→C-3으로 이동

C-3. 귀하께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16년에 이용하셨다면, 감면된 세액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① 신규 고용
 ② 설비 투자
 ③ R&D 투자
 ④ 배당금 지급
 ⑤ 인건비 지급
 ⑥ 물건비 지출
 ⑥ 사내 유보
 ⑦ 채무 상환
 ⑧ 기타 ()

→C-5로 이동

C-4. 귀하께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016년에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감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② 해당 제도의 세액 감면 비율이 낮아서
 ③ 다른 세액감면을 충분히 받아서
 ④ 세무처리 및 등록절차가 복잡해서
 ⑤ 별 다른 이유는 없음
 ⑥ 기타 ()

→C-5로 이동

C-5. 귀하께서 다른 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를 이용하신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 중이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이용하지 않음 → C-1의 1번 (2016년 이용) 응답자는 C-7로 이동 / C-1의 2번(2016년 비이용)

응답자는 C-8로 이동

- 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③ 연구개발비세액공제
- ④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⑤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⑥ 기타 ()

→ 1번 이외 응답자 C-6로 이동

C-6. 귀하께서 다른 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신다면 해당 세액감면제도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비교하여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의 크기가 크다
- ② 세액감면 절차가 단순하여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 ③ 세무 대리 비용이 적다
- ④ 적용 기준이 포괄적이다
- ⑤ 기타 ()

→C-8로 이동

C-7. 귀하께서 다른 세액감면 혹은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만을 이용하는 경우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감면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아서
- ②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만으로도 세액 감면이 충분해서
- ④ 제도 이용시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⑤ 기타 ()

→C-8로 이동

C-8. 귀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C-9로 이동

C-9 귀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C-10으로 이동

C-10. 귀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C-11로 이동

C-11. 귀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C-12로 이동

C-12. 귀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① 매우 동의 ② 동의 ③ 동의하지 않음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C-13으로 이동

C-13. 만약 귀하께서 2016년 이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으나, 2016년에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해당되지 않음 **→ C-1의 1번 응답자(2016년 이용)는 C-14로 이동 /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응**

답자는 C-18로 이동

- ②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③ 사업체의 주요 업종을 변경해서
④ 다른 세액감면제도로 충분해서
⑤ 기타 ()

→ 1번 이외 응답자 C-14로 이동

C-14. 만약 귀하께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적용받는 감면율이 변화하였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① 수도권 내/외 지역으로 이전
② 기업규모 변경(소기업 ↔ 중기업)
③ 적용 대상 수혜 업종 범위 변경
④ 사업체의 주요 업종 변경
⑤ 변화하지 않음
⑥ 기타 ()

→C-15로 이동

D-1. 수혜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유흥업 및 도박업과 같이 국민정서상 육성대상으로 볼 수 없는 업종들을 배제하고 모든 업종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

- ① 매우 동의(☞ 문 D-1-1으로 이동) ② 동의(☞ 문 D-1-1으로 이동)
 ③ 동의하지 않음(☞ 문 D-1-2으로 이동)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문 D-1-2으로 이동)

D-1-1 앞의 질문(D-1)에서 ①과 ②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감면율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는 개편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

- ①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한다

D-1-2 앞의 질문(D-1)에서 ③과 ④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그러한 응답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

- ①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서
 ② 현재처럼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③ 감면업종을 확대하면 본인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④ 기타 (_____)

D-2.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안에 동의하십니까? ()

- ① 매우 동의(☞ 문 D-2-1으로 이동) ② 동의(☞ 문 D-2-1으로 이동)
 ③ 동의하지 않음(☞ 문 D-2-2으로 이동)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문 D-2-2으로 이동)

D-2-1. 앞의 질문(D-2)에서 ①과 ②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앞의 질문의 응답을 변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 ① 바꾸지 않는다 ② 바꾼다

D-2-2 앞의 질문(D-2)에서 ③과 ④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그러한 응답을 하게된 주된 이유는? ()

- ① 소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② 중규모 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③ 기업규모보다는 업종이나 수도권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여서
 ④ 기타 (_____)

D-3. 기업의 위치에 따라 수도권기업과 비수도권기업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방안에 동의하십니까? ()

- ① 매우 동의(☞ 문 D-3-1으로 이동) ② 동의(☞ 문 D-3-1으로 이동)
③ 동의하지 않음(☞ 문 D-3-2으로 이동)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문 D-3-2으로 이동)

D-3-1. 앞의 질문(D-3)에서 ①과 ②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현재 감면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앞의 질문의 응답을 변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 ① 바꾸지 않는다 ② 바꾼다

D-3-2. 앞의 질문(D-3)에서 ③과 ④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그러한 응답을 하게된 주된 이유는? ()

- ①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감면율이 낮아질 것 같아서
② 수도권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서
③ 기업의 위치보다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여서
④ 기타 (_____)

D-4. 현재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동 제도의 혜택을 일정기간 이후에는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

- ① 매우 동의(☞ 문 D-4-1으로 이동) ② 동의(☞ 문 D-4-1으로 이동)
③ 동의하지 않음(☞ 문 D-4-2으로 이동)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문 D-4-2으로 이동)

D-4-1. 앞의 질문(D-4)에서 ①과 ②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몇 년 정도 수혜 받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① 5년 이내 ② 5~10년
③ 10~15년 ④ 15~20년

D-4-2. 앞의 질문(D-4)에서 ③과 ④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그러한 응답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

- ① 중소기업은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므로
② 특정 업종은 계속 지원되어야 하므로
③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계속해서 지원되어야 하므로
④ 기타 (_____)

D-5. 현재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

- ① 매우 동의(☞ 문 D-5-1으로 이동) ② 동의(☞ 문 D-5-1으로 이동)
③ 동의하지 않음(☞ 문 D-5-2으로 이동) ④ 매우동의하지 않음(☞ 문 D-5-2으로 이동)

(개편 안 설명)

현재는 내야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일정비율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전년보다 추가적으로 더 고용할 경우 더 높은 비율로 공제해주는 형태로 개편해서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축소해주고자 합니다. 만약 기업이 적자 상태여서 내야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D-5-1. 적자상태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산출된 공제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흑자상태인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의한 감면액보다 사회보험료 지원액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앞의 질문(D-5)에서 ①과 ②를 선택하신 응답자들께서는 응답을 변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D-5-2. 앞의 질문(D-5)에서 ③과 ④를 선택하신 응답자의 경우 그러한 응답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

- ①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흑자 기업이므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②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환급액으로는 고용 유지 및 증가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③ 향후 우리 회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고용을 축소하고 자동화시설 투자를 더 확대할 계획이어서
④ 기타 (_____)

C-6. 귀하께서는 만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감면된 세액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① 신규 고용
② 설비 투자
③ R&D 투자
④ 배당금 지급
⑤ 인건비 지급
⑥ 물건비 지출
⑥ 사내 유보
⑦ 부채 감축
⑧ 기타 (_____)

